

● 프 로 그 램 ●

❖ **기자회견** (13:00~13:40)

참석자소개 13:00~13:05 ▷ 사 회 : 김 명 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
▷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사장인사말 13:05~13:10
▷ 정 종 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성명서낭독 13:10~13:20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직역확대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장
▷ 김 명 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

질의응답 13:20~13:40

❖ **심포지엄** (14:00~18:00)

개 회 식 14:00~14:20 ▷ 사 회 : 김 명 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
▷ 개회사 : 정 종 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환영사 : 신 영 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축 사 : 우 윤 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참석자 소개

주 제 발 표 14:20~15:40 ▷ 사 회 : 신 현 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주제 1. 윤 남 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 방향」
▷ 주제 2. 이 용 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신규 법조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

휴 식 15:40~16:00

지 정 토 론 16:00~17:40 ▷ 사 회 : 신 현 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토 론 : 정 완 용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강 연 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한 상 희 (로스쿨교수협의회, 건국대 교수)
강 대 섭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신 현 식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이 복 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
김 대 인 (법률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금 원 섭 (조선일보 기자)
신 기 훈 (국방부 법무과 법무관)
정 성 윤 (법률신문 기자)

종 합 토 론 17:40~18:00

목 차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성명서 / 1

□ 주제발표

- ❖ 제1주제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 방향 … 11
윤 남 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제2주제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 방향 … 27
이 용 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 지정토론

- ❖ 정 완 용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73
- ❖ 강 연 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 77
- ❖ 한 상 희 (로스쿨교수협의회, 건국대 교수) …………… 85
- ❖ 강 대 섭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105
- ❖ 신 현 식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 111
- ❖ 이 복 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 …………… 121
- ❖ 김 대 인 (법률소비자연맹 상임대표) …………… 129
- ❖ 금 원 섭 (조선일보 기자) …………… 139
- ❖ 신 기 훈 (국방부 법무과 법무관) …………… 141
- ❖ 정 성 윤 (법률신문 기자) …………… 143

성명서

로스쿨 졸업생의 직역확대와 제도개선 방안

- 정부는 법치국가 정립을 위한 법조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성명서] 로스쿨 졸업생의 직역확대와 제도개선 방안

- 정부는 법치국가 정립을 위한 법조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2011. 11. 16(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외 24人]는 변호사 진출 직역이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어 국민이 바라는 선진 법치사회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및 관련단체들의 상호 협력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I.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다양한 법조인력이 배출된다.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을 통하여 해마다 법조인력이 2,000명 넘게 배출될 예정이다. 사회 전반에 법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자원이 풍부해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치국가의 정립은 사회적 인프라를 이루는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로서 오늘날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IT나 BT와 같은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기술 인력의 확보가 전제조건이 되듯이 법치국가의 정립을 위해서도 우수한 법조인력의 양성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법조인력 양성체제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다방면에서 실용적인 법률지식과 능력을 구비한 법조인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II. 배출된 법조인들이 공공분야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어렵고 비싼 비용을 들여 양성한 법조인력을 활용하는 데에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아직은 매우 미흡하고 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법률전문가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법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대부분의 법률적인 소양이 부족한 비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 입법과정과 적용문제, 기업에서의 제반 법률문제가 모두 법률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글로벌시대에 국가 간의 관계에도 법률가의 많은 조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의 사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률관련 문제를 대부분 비전문가에게 맡겨놓고 있는 현실은 마치 운전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에게 고속버스를 운전하도록 맡겨 도로를 질주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법조인이 희소하고 법률문제도 비교적 단순하였던 시대에는 비전문가가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전문화된 오늘날에는 법률전문가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III. 정부에서는 법치행정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법조인력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법령이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는 전체 228명 중 법무부나 법제처와 같은 법률전문부처를 제외하면 단지 130여명에 불과하다. 이는 부처당 4~5명의 법률가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국가가 되려면 법령이나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법률전문가가 조기 배치

되어 집행, 분쟁관리 등 모든 단계에 이르기까지 법률가들에 의한 책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치행정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법조인력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정부가 다음 사항들을 시급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는 법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과 단위 마다 1명 이상의 법조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각 부처는 직제시행규칙을 근거로 법무담당관 직위를 마련하여 상당수의 법무담당인력을 두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법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법률안을 입안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나서고 있다. 법치행정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이 소송수행은 물론이고 법령입안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법조인을 법무담당관으로 채용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채범위의 확대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가능하다.

2. 시·군·자치구 및 교육자치기구는 실·국 단위마다 1명 이상의 법조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시·군·자치구 및 교육자치기구인 지방교육청의 경우에도 전문법

조인력의 채용이 절실하다. 지방화·분권화·자율화에 따른 책무성 확보 등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각종 지방정책 및 조례나 규칙의 입안 또는 심의과정에서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지방교육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요구는 마찬가지이다. 법률전문가에 의한 검토는 법치행정의 구현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3. 공기업과 공익단체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법조인력의 활용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된 상법이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업들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채용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다. 전문화된 기업법무의 운영과 윤리경영이란 바람직한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획기적으로 늘어난 전문법조인력이 기업에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기업에서 법조인력의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강화하고, 일선 관공서와 경찰서, 국공립병원, 각종 공익단체(장학재단, 복지재단, 예술단체 등) 및 연맹(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단체 등)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모든 국민들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법조인들이 활약하는 것은 곧 국민의 복지향상과 법치국가 실현에 이바지하는 길임을 확신하며, 국가

는 위에서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1. 11. 1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외 원장 일동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최상욱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최윤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권혁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정완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박노형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점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강대섭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홍성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정종섭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문영식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손기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백윤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신현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배병일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전정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송덕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기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신창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준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창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성덕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재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수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영복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오영근

주제발표

제1주제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 방향
-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 방향

발표문

윤 남 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문제의 제기

2011. 10. 31.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변호사는 총 10,997명이고, 개업을 하지 않은 변호사까지 합하면 12,595명이며,¹⁾ 2012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연간 1500명 정도(추정)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와 합하면 변호사 수가 매년 2,000명 이상 증가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 변호사 수가 2015년 2만 명, 2020년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²⁾ 그러나 금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독개업을 선택한 많은 수의 청년변호사가 사무실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변호사 1인당 수임사건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본안사건 수임건수는 모두 22만 3,000여 건인데, 그 중 자산유동화전문회사나 채권추심업체에서 넘어오는 20만 원 미만의 저가수임사건과 소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제외하면 수임건수는 17만 4,168건이 된다. 이를 서울변호사회 전체회원 7,380명으로 나누면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는 연평균 23.6건, 월평균 1.9건에 불과하게 된다. 2008년 월평균 1인당 사건수가 2.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25%가 감소한 것이고, 전체 변호사 시장의 40% 이상을 대형로펌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 절박한 것으로 생각된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사무실운영이 가능한 월평균 수임건수를 4건으로 보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무장과 여직원을 한명씩 고용하는 가장 간소한 형태의 사무실운영에도 월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³⁾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사실상 실직상태에 있음에도 법원에는 사건이 폭주하여 재판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법관들 사이에 사건처리 경쟁이 벌어지

1) www.koreanbar.or.kr/info/info07.asp(2011. 11. 10. 방문)

2) “법무부,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본격 검토”, 법률신문 2010. 5. 3.

3) “변호사수임사건 급감”, 법률신문 2010. 6. 18.

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민사소송사건 접수 건수는 1,259,031건인데 반하여 같은 기간 일본의 사건 수는 773,245건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4,900만 명, 일본의 인구가 1억 2800만 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 1인당 사건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4배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법률서비스의 공급과정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정부 내에서는 비법률가인 행정공무원들이 고도의 법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법률안을 입안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나서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 저하, 국민의 권리침해, 월권행위, 공무원조직의 비대화 등의 병리현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횡행하는 브로커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브로커의 사건알선료가 40%에 달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변호사업계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브로커들에게 내주고 있는 셈이다.⁴⁾ 사건브로커는 법률시장에서 서비스의 질에 의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된다는 점, 수입료 과다의 원인이 된다는 점, 일부 변호사가 브로커에 의지하여 사건을 독점하면 다른 변호사들의 수임사건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 결과 브로커 사용이 전체 변호사업계에 전염병처럼 번지게 되는 점, 청렴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려는 많은 법조직역 종사자들을 좌절하게 만들어 결국은 부패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점에서 변호사업계가 청산해야 할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II. 현대 법치국가에서 법조인의 역할

현대 법치국가에서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은 송무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평가하며 이를 다른 사회적 과정과 통합하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조인은 행정, 입법, 사회방위, 법에 관한 기획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분쟁상황 혹은 비분쟁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양식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가난, 환경오염, 노동, 도시문제 등에 대한 통계, 사회학적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는 법률가가 순수한 법률이론이나 판례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의 법조인 양성제도, 즉 법학부-사법고시-사법연수원으로 이어지는 법학교육 과정만으로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에 불충분하였다고 할 수

4) 전계 기사

있다. 로스쿨 설립의 취지는 다양한 교육적 배경을 가진 대학생을 선발하여 이들을 종합적 법률지식, 법률전문가로서의 기술, 자유·평등·정의와 인간의 존엄 등 헌법적 가치관을 구비한 인재로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적법절차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로스쿨은 과거 법조인들이 법이론과 법기술에는 능하지만 법학 이외의 분야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조인은 전통적으로 형사사건과 사인간의 재산권 분쟁의 해결에만 치중해 온 결과 정부에서 법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업무는 오히려 비법조인인 행정공무원들이 주로 담당해 왔다. 과거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 지상과제였던 개발독재 시절에 통치자에게 있어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는 사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는바, 아직도 비법률가가 고도로 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은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법현실과 로스쿨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자명해진다. 미국 로스쿨 교육과정에서는 현실의 정치·사회 문제에 관하여 법적 분석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 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진로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법조인이 국회, 지방의회 등 입법 및 정책결정을 하는 기관 혹은 행정부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직에 종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Ⅲ. 미국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현황

미국의 200개 로스쿨은 매년 4만 4,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 변호사자격 취득자 수는 현재 120만 명을 넘고 있다. 그럼에도 로스쿨 졸업생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안정적으로 90% 이상의 취업률(진학률 포함)을 보이고 있다.⁵⁾

5) <http://www.ilrg.com/rankings/law/index.php/3/desc/Employ9Mos/2009>: 2009년 통계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 후 9개월

참고로, 2010년도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졸업생 수는 44,258 명이고, 그 중 NALP survey에 응한 졸업생은 42,854명이다. 취업자(학위과정 진학생 포함) 수는 37,257명(90.5%)으로서 그 중 36,043명(87.6%)은 봉급을 받는 직장에 취업하였고, 1,214명(2.9%)은 학위과정에 진학하였다. 취업자 34,902명 중 full time으로 취업한 사람은 31,105명, part time으로 취업한 사람은 3,797명이다.

취업자 35,501명 중 사적 영역에 취업한 사람은 23,775명(66%), 공공분야에 취업한 사람은 11,726명(32.5%)이며, 공공분야의 취업자 중에는 사법보좌관(judicial clerk) 3,346명, 정부기관 4,601명 등이 포함된다.

취업자 중 변호사 개업(로펌 취직 포함)을 한 졸업생은 18,329명인바, 이를 로펌의 규모별로 분류하면 그 구성원이 2-10인인 로펌 7,160명(39.1%), 11-25인인 로펌 1,632명(8.9%), 26-50인인 로펌 971명(5.3%), 51-100명인 로펌 766명(4.2%), 101-250명인 로펌 1,018명(5.6%), 251-500명인 로펌 1,101명(6.0%), 501명 이상인 로펌 3,750명(20.5%), 규모를 알 수 없는 로펌 892명(4.9%), 단독개업 1,039명(5.7%) 등이다.

로스쿨 학생들의 취업확정 시기를 살펴보면, 설문에 응한 33,205명 중 졸업 전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은 19,021명(57.3%), 졸업 후 변호사시험 결과가 발표되기 전 취업한 사람은 6,671명(20.1%), 변호사시험 합격 후 취업한 사람은 7,513명(22.6%)이다.

미국은 현재 불경기, 재정적자 등의 문제로 인하여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로스쿨 졸업생들이 진출할 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국무장관을 포함하여 상하 양원의 국회의원, 행정부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변호사라는 사실은 미국식 로스쿨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로스쿨은 학교별로 취업직역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로스쿨들이 상호간에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학교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켜나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로스쿨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로펌이 밀집해 있는 뉴욕 주에 위치한 Columbia, NYU, Cornell, University of Pennsylvania 로스쿨 등은 졸업생의 70% 이상이 로펌에 취업하고 있다. 한편 명문대학 로스쿨 졸업생들은 law clerk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는데,

이내에 취업을 하는 졸업생의 비율은, 1위인 University of Virginia와 Yale 99.6%, 50위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96%, 100위인 St. Louis University 93%, 150위인 Willamette University 87.8% 등이다. 한편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로서 취업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66.7%, 2006년 68.3%, 2007년 70.7%, 2008년 67.2%, 2009년 62.5% 등이다.

Yale 로스쿨 50%, Stanford 로스쿨 25%, Harvard 로스쿨 23%등이 그 예이다.⁶⁾

IV. 법조일원화

1.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대법원 인사담당자의 발표에 의하면, 늦어도 2023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변호사·대학교수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부분적 법조일원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왕성하게 활동 중인 변호사나 검사의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데다 전면적인 법조일원화가 가능할 정도의 우수한 법조인을 유인할 적정보수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⁷⁾

법조일원화는 법관직, 검찰, 변호사, 기타 법조직역 사이에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법조인에게 각 직역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 다음 실력과 명망이 있는 중년 이상의 경력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여 종신 혹은 임기 동안 재판에만 전념하게 하는 제도이다. 법조일원화의 목표는 ‘존경 받는 법관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법조일원화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법관직이 모든 법조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검사나 변호사로서 실패한 법조인이 법관직으로 오는 식이 된다면 재판작용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에 대한 처우를 변호사 수준으로 높이고 검사와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2. 재판연구원제도

우리나라 법원도 로스쿨 졸업생들을 재판연구원(law clerk)⁸⁾으로 채용하여 하급법원에 배치하고 미국의 law clerk과 같이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일원화가 되면 재판연구원제도의 시행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판연구원제도가 없다면 검사나 변호사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계 연구보고서, 17면

7) “바람직한 사법개혁방안”, 법률신문 2010. 4. 7.

8) 미국식 law clerk을 재판연구관으로 번역하는 것이 무방하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관을 위한 재판연구관이 상당한 경력을 갖춘 현직 법관이므로, 로스쿨 졸업 후 일정 기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법원직원에 대하여는 편의상 재판연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등으로 10여년 활동한 법조인이 기존 법관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내용, 전통 등을 전수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관직에 취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이 후배 법조인 내지 미래의 법관에게 법률지식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업무처리 요령, 철학, 법원의 전통 등을 전수해 주고, 인격적으로 감화를 주는 것은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미국에서 우수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역은 연방법원과 주 대법원의 law clerk이다. law clerk은 법관의 재판업무 및 연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직원으로서 법관 개인이 채용한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명, 연방항소심법원 판사는 3명, 연방대법관은 4명, 연방대법원장은 5명의 law clerk을 채용할 수 있다.⁹⁾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심법원의 law clerk들은 law school을 졸업하자마자 채용되어 2-3년 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일류 law school의 가장 우수한 졸업생들로 충원된다. 연방지방법원의 law clerk은 판사를 위한 연구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판사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재판에 관한 신청이 접수되면 그 쟁점을 정리하고 판사를 위한 memorandum을 작성하며, 변론이 끝나면 판결의 초안을 작성한다. 재판일정과 관련하여 변호사나 증인을 접촉하는 일도 law clerk의 업무이다.¹⁰⁾

law clerk의 보수는 같은 수준의 로스쿨 졸업생들로서 로펌에 취직한 사람에 비하여 훨씬 적지만 law clerk을 마치고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 그 사이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파격적 대우를 받게 되고, 향후 연방법원 판사가 되거나 학계로 진출할 경우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력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연구원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채용의 주체, 근무기간, 채용규모, 어떤 심급의 법관에게 배속시킬 것인지, 어떠한 업무를 줄 것인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법원은 2012년 로스쿨 졸업생 중 100명 정도를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여 일선 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관 수가 2,500명 정도인 사정을 감안할 때 향후 신규 졸업생이 배출됨에 따라 재판연구원이 자연적으로 증원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100명은 너무나 부족한 숫자이다.

9) Doris Marie Provine, "Certiorari", Encyclopedia of American Judicial System(Volume II), Macmillan Pub Co (1987), 788면

10) Robert A. Carp·Ronald Stidham·Kenneth L. Manning, Judicial Process in America (7th edition), CQ press (2007), 44면

3. 검찰제도의 개선

검찰의 정체성을 현재와 같이 범죄수사에서 찾는다면 검사는 수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법조일원화는 성공할 수 없다.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장기간 변호사로 활동하던 법조인이 검찰에 들어가 유능한 검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한편 장기간 검사로 재직한 법조인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기술은 쇠퇴하여 판사나 변호사로서의 업무능력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일원화는 판사, 검사, 변호사 사이에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법률지식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질적이어서 항상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검찰권 남용방지 등을 위하여는 경력검사제를 전제로 한 임용보다는 검사직을 경력법조인에게 대폭 개방하고, 그 역할도 직접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준법통제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4. 분쟁예방 및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의 확대

법인이든 개인이든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거나 변호사가 현장에 입회를 하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송사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남소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비례 민사소송사건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몇 배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들의 법률생활이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사건이 폭주하여 법원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이유로 법관증원만을 주장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발상이다.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혹은 특정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법원의 문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678명,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179명에 불과함에도 무리 없이 사법절차가 유지되는 것은 일반국민들 사이에 변호사를 통하거나 그의 자문을 받아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송보다는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를 선호하며, 소송으로 제기된 사건도 85% 이상이 조정, 화해 등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인들이 판결절차를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법원이 분쟁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적

법절차와 재판의 정확성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고, 소송이 지연되면 소송비용도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으며, 변호사보수도 시간에 비례하여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법관들이 본인소송을 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석명권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든가 심지어 공격방어방법까지 알려주어 재판의 공정을 해하고 당사자소송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제는 일반국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졌고,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의 수가 폭증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 기회에 국민들의 법률생활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변호사들이 송무에만 매달리지 않고도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이 안정되며, 법관의 증원을 억제하거나 그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V.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현재 우리나라에는 변리사 3,820명, 법무사 5,811명, 세무사 8,500여명, 노무사 1,300여명, 관세사 1,154명 등 2만600여명의 법조인접직역 종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¹¹⁾ 법조인접직역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궁극적인 분쟁해결은 변호사가 맡고 있어 국민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강요할 뿐 아니라 이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문제되고, 또한 향후 로스쿨에서 대량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지금처럼 나눠먹기식 법률서비스로는 변호사는 물론 인접자격사들 역시 생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¹²⁾

법조인접직역 통합논의와 유사한 사례는 프랑스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변호사의 각종 인접 직역의 충돌로 골머리를 앓던 프랑스는 1971년 ‘특정 법조전문직과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영국의 solicitor와 유사한 대소사와 상사법원 변호사를 변호사로 통합하였다고 한다. 또한 1990년에는 우리의 법무사와 유사한 법률상담사를 통합하면서 이들에게 일정 요건 하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¹³⁾

로스쿨을 통하여 배출된 법조인들이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

11) “법무부,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본격 검토”, 법률신문 2010. 5. 3.

12)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논의 진통”, 법률신문 2008. 12. 18.

13) “법조인접직역 변호사로 통폐합 하자”, 법률신문 2008. 12. 9.

자는 것이 로스쿨 출범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이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려는 법률개정안은 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인재를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양성하겠다고 하는 로스쿨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다.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전문가라는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의료과오소송에서도 의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분야에 관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전문가가 기술적인 측면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 주고 법정에서 전문가증인(expert witness)이 증언을 하는 것이 正道일 것이다. 미국의 법정에서는 전문가증인이 출석하여 고도의 기술적 쟁점에 관하여 판사 및 배심원에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고, 법정에는 이를 위하여 프로젝트 등 각종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VI. 법조직역의 확대

1. 기업의 지원인제도

미국 기업의 경우 소송이 빈번하고 법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력하며,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높은 관계로 각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대규모의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많은 숫자의 사내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¹⁴⁾ 미국에서는 Sarbanes-Oxley Act¹⁵⁾ 이후 기업의 내부통제 책임자로서의 법률전문가의 고용은 일상적인 것이 되고 있다.¹⁶⁾ 또한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법무팀 외에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준법감시인을 두고 준법감시부서 및 준법감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은행법 제23조의3),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투자중개·매매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보험회사(보험업법 제17조) 등은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그 자격을 변호사에 한정하

1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계 연구보고서, 26면

15) 이 법은 Enron, Tyco International, Adelphia, Peregrine Systems, WorldCom 등 대기업들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으로 기업 및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실추되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년 제정되었는데, 상장기업에 있어서 회계보고서에 대한 이사의 개인책임, 회계사의 독립성, 금융거래에 대한 공개의무의 강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1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계 연구보고서, 26면

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 등도 준법감시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률전문가보다는 전직 공무원으로 충원되는 예가 많아 문제이다.¹⁷⁾

국회는 2011. 3. 11. 본회의에서 개정상법을 통과시켰는데, 법조직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규정을 신설하였다. 신상법 제542조의13는, 상장회사는 그 임직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했을 경우 이를 조사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상장회사는 1800여 개에 이른다.

2. 행정부

가. 법무담당관

2006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민사사건이 10,027이고 청구금액이 3조 2,000억 원을 상회하며, 행정사건은 26,925건에 이른다. 그 중 국가 패소비율은 민사사건 20.3%, 행정사건 12%이고, 민사사건의 패소금액은 1,060억 원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특히 행정소송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준법행정의 적시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특히 행정소송에 있어서 패소사건 수가 연간 3,200건을 상회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¹⁸⁾

정부입법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1,102건에 달했고 지난해와 올해만도 900여건 가까운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률전문가의 부족으로 법령입안 단계에서 법령의 위헌성과 체계 부적합성을 걸러내지 못하고 법적 타당성 검토도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¹⁹⁾

현재 행정부 각 부처 ‘직제시행규칙’에는 법무담당관 직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

17) 예컨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제4항 제1호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이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18) 연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계 연구보고서, 32면

19) “행시 폐지… 공무원임용 완전개방형으로”, 법률신문 2010. 3. 12.

으나 대개 일반직 공무원으로 취급되다보니 순환보직이 적용되고 법률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법무담당관으로 취임한 변호사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2년 2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²⁰⁾ 이 정도의 기간이라면 법무담당관이 해당기관의 관련 업무를 거시적·미시적으로 충분히 파악하고 자신의 업무처리 요령을 확립하기 전에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법무담당관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담당관이 자긍심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또한 모든 행정작용에 대하여 일일이 준법통제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 공무원임용제도의 개선

미국, 영국은 직무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직위에서 외부 임용을 허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를 취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매년 로스쿨 졸업생 3,800여 명이 정부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개방형 공무원임용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미국 무역 대표부(USTR)를 예로 들면, 최상위 공무원 7인 중 5인, 기타 고위 공무원 23인 중 8인이 변호사인 데다 실무인력 대부분이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다.²¹⁾

우수한 로스쿨 졸업생을 행정부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Presidential Management Fellows (PMF) 프로그램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1977년 시작하여 2003년 수정·보완된 이 프로그램은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가 후원하는데, 공공정책의 입안, 집행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과 통솔력이 뛰어난 대학원 졸업생을 연방공무원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되었다. 대학원 졸업생들은 출신학교의 지명과 연방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2년간 정부의 각 부처에 Fellow로 임용하는데, 심사기준은 출신학교에서의 학문적 우수성, 리더십, 공공정책에 대한 사명감 등이다. 이들은 1년간 근무 후 근무평정을 거쳐 승급되고, 나머지 1년간의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연방정부의 정규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²²⁾ 이 제도는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쌓은 최신의 전문지식을 정부의 행정업무에 즉시 반영할 수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국가공무원으로 흡수하여 행정서비스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0) “공직진출 변호사 평균 26개월 만에 퇴직, 특별채용 등 법무담당관제 획기적 전환 필요”, 대한변협신문 2010. 3. 8.

21) 위 기사

22) <https://www.pmf.opm.gov>

행정고시를 2011년까지 폐지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특정 분야 경력자 등에 대한 정부 부처별 특채를 확대하는 등 고위공직자 채용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당시 정책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2012년부터 행정고시를 5급공채시험으로 명칭만 변경한 채 고급공무원 채용방식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한번 공무원이 되면 평생을 보장받는 공무원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하여 한국의 행정고시와 유사한 현행 1종 시험과 2종 시험을 폐지하고 종합직과 일반직을 새로 신설하였다.²³⁾

3. 입법부

국회의 본연의 역할은 법의 제정에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작용에 관한 업무에 법조인이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로스쿨 졸업생이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기획조정실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진출하여 국회 내부의 규칙 제정·개정 작업 혹은 입법에 관한 자료조사 및 연구를 담당하는 것은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의 헌법합치성, 우리나라 법체계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1988. 9. 1. 설립된 후 2010. 5.까지의 통계를 보면, 총 698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위헌결정이 137건, 헌법불합치결정이 32건, 한정위원결정이 9건, 한정합헌결정이 14건에 이른다.²⁴⁾ 한편 2010. 7. 5.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입법은 122건이다.²⁵⁾ 이와 같이 수많은 법률에 대하여 위헌심판이 내려지고, 다른 한편으로 국회의 매 회기마다 100건이 넘는 법률안이 제출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이 얼마나 줄 속으로 제정·개정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역사상 최초로 위헌법률심사를 한 이래 연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임을 이유로 이를 무효화시킨 것은 160건에 불과하다.²⁶⁾ 미국에서 200여 년간 위헌결정이 난 법률의 건수와 우리나라에서 20여 년간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건수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다.

23) “행정고시 폐지되면 공무원 채용 어떻게 바뀌나”, 한국경제신문 2008. 2. 11.

24) <http://www.ccourt.go.kr/>

25) <http://www.moleg.go.kr>

26) Lawrence Baum, *The Supreme Court* (9th edition), CQ Press (2007), 165면

Ⅶ. 결어

정부기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법이나 규칙의 제정 및 해석과 직결되는 업무를 비법률가인 공무원들이 담당해 온 것은 과거 법조인 수가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조인의 수급이 충분하게 된 이상 이러한 업무에 법률전문가를 적극적으로 관여시키는 것은 예외적 상황을 원칙적 모습으로 환원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변호사실업자를 구제하는 일자리창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개혁의 목표는 rule of law를 확립하고, 우리의 법률 문화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상 법조일원화는 필연적이다. 법조인접직역의 통합도 시급하다. 남아 있는 것은 정치적 결단뿐이다.

주제발표

제2주제 신규 법조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
- 이용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2

신규 법조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¹⁾

발표문

이 용 구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1. 서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을 둘러싼 언론보도는²⁾ 2012년에 법조인이 될 많은 법전원 학생들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평가제도와 맞물려 법전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법전원 학생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생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최종 평가를 마친 41기 사법연수생 중 변호사로 진출하려는 연수생 역시 어느 때보다 험난할 취업전쟁을 앞두고 있다. 2011. 4. 29.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의무적인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지만, 취업의 좁은 관문은 동료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법조인을 키우고 있고, 미래의 법조인을 이렇게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사법시험과 법전원의 과도기적 병존으로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신규 법조인이 법률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앞으로 형성될 신규 법조인 진출시장에서 신규 법조인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 가장 큰 그룹의 구별이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분류일 것이다. 이 점에서 사법연수생과 법전원 학생은 심각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고, 올해 초에 발생한 검사 임용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그러한 경쟁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재경지역의 법전원과 비재경지역 법전원 졸업생 사이의 경쟁도 겪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신규 변호사들의 주된 의뢰인이 ‘개인’이라면 신규 변호사들은 경험이 풍부한 기성 변호사들과의 경쟁도 겪어야 한다.

1) 이 글은 2011년 5월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주최로 개최된 ‘법조인 양성의 전환기, 그 대응방안의 모색’ 심포지엄 발제문인 ‘줄고’신규 법조인 양성의 개선 및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을 그 이후의 변경 내용에 따라 수정한 것이다.

2) 연합뉴스 2011. 11. 1.자(로스쿨생 졸업생 1천면 대량실업 예고), 동아일보 2011. 11. 1.자(로스쿨 1기 졸업생 1000명 대량실업사태 우려), 한겨레신문 2011. 11. 1.자(로스쿨 1기 졸업생들 취직난), 중앙일보 2011. 11. 2.자(로스쿨 1기 1000명은 일자리 없다) 등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종래 일부 법학자와 경제학자·경제관료들이 추진해 온 법률서비스 분야의 개혁이고,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사 대량증원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법률서비스의 가격은 국가가 법조인 진입시장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높게 유지되었으므로 이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가격을 낮추어 법률시장이 시장의 원리대로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공급은 수요를 창출하므로 변호사의 공급을 늘리면 변호사가 활동하는 직역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였다. 그 결과 1996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증가시켜 왔고, 그 연장선에서 법전원의 정원이 2,000명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신규 변호사의 대량공급이 과연 전체 법률서비스의 가격을 낮출 것인지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일부 사내변호사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변호사의 대량공급이 변호사의 직역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다.

변호사의 대량 공급이 변호사의 직역 확대에 기여하지 못한 원인은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법무법인의 매출 증가와 대형화에 힘입어 증가하는 신규 변호사의 일정 부분을 법무법인이 흡수함으로써 법무법인을 통한 송무와 기업법무에 변호사들이 투입되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로 개업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송무시장에서 얻는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보다 구조적으로는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오랫동안 변호사가 관여하는 영역의 비변호사 진입장벽을 높이면서 그 안에서 송무로 인한 총 매출액을 분배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기존의 변호사 송무시장 외부에서는 법률가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 비변호사의 관여 영역을 넓혀 왔다는 점이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에서는 법과대학 출신 소송수행자나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 오랫동안 변호사의 역할을 대신하였고, 개인에 대해서도 법무사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송무시장 외에 새로이 변호사가 진출하는 상황에 대하여 강력한 저항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저항을 신규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³⁾ 이러한 저항에는 좁은 송무시장을 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해 있던 변호사 직역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도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에 부수하여 변호사들이 기존 송무시장에 머무를 수 있었던 원인으로서는 소송업무 자체가 직권주의적 요소, 서면 중심의 변론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저렴한 여러 건의 소송업무

3) 유사한 견해로는 설민수, 미국 로스쿨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한국의 개혁제도 검토, 사법논집 제40집, 2005년 12월, 65면 참조

를 처리함으로써 송무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인들이 2012년 이후에도 그대로 작용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먼저,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소의 매출이 증가할 것인지 낙관하기 어렵다. 이는 고객인 기업이나 개인이 처한 산업구조와 경제동향에 기본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다만, 송무분야만을 보면, 민사합의사건은 2002년 29,660건에서 매년 평균 4,000여 건씩 증가하여 2009년 55,168건으로 증가하였지만, 민사단독사건은 2006년 279,804건을 기점으로 그 이후 감소하여 2009년 238,848건에 그쳤고, 소액사건은 증감을 반복하여 2005년에는 868,470건, 2006년에는 967,588건, 2007년 901,488건, 2008년 944,712건, 2009년 780,220건에 그쳤다. 다만, 소송물가액은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2002년 34,704건에서 2009년 58,727건으로 약 69% 증가하였고,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사건도 2002년 31,532건에서 2009년 46,086건으로 약 46% 증가하였다. 반면, 5,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2006년 1,202,753건을 정점으로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9년에는 969,048건에 그쳤다. 또한, 1심 본안 민사본안사건의 변호사 선임 건수는 합의사건이 2005년 40,930건에서 2009년 53,387건으로 약 30% 증가하였지만, 단독사건은 2005년의 212,724건에서 2009년 234,780건으로 약 10% 증가하는 데에 그쳤고, 소액사건은 2005년 883,066건에서 2009년 814,297건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추세를 보면, 신규 변호사가 수임하기 어려운 합의사건 중 고액의 사건 및 그 변호사 선임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규 변호사가 수임하기 쉬운 단독·소액사건의 저액의 사건 및 그 변호사 선임건수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인터넷 정보의 활성화와 법원의 소송절차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단독개업변호사가 접근하기 쉬운 중소액의 민사사건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수한다면, 변호사가 제공하는 지식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독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는 점도 신규 변호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신규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개업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소의 고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고 결국, 변호사 고용시장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 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예상되는 변호사 고용시장의 상황과 고용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미국, 일본의 예를 참조하기로 한다.

II.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취업현황

1. 연수원 수료자의 변호사 취업비율

2011. 9. 30. 기준 사법연수원 수료자(연수원 1기~40기)들이 진출한 직역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취업현황

출처 :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기수	임명인원	수료인원	판사	검사	변호사등	군복무 등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소계
1	32	32	7	7	-	8	4	6	18
2	49	49	15	4	-	7	19	4	30
3	81	80	26	4	-	31	15	4	50
4	79	79	26	13	-	18	18	4	40
5	59	59	14	10	1	14	18	2	34
6	58	58	11	5	-	19	20	3	42
7	58	58	10	9	2	23	11	3	37
8	58	58	13	7	3	21	10	4	35
9	74	72	13	12	3	27	13	4	44
10	98	98	34	10	5	33	16	-	49
11	112	112	31	15	8	33	22	3	58
12	150	149	46	21	10	44	26	2	72
13	273	267	55	60	53	46	40	13	99
14	311	310	46	55	106	34	20	49	103
15	301	299	34	44	97	47	35	42	124
16	307	302	42	34	99	43	35	49	127
17	309	307	34	26	94	45	39	69	153
18	297	293	34	34	88	46	34	57	137
19	305	300	40	33	101	36	40	50	126
20	304	301	44	36	108	47	33	33	113
21	300	295	37	54	82	40	36	46	122
22	297	303	42	37	96	61	41	26	128
23	289	291	45	38	88	55	36	29	120
24	293	291	56	48	40	39	29	79	147
25	284	285	59	43	58	74	32	19	125
26	292	289	85	43	80	52	17	12	81
27	315	315	76	61	85	52	15	26	93
28	496	486	74	73	207	72	21	39	132
29	592	590	100	86	265	64	39	36	139

기수	임명인원	수료인원	판사	검사	변호사등	군복무 등			소계
						판사	검사	변호사 등	
30	694	678	109	89	327	58	37	58	153
31	717	712	114	89	373	50	24	62	136
32	800	798	109	82	437	59	25	86	170
33	976	966	113	77	629	42	62	42	147
34	972	957	96	85	629	45	42	60	147
35	887	895	91	90	544	46	53	71	170
36	998	975	89	88	618	46	77	57	180
37	977	974	95	76	611	46	30	116	192
소계	13,494	13,383	1,965	1,598	5,947	1,523	1,084	1,265	3,873
38	971	979	92	88	611	-	-	-	188
39	1,001	978	89	90	613	-	-	-	186
40	969	970	81	90	610	-	-	-	189
계	16,435	16,310	2,227	1,866	7,782	4,435			

1. 33기, 34기, 35기 법무관 출신 검사 임용자 수에는 경력법조인의 검사 임용자 수가 포함되어 있다.

연수원 1기부터 37기까지 총 수료자 13,383명 중 3,488명인 26.0%가 법관으로, 2,682명인 20.0%가 검사로 임관되었고, 나머지 53.9%가 변호사가 되었다. 그런데 이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500명 이하였던 시기를 포함한 것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600명 이상 시기의 수료자 임관 비율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600명 이상인 시기에 해당하는 연수원 29기부터 37기까지의 연수원 수료자 취업비율을 별도로 계산하면, 수료자 7,545명 중 법관이 1,372명(18.2%), 검사가 1,151명(15.3%), 변호사 5,021명(66.5%)이고,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 시기인 연수원 33기부터 37기까지 연수원 수료자 4,767명의 취업 비율을 다시 별도로 계산하면 법관이 709명으로 14.8%, 검사가 680명으로 14.3%, 변호사가 3,377명 70.8% 정도이다. 연수원 33기 이후의 취업 비율은 법무관 복무 중인 수료자가 아직 취업하지 않은 38기부터 40기, 나아가 연수 중인 41기 연수생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연수원 수료자의 변호사 취업 현황

다음, 연수원 수료자(법무관 제외) 중 31기부터 40기까지 신규 변호사의 취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수원 수료자 취업현황(31기~40기)

기수	취업연도	대상인원	법무법인	고용	개업	공공기관 ⁴⁾	기업	기타 ⁵⁾	불명 ⁶⁾
31	2002	373	255	59	7	25	24	3	0
32	2003	437	262	135	0	22	3	15	0
33	2004	629	171	125	172	32	36	20	73
34	2005	629	180	124	185	59	55	22	4
35	2006	544	181	113	112	71	48	19	0
36	2007	618	273	125	79	74	46	20	1
37	2008	611	347	75	50	56	62	14	7
38	2009	611	284	144	43	51	57	14	18
39	2010	613	286	118	52	60	61	2	34
40	2011	610	279	102	47	63	75	1	43
계		5,675	2,528	1,120	747	490	467	130	180
비율		100	44.5	19.7	13.2	8.6	8.2	2.3	3.5

출처 : 시법연수원 매년 발표 자료

40기까지의 취업현황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변호사 취업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5% 정도를 고용하였고, 그 나머지가 개인·합동법률사무소(19.7%), 공공기관(8.6%), 기업(8.2%)이며, 단독 또는 공동개업이 1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합동법률사무소 고용은 35기까지는 대체로 20% 안팎을 유지하였는데, 많게는 32기의 30.9%, 38기의 23.6% 정도였다가, 37기의 경우는 12.3% 정도에 불과하였고, 40기의 경우 2011. 9. 30. 현재 16.7%이다.

공공기관 취업률은 31기부터 36기까지는 기업 취업률보다 컸지만, 37기부터는 기업 취업률보다 작은 비율에 머물러 있고, 그것도 연도별로 많게는 20여 명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변호사 취업시장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공공기관별, 연도별 취업자 수를 보면, 헌법재판소, 감사원, 정부법무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방부(군법무관) 등이 매년 신규 변호사를 꾸준히 고용하였고, 법원도 매년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정하였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간헐적인 고용에 그치고 있다.

4) 국선전담변호사를 포함한 국가기관과 공기업, 대한변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다.

5) 사회단체, 장기법무관, 사업, 학업 등이다.

6) 매년 6월 말 기준 미취업자이다(40기는 9월 말을 기준으로 하였다).

공공기관 연도별 취업현황⁷⁾

기관	35 (2006)	36 (2007)	37 (2008)	38 (2009)	39 (2010)	40 (2011)
중앙행정부처	36	44	20	14	13	16
감사원	2	4	4	2	4	4
공정거래위원회	0	1	1	0	1	0
공정거래조정원	0	0	0	0	0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	1	1	1	0	1
국가인권위원회	2	3	0	0	0	0
국선전담변호사	5	6	10	13	10	9
국회 ⁸⁾	1	0	4	1	2	4
금융감독원	0	2	1	0	0	0
대한법률구조공단	8	3	0	4	3	3
법원(법원사무관)	3	0	1	0	1	1
정부법무공단	0	0	2	2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1	0	0	2
지방자치단체 ⁹⁾	0	1	0	2	0	0
한국소비자원	0	1	2	0	0	0
군법무관(장기)	1	1	0	0	18	10
헌법재판소	2	1	4	2	2	3
기타 ¹⁰⁾	14	5	5	10	4	4
합계	71	74	56	51	61	63

출처 : 사법연수원 매년 6월 발표 자료

한편, 개업변호사의 수는 연수원 수료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33기부터 35기까지 100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36기부터 100명 미만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에는 법무법인의 고용 증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기를 중심으로 취업현황을 보면, 33기(2004년)~35기(2006년)까지 변호사 취업대상인원이 32기(2003년)에 비해 200명 가까이 증가하였음에도 법무법인 고용자 수나 개인·합동법률사무소 고용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였고, 공공기관이나 기업 취업자 수가 미미한 정도로 증가하는 데 그치자, 그 증가인원이 대부분 개업과 미취업 상태로 귀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36기(2007년)부터 40기(2011년)까지 변호사 취업대상인원은 33기, 34기와 유사하였는데, 법무법인, 공공기관, 기업 고용자 수가 증가함

7) 원직 복귀를 포함한다.

8)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원 보좌관을 포함한다.

9) 36기의 경우 전남도청에 원직 복귀한 것이고, 38기의 경우 경기도 상담원과 고양시청에 취업한 것이다.

10)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한국철도공사, 증권거래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가정법률상담원, 증권예탁결제원, 토지개발공사, 한국감정원 등이다.

에 따라 개업자 수와 미취업자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요 변호사 취업기관과 연도별 취업 인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3개 법무법인 취업현황

기수	법무법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계
33	171	7	3	7	8	6	-	-	3	3	3	3	-	-	-	43
34	180	6	7	5	11	7	4	3	-	4	3	-	6	-	2	58
35	181	9	6	9	9	6	3	6	5	6	3	2	3	1	4	72
36	273	12	10	10	8	11	8	4	7	9	3	3	2	7	3	97
37	347	14	20	12	14	13	11	11	15	11	5	4	4	1	2	137
38	284	11	19	20	11	14	9	3	8	6	4	2	2	3	2	114
39	286	15	13	12	14	8	6	5	14	4	6	2	1	1	6	107
40	226	16	16	10	11	7	10	1	8	6	6	1	1	4	2	99
계	1,722	90	94	85	86	72	51	33	60	49	33	17	19	17	21	727

출처 : 사법연수원 매년 6월 발표 자료

※ 매출액, 고용변호사의 수 등과 무관하게 연수원 수료자 다수 인원 고용 법무법인을 발체하였고, 법무법인의 순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법무법인은 편의상 제외하였다.

3. 취업 이후 2011년까지의 이직 현황

그러나 위와 같은 취업현황은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6월까지의 취업현황일 뿐 위와 같은 취업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법무법인 등의 취업이 일시적인 것이고, 2~3년의 단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취업형태가 나타난다면, 취업 당시의 고용현황은 종국적인 취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11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사법연수원 35기(2006년 취업)부터 39기(2010년 취업)까지 변호사 이직현황을 조사하였다. 다만, 이 조사는 취업 후 개괄적인 이직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회원현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불명으로 처리하였다.

가. 법무법인 취업자의 2011년 현황

기수		개업	타 법무법인	기업	공공부문	계속 근무	불명	소계
35	인원	39	43	4	1	62	32	181
	비율	21.5%	23.8%	2.2%	0.6%	34.3%	17.7%	100%

기수		개업	타 법무법인	기업	공공부문	계속 근무	불명	소계
36	인원	44	65	8	4	98	54	273
	비율	16.1%	23.8%	2.9%	1.5%	35.9%	19.8%	100%
37	인원	47	75	8	3	163	51	347
	비율	13.5%	21.6%	2.3%	0.9%	47.0%	14.7%	100%
38	인원	28	55	1	2	143	55	284
	비율	9.9%	19.4%	0.4%	0.7%	50.4%	19.4%	100%
39	인원	43	24	1	2	163	53	286
	비율	15.0%	8.4%	0.3%	0.7%	57.0%	18.5%	100%

나. 국가·공공부문 취업자의 2011년 현황

기수		개업	타 공공부문	법무법인	기업	계속 근무	소계
35	인원	14	2	5	0	50	17
	비율	19.7%	2.8%	7.0%	0.0%	70.4%	100%
36	인원	7	2	18	0	47	74
	비율	9.5%	2.7%	24.3%	0.0%	63.5%	100%
37	인원	8	0	4	0	34	46
	비율	17.4%	0.0%	8.7%	0.0%	73.9%	100%
38	인원	6	1	5	0	26	38
	비율	15.8%	2.6%	13.2%	0.0%	68.4%	100%
39	인원	7	0	2	0	51	60
	비율	11.7%	0.0%	3.3%	0.0%	85.0%	100%

다. 기업 취업자의 2011년 현황

기수		개업	타 기업	법무법인	공공부문	계속 근무	소계
35	인원	18	0	15	0	15	48
	비율	37.5%	0.0%	31.3%	0.0%	31.3%	100%
36	인원	25	1	8	0	12	46
	비율	54.3%	2.2%	17.4%	0.0%	26.1%	100%
37	인원	31	1	11	0	19	62
	비율	50.0%	1.6%	17.7%	0.0%	30.6%	100%
38	인원	23	5	6	1	22	57
	비율	40.4%	8.8%	10.5%	1.8%	38.6%	100%
39	인원	23	2	2	0	34	61
	비율	37.7%	3.3%	3.3%	0.0%	55.7%	100%

라. 변호사 이직현황

35기부터 39기까지 기수별, 개인별 차이에 따라 이직이 발생하는 경우를 배제하고, 근무 연수에 따라 일정한 이직현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1) 법무법인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취업한 법무법인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는 취업 1년 후에는 57%에 불과하다. 불명인 경우 그 전원이 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라고 보더라도 서울변호사회 소속 법무법인 취업자 233명(286명 - 53명) 중 1년 후에 계속 취업을 하는 경우는 71% 정도이고, 29%가 이직을 하고 있다. 이직 이후의 취업형태를 보면, 개업이 15%(서울변호사회의 경우만 산정하면 18.4%)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취업 2년 후에는 50.4%(서울변호사회의 경우만 가정하면 62.4%)만이 연수원 수료 당시의 법무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있고, 나머지 49.6%(서울변호사회의 경우만 가정하면 37.6%)가 이직을 하고 있다. 다만, 38기의 경우는 법무법인 취업자의 20%가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하였다.

취업 5년 후에는 34.3%(서울변호사회의 경우만 가정하면 41.6%)만이 연수원 수료 직후의 법무법인에 그대로 취업하고 있고, 나머지 66.7%(서울변호사회의 경우만 가정하면 58.4%)가 이직을 하였는데, 법무법인 취업 후 이직자의 23.8%가 다른 법무법인에 취업하고 있다.

연수원 수료 1년 후부터 5년 후까지의 추이를 보면, 법무법인 취업자 중 약 20% 정도가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하고, 그 다음 약 15% 정도가 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국가·공공부문의 경우

국가·공공부문 취업자의 경우는 이직률이 법무법인보다는 현저히 작지만, 법무법인 취업자가 많은 36기를 제외하고는 이직자의 다수가 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기업의 경우

기업의 경우는 이직률이 매우 커, 취업 1년 후인 39기조차도 계속 취업자가 55.7%에 불과하였다. 특히, 기업에 취업하였다가 이직하는 경우 대부분 개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소결

결국, 고용시장의 안정성은 국가·공공부문 > 법무법인 > 기업의 순이고, 국가·공공부문 취업자와 법무법인 취업자의 약 15%씩, 기업 취업자의 45% 정도가 취업 후 5년 이내에 개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진출한 신규 변호사의 높은 이직률, 국가·공공부문 취업자나 법무법인 취업자의 적지 않은 개업률에는 몇 가지 원인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신규 변호사에게 조직의 위계질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부여하는 개업형태는 매력적인 업무형태일 수 있고,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특히, 기업 변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이 제시할 수 있는 높지 않은 보수와 기업 내 비변호사 직원과의 관계에서 오는 장벽, 보직순환에서 비롯되는 비법률사무의 취급 가능성, 승진의 불투명성 등에서 비롯된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업이 신규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한다고 해서 신규 변호사의 기업 진출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2012년 이후의 변호사 취업 예상

가. 신규 변호사의 수

그런데 법전원 1기생이 졸업하는 2012년 이후의 변호사 취업상황은 전혀 양상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신규 변호사 수

연도	연수원 수료		법무관 종료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변호사 자격취득	법관, 검사 임용	전체 신규 변호사
	기수	인원	기수	인원	입학	수료	시험합격	신규 변호사			
2009	38	979	35	170	2,000				961	279	682
2010	39	978	36	180	2,000				972	302	670
2011	40	970	37	189	2,000				970	247	723
2012	41	1,027	38	188	2,000	1,800~ 2,000	1,500	1,215 ¹¹⁾	2,235	350 ¹²⁾	1,885
2013	42	853	39	186	2,000	1,800~ 2,000	1,500 ¹³⁾	1,215	2,092	270 ¹⁴⁾	1,822
2014	43	752 ¹⁵⁾	40	189	2,000	1,800~ 2,000	1,500	1,215	2,014	270	1,844
2015	44	525	41	195 ¹⁶⁾	2,000	1,800~ 2,000	1,500	1,500 ¹⁷⁾	2,121	270	1,851

연도	연수원 수료		법무관 종료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변호사 자격취득	법관, 검사 임용	전체 신규 변호사
	기수	인원	기수	인원	입학	수료	시험합격	신규 변호사			
2016	45	310 ¹⁸⁾	42	162	2,000	1,800~ 2,000	1,500	1,500	1,914	270	1,644
2017	46	240	43	142	2,000	1,800~ 2,000	1,500	1,500	1,837	270	1,567
2018	47	240	44	99	2,000	1,800~ 2,000	1,500	1,500	1,794	270	1,524
2019	48	120	45	58	2,000	1,800~ 2,000	1,500	1,500	1,678	270	1,408
2020	49	120	46	45	2,000	1,800~ 2,000	1,500	1,500	1,665	270	1,395
2021			47	45	2,000	1,800~ 2,000	1,500	1,500	1,545	270	1,275

즉,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과도기적 병존으로 인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새로 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되는 인원은 법관 및 검사, 재판연구원 임용자를 제외하고 총 16,215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1. 10. 31. 현재 변호사 등록자 10,997명의 1.5배 정도 되는 인원이고, 사법시험제도가 시작된 1963년부터 2008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총 16,916명에 가까운 숫자이다. 즉, 45년 동안 이루어진 법조인 수의 증가가 불과 10년 사이에 일어나는 셈이고, 신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2011년의 취업경쟁보다 많게는 2.7배, 작게는 1.9배의 경쟁을 겪어야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나. 법무법인의 신규 변호사 채용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그동안 신규 변호사의 44.2%를 채용했던 법무법인, 그중에서도 법무법인 채용 변호사의 약 42%를 채용했던 13개 법무법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법무법인의 법전원 졸업생 채용의 기본방향은 매출액 및 업무의 성격 변화(신규 사업 진출 여부, 난이도의 증가 등), 신규 변호사 업무시설 확보 등에 따른

- 11)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군입대자를 제외한 인원수이다.
- 12) 법무관 종료자 중 몇 명이 법관, 검사로 임용될 것인지 미정이지만 연수원 수료자를 포함하여 250명이 임관될 것으로 가정하고, 재판연구원 100명을 추가하였다.
- 13)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아직 미정이지만 같은 인원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 14) 2013년 이후 임관이 예상되는 검사 임용자 약 90명, 법관임용이 예상되는 약 80명, 재판연구원 100명 정도가 변호사로 취업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15)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자 700명에 제52회 이전 입소유예자, 복학자를 더하고 제53회 입소유예자(휴학자) 등을 뺀 인원수이다. 이하 같다.
- 16) 법무관은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기의 군미필자 비율이 19~20% 정도였으므로 그 이후에도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전원 학생 중 군미필자 비율은 19%로 가정한다.
- 17)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군복무 후 제대하는 인원수를 더한 인원수이다.
- 18) 2014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는 아직 미정이지만, 2015년 이후 200명, 100명 등으로 순차 감소할 것을 가정한다.

전체 고용규모(연수원 수료자를 포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소수 법무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무법인이 법전원 졸업생을 연수원 수료자와 동등하게 채용·대우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 법무법인의 전체 신규 변호사 채용자 수는 법전원 졸업생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는 정도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2011. 3. 31. 현재 신규 변호사 채용공고 내지 채용방침을 정한 법무법인의 경우 연수원 수료예정자에 대한 채용은 2011년 채용수준을 유지하거나 채용인원을 늘린 곳도 있지만 2011년 채용수준보다 소폭 감소한 곳이 더 많다.

어느 정도 채용계획이 확인된 10개의 법무법인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개 법무법인의 2011~2012년 변호사 채용 예정인원

연도	대상	a	b	c	d	e	f	g	h	i	j	계
2010	연수원 수료자	15	13	12	14	8	14	6	4	6	5	97
2011 ¹⁹⁾	연수원 수료자	16	16	10	11	7	8	6	6	2	1	83
2012	연수원 수료자	13 ²⁰⁾	10 ²¹⁾	10	8 ²²⁾	12	6	10	5 ²³⁾	3	5 ²⁴⁾	82
	법전원 졸업생	20	15 ²⁵⁾	11	15	15	21	30	5	5	10 ²⁶⁾	147

출처 : 법무법인 담당자 질의 결과

법무법인이 계획하고 있는 최대 인원을 모두 채용한다는 가정을 하면, 위와 같은 예상 인원수는 2012년의 채용자 수는 2011년 채용자 83명의 2.75배이다.

그런데 법전원 졸업생 채용예정 인원이 21명 또는 30명인 법무법인은 변호사에게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선발 후 계속 심사의 방향으로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모 법무법인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법전원 졸업생을 차등 대우한다

19) 2011. 2. 28.을 기준으로 한 인원수이다.

20) 연수생, 군법무관 포함해서 25명 채용예정이므로 1/2 정도인 13명을 연수원 수료자로 채용한다고 가정하였다.

21) 연수원 수료자 채용예정인원은 그 인원수를 기준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의미할 뿐 정확한 인원수는 아니다. 최대 예정자 수를 채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이하 같다.

22) 군법무관 제외

23) 10~15명 정도를 채용하지만, 연수원 수료자와 군법무관, 법전원 졸업생 사이의 인원수 안배는 미정이다. 연수원 수료자와 법전원 졸업생을 안분하여 5명씩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4) 군법무관 제외, 10~15명을 연수생, 군법무관, 법전원 졸업생으로 안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 법전원 2기를 포함하여 20여 명을 채용하였으므로 법전원 1기를 15명으로 가정하였다.

26) 법전원 2기를 포함하여 14명을 채용하였으므로 법전원 1기를 10명으로 가정하였다.

는 방침을 세우고 후자에게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50%만을 지급하며, 2년 근무 후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법전원 졸업예정자들을 채용하였다.²⁷⁾ 이러한 한시적인 채용을 배제하면 2012년 법전원 졸업생에 대한 실질 채용예정자 수는 연수원 수료자 채용예정자 수와 같은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10개 법무법인의 2012년 채용인원은 대체로 2011년 채용인원의 2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전체 법무법인의 2012년 채용인원 역시 2011년 채용인원의 2배가 될 것이라고 거칠게 예상할 수 있다.

다. 개인·합동법률사무소의 신규 고용 변호사의 수

법무법인 이외에 개인·합동법률사무소의 고용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개인·합동법률사무소의 채용인원은 기존의 개인·합동법률사무소 운영자가 고용변호사를 채용하는 경우와 변호사업에 새로 진출하였지만 일정한 사건수임능력을 갖춘 퇴직 법관·검사가 고용변호사를 채용하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법무법인 취업 비율, 개업 비율 등에 의존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2011. 5. 17. 변호사법의 일부 개정, 법률시장개방과 국내 법률시장 위축에 따른 수임사건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법관·검사의 퇴직자 수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법관·검사 퇴직자 수의 증가가 반드시 신규 고용 변호사의 증가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실제 퇴직한 법관·검사의 수는 2004년 120명, 2005년 172명, 2006년 189명, 2007년 157명, 2008년 182명, 2009년 190명이었지만, 해당 연도 고용변호사 수는 각각 125명, 124명, 113명, 125명, 75명, 144명 등으로 퇴직한 법관·검사의 수와 일정한 비례 관계에 있지 않다. 즉, 퇴직 법관·검사의 수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개업을 하는 비율 및 개업을 하면서 신규 변호사를 채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합동법률사무소 고용변호사의 수는 증감할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개인·합동법률사무소 운영자가 추가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퇴직 법관·검사가 개업을 하는 비율, 그들이 고용변호사를 채용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규 변호사의 연봉 수준, 신규 변호사의 예상 기여도, 사무실 공간의 여유, 본인의 사건 유치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합동법률사무소 운영자의 주된 활동이 송무인 것을 감안하면 사건 수의 증감 추이일 것으로 보인다.

27)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 2011. 3. 25.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32480201>, 서울경제신문 2011. 9. 20. A33면

그런데 전국 법원에 접수된 1·2심 본안사건 자체가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년에는 7% 감소하였고, 이후 격년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4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고용변호사 수의 변화 추세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특정한 연도의 사건 증가는 그 이후의 고용 증가를, 특정한 연도의 사건 감소는 그 이후의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사건 증가 추이

연도	고용 변호사수	본안 (1심+2심)		본안 (2심+1심) (소액제외)		1심 민사 본안 (소액제외)		1심 형사 공판	
		사건 수	증감	사건 수	증감	사건 수	증감	사건 수	증감
2001		1,203,118	100	570,571	100	205,926	100	199,189	100
2002	59	1,387,354	115	591,931	104	220,471	107	209,142	105
2003	135	1,526,634	127	620,341	109	244,779	119	213,519	107
2004	125	1,591,088	132	656,615	115	255,758	124	238,749	120
2005	124	1,497,944	125	629,474	110	253,419	123	216,761	109
2006	113	1,681,770	140	714,182	125	321,399	156	228,005	114
2007	125	1,644,083	137	742,595	130	312,317	152	250,499	126
2008	75	1,725,040	143	780,328	137	314,319	153	275,368	138
2009	144	1,552,591	129	767,284	134	294,016	143	287,842	145

출처 : 사법연감

따라서 신규 변호사 수의 증가가 개인·합동법률사무소 고용변호사 수의 증가를 가져오려면 무엇보다도 전체 사건 수가 증가함으로써 개인당 수임사건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신규 변호사의 보수가 하락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규 변호사 수의 증가는 고용변호사 수의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개업변호사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기존 개인·합동법률사무소 운영자에게는 개인당 수임사건 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전체 사건 수의 증가와 서로 상쇄된다고 가정할 때 개인·합동법률사무소 고용변호사의 수는 주로 신규 변호사 보수가 하락하는 경우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라. 공공기관의 신규 고용 변호사의 수

다음, 공공기관 취업 변호사 수의 증가와 관련한 몇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 수는 40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정부법무공단법 제13조

제1항) 2011. 4. 7. 변호사의 수를 제한하는 제1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의 소송사건 및 자문건수가 각각 3배 이상 증가하였고, 변호사 1인당 업무량도 2배로 증가하는 등 변호사의 증원이 불가피한데, 이미 고용된 변호사 현원이 37명이어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변호사의 증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점점 대형화되어 가는 민간 로펌이나 법률시장 개방 후의 외국 대형 로펌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점,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법무공단의 세종시 분사무소 설치가 불가피한 점 등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비록 최근 4년간의 신규 변호사의 고용이 매년 2~3명 정도에 그쳤지만 변호사 정원 제한 규정이 삭제된다면 신규 변호사의 채용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경찰청은 경찰서에 변호사를 24시간 상주하게 하는 상근변호사제도를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²⁸⁾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상근변호사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인지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근변호사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11년 2월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 모집에서 월 지급액(세전)을 종전의 8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하하였음에도 10명 정도의 모집(실제 선정은 8명)에 165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2010년의 12.8 : 1에서 20.6 : 1로 증가하였다. 이는 변호사 취업시장의 불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이든 민간부문이든 신규 변호사 채용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변호사 보수가 더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징후는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군법무관 채용이 확대되는 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보수 이외에도 국방부가 2008년부터 추진한 장기 법무관 지원방안에 따른 승진보장 등이 작용하고 있지만, 5급 내지 4급 상당의 공무원 월급 정도에 변호사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변호사 활동의 질을 적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된 변호사의 보수가 무한정 낮아질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한계를 유지하면서 공공기관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신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징표일 수 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몇 가지 징후 이외에 공공기관에서 신규 변호사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단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2012년 중앙행정부처는 신규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알려졌고, 감사원 등이 신규 변호사보다는 경력변호사를 채용

28) 한국일보 인터넷판, 2011. 4. 6.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4/h2011040602320721950.htm> 참조(이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과 선진수사제도연구회가 2011. 4. 6. 공동 개최한 선진 수사제도 연구 학술세미나에서 발제자인 이동희 교수가 발표한 내용으로, 인신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인신구속 초기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등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선정하는 변호사를 전국 248개 경찰서에 최소 1인씩 배치하여 인신구속된 피의자를 조력하게 하는 제도이다.)

하려고 하는 등 경력변호사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규 변호사에게 신규 변호사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력변호사와의 경쟁도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더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력변호사의 이동에 따른 전체 변호사 고용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요인이 될 수 있다.

마. 기업의 고용 변호사의 수

기업의 고용 변호사 수는 무엇보다도 2012년 4월에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따라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범위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이 변호사 자격자로만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10년 이상의 준법업무경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변호사는 준법지원인의 지원업무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고용이 증가할 수 있고, 준법감시인의 고용으로 인하여 순차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1. 9. 30. 개최된 상법시행령 개정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절충안에 따라 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1인씩 두는 경우 257명의 준법지원인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의 경우 준법감시인 68명과 지원인력을 합한 규모가 500~600명 정도라고 추산하면, 257명의 준법지원인은 최대 2000명의 지원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 경우 5% 정도만 신규 변호사로 채용되어도 약 100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개정 상법의 적용대상 상장회사가 증가하게 되면, 이 고용효과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

결국, 법관과 검사 임용자 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2012년 이후의 신규 변호사 고용시장의 수요는 법무법인 약 500명,²⁹⁾ 개인·합동법률사무소가 신규 변호사의 보수가 2011년 수준보다 50% 정도 하락하는 전제하에 약 170명,³⁰⁾ 중앙행정부처나 몇몇 공공기관에서 신규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거나 경력변호사를 채용하더라도 정부법무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이 그 감소 인원수를 메운다는 전제하에 공공기관 약 70명, 기업 약 65명 등 합계 805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준법지원인제도에 따라 신규 변호사의 기업 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약 100명 정도로 가정하면,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약 1,000명의

29) 연수원 31기부터 39기까지 법무법인 취업자 연평균 248명의 2배이다.

30) 연수원 31기부터 39기까지 개인·합동법률사무소 취업자 연평균 113명에서 약 50% 증가를 감안한 숫자이다.

신규 변호사가 1인 법률사무소 형태로 변호사 시장에 진입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500명에서 900명 정도의 변호사가 개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외국 로스쿨 수료자의 취업현황

우리나라 신규 법조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외국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법전원이 모델로 삼았던 미국 로스쿨 수료자의 취업현황과 우리나라에 앞서 법전원 제도를 도입하였던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로스쿨 수료자의 취업현황

미국 법조지역연구연합(NALP, National Association for Law Placement)은 1971년 설립된 이후 미국 전역의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 현황을 조사하고, 법조지역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먼저, 1985년부터 2009년까지의 취업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미국 로스쿨 졸업생 취업현황

연도	전체 취업률	법조지역		비법조지역		미취업	진학	로펌
		풀타임	파트타임	풀타임	파트타임			
1985	91.5	81.6	2.6	6.7	0.8	7.0	1.5	60.6
1986	91.3	81.8	2.5	6.2	0.8	7.2	1.5	62.3
1987	92.2	84.1	2.0	5.6	0.5	6.6	1.2	63.5
1988	92.0	84.5	2.0	4.9	0.5	6.9	1.1	64.3
1989	90.8	82.7	2.2	5.2	0.5	7.9	1.3	62.4
1990	90.3	82.1	2.4	5.2	0.7	8.2	1.4	62.9
1991	85.9	76.1	3.3	5.6	0.9	12.6	1.5	60.8
1992	83.5	72.5	4.0	5.9	1.1	14.5	1.9	59.0
1993	83.4	70.3	4.6	7.0	1.5	14.6	2.0	57.1
1994	84.7	69.0	5.2	8.1	1.8	13.1	2.2	55.0
1995	86.7	70.7	5.4	9.0	1.6	11.2	2.1	56.1
1996	87.4	71.4	4.7	9.7	1.6	10.5	2.1	55.7
1997	89.2	73.6	4.4	9.9	1.5	8.6	2.2	55.6

연도	전체 취업률	법조직역		비법조직역		미취업	진학	로펌
		풀타임	파트타임	풀타임	파트타임			
1998	89.9	74.9	3.7	10.0	1.4	7.9	2.2	55.0
1999	90.3	75.5	2.9	9.8	1.1	7.8	1.9	55.1
2000	91.5	77.3	2.5	9.6	1.0	6.4	2.1	54.8

연도	전체 취업률	법조직역		비법조직역		미취업	진학	로펌
		변호사자격 필요직업	로스쿨학위 선호직업	전문직역	비전문직역			
2001	90.0	75.9	6.0	5.5	1.5	7.6	2.4	57.8
2002	89.0	75.3	5.2	5.8	1.6	8.5	2.5	58.1
2003	88.9	73.7	6.5	5.7	1.6	8.4	2.7	57.8
2004	88.9	73.2	7.5	5.3	1.4	8.6	2.5	56.2
2005	89.6	74.4	7.5	5.1	1.4	8.2	2.2	55.8
2006	90.7	75.3	7.9	5.1	1.3	7.0	2.2	55.8
2007	91.9	76.9	7.7	5.1	1.3	5.8	2.3	55.8
2008	89.9 ³¹⁾	74.7	8.1	4.9	1.3	7.7	2.4	56.2
2009	88.3 ³²⁾	70.8	9.2	5.4	1.8	8.7	3.1	55.9

2009년의 경우³³⁾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미국 전역의 192개 ABA 인증 로스쿨³⁴⁾에서 40,833명이 졸업하였는데, 그 중 70.8%가 변호사자격을 요하는 직업에 취업하였고, 9.2%가 로스쿨 학위를 요하거나 선호되는 직업에 취업하였다. 진학이 3.1%였고, 나머지는 변호사자격 또는 로스쿨 학위와 무관한 전문·비전문직역에 취업하였다.

같은 해 취업한 졸업생 35,002명을 조사한 결과 변호사자격을 요하는 풀타임제로 취업한 인원은 76.1%에 해당하는 26,625명, 파트타임제로 취업한 인원은 5.3%로 1,845명, 로스쿨 학위를 요하거나 선호되는 풀타임제로 취업한 인원은 7.4%로 2,594명, 파트타임제로 취업한 인원은 2.8%로 989명이었다.

파트타임 고용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취업현황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 취업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데, 별도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 로스쿨 졸업생의 2009년 풀타임 취업은 법조직역의 경우 총 29,219명으로 192개 로스쿨 전체 졸업생의 71.6%였다.

31) 취업형태가 확인되지 않은 취업자 0.8%가 포함되어 있다.

32) 취업형태가 확인되지 않은 취업자 1.1%가 포함되어 있다.

33) 2010. 2. 25. 기준이다.

34) 매년 조사에 참여하는 로스쿨의 숫자는 다르다. 2008년의 경우 198개 로스쿨이 참여하였다.

한편, 연도별 고용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로스쿨 졸업생의 고용유형

연도	조사자	민간부문(%)		공공부문(%)					학계(%)
		법률사무소	기업	로클릭	공공기관	정부기관	군대	계	
2002	31,405	58.1	10.7	11.4	11.3	2.9	1.4	27.0	1.7
2003	31,812	57.8	11.5	11.1	11.4	3.1	1.3	26.9	1.6
2004	32,753	56.2	12.0	11.1	10.5	4.9	1.2	27.7	2.0
2005	34,912	55.8	13.2	10.5	10.6	4.8	1.2	27.1	1.8
2006	36,465	55.8	14.2	9.8	10.6	5.4	1.1	26.9	1.7
2007	37,123	55.5	14.1	9.8	10.7	5.8	1.0	27.3	1.8
2008	36,497	56.2	13.4	9.6	10.6	5.4	1.2	26.8	2.3
2009	36,046	55.9	13.5	8.7	10.1	5.7	1.3	25.8	3.5
평균	34,626	56.4	12.8	10.2	10.7	4.7	1.2	26.9	2.0

2009년을 기준으로 최근 8년간 고용유형을 보면, 로펌과 기업을 위주로 하는 민간부문이 69.2%를 차지하고 있고, 로클릭, 국가, 공공기관, 군대를 위주로 하는 공공부문이 26.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로클릭과 공공기관 취업자는 최근 상당 부분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법원과 공공기관은 로스쿨 졸업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

한편, 로펌 등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신규 변호사의 초임 연봉의 변화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미국 신규 변호사의 초임 연봉(로펌)

단위 : 달러

연도	규모					
	2~10인	11~25인	26~50인	51-100인	101-250인	251 이상
1996	35,000	41,500	52,000	58,500	60,000	70,000
1997	40,000	52,000	40,000	60,000	65,000	71,500
1998	39,500	52,000	53,000	61,000	60,000	75,000
1999	51,000		57,500	67,000	70,000	85,000
2000	60,000		63,000	70,000	75,000	110,500
2001	60,000		70,500	75,900	90,000	110,200
2002	53,500		75,000	75,000	90,000	110,000
2003	59,000		71,000	80,000	85,000	107,000
2004	65,000		72,900	81,000	88,500	110,000
2005	67,500		80,000	83,000	86,000	110,000
2006	67,000		80,000	85,000	90,000	120,000

연도	규모					
	2~10인	11~25인	26~50인	51-100인	101-250인	251 이상
2007	68,000		81,000	90,000	105,000	130,000
2008	73,000		92,500	95,000	110,000	135,000
2009	70,000		92,500	104,000	110,000	145,000
증가율	75%		131%	73%	69%	102%

이 시기 지방검사와 로클릭, 공공부문 신규 변호사의 초임 연봉은 1996년에는 10인 이하 법률사무소 초임 변호사 연봉과 유사하였는데, 2008년에는 10인 이하 법률사무소 초임 변호사 연봉의 약 70%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신규 변호사의 초임 연봉(공공부문)

단위 : 달러

	검사	로클릭	공공부문
1996	33,000	35,000	30,000
2008	50,000	50,000	41,750
증가율	51%	43%	39%

또 다른 조사결과는 공공부문에 취업한 초임 변호사 및 로펌 초임 변호사의 연봉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미국 신규 변호사의 초임 연봉(공공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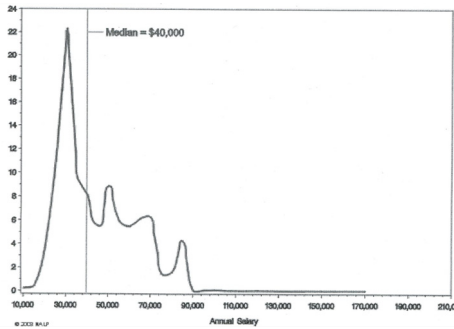
단위 : 달러

	Civil Legal	Public Defender	지방검사	Public Interest	Firm				
					~50인	~100인	~250인	~500인	501인~
2004	34,000	39,000	40,000	36,655	70,000	81,000	88,500	92,250	120,000
2006	36,000	43,300	43,915	40,000	75,000	85,000	90,000	115,000	135,000
2008	40,000	47,435	45,675	41,000	80,000	95,000	110,000	125,000	145,000
2010	42,000	47,500	50,000	45,000	80,000	95,000	105,000	125,000	13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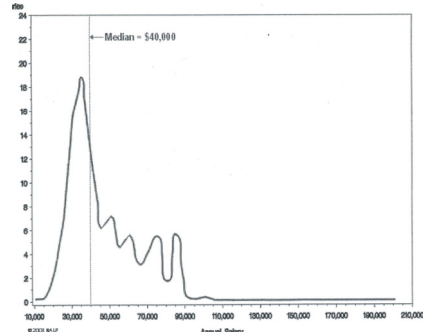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취업한 신규 변호사의 초임 연봉은 대략 로펌 초임 변호사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 로펌의 초임 변호사 연봉 구조의 변화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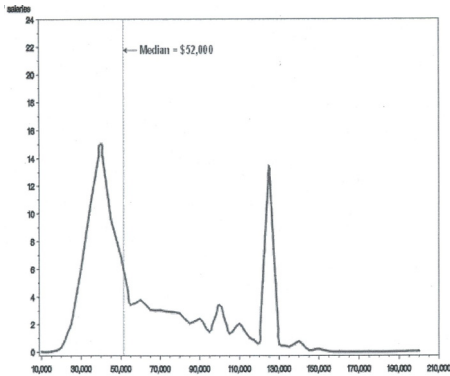
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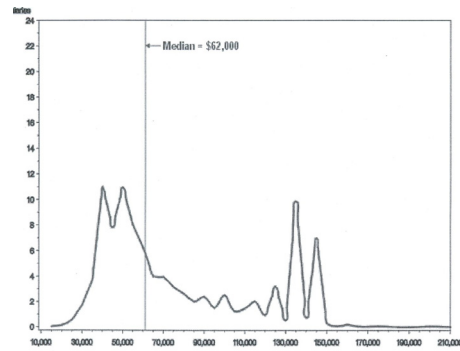
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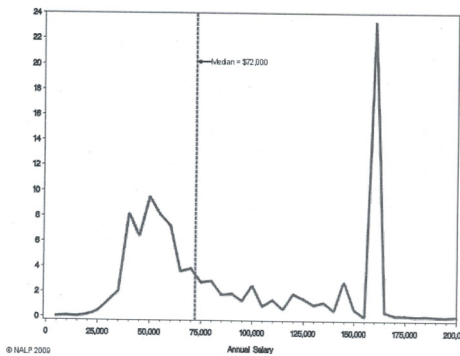
2000년



2006년



2008년



1991년의 경우 미국 로스쿨 졸업생의 초임 연봉은 1만 불에서 약 20만 불까지 분포되었지만 평균 4만 불을 기준으로 하나의 봉오리를 형성하고 있고, 약 40% 정도가 3만 불에서 4만 불의 범위 내에 있으며, 6% 정도(대형 로펌)만이 7만 불을 받았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도 비록 대규모 로펌의 연봉이 7만 불 부분에서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하나의 봉오리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45% 정도가 3만 불 내지 4만 불의 범위에 있었다.

그런데 2000년에 이르러서는 대규모 로펌의 초임 연봉이 12만 5천 불에서 시작하면서 3~4만 불 범위 안에 있는 연봉 그룹과 12만 불 이상의 연봉 그룹이 분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8년에 이르러서는 16만 불 이상의 고액 연봉 그룹과 그 밖의 그룹이 확연히 구분되면서, 4만 불에서 6만 5천 불까지의 저액 연봉 그룹(42%)과 7만 5천 불에서 15만 불 사이의 중간 그룹 등으로 분화되었다.

2. 일본 사법연수소 수료자의 취업현황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 사법연수소 수료자의 진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사법연수소 수료자의 진출현황

기수	구직연도	인원	직역			
			판사보	검사	변호사	기타
54	2001	975	112	76	771	16
55	2002	988	106	75	799	8
56	2003	1,005	101	75	822	7
57	2004	1,178	108	77	983	9
58	2005	1,187	124	96	911	27
59	2006	1,477	115	87	1,270	9
60	2007	1,397	52	71	1,254	20
신60		979	66	42	856	15
61	2008	609	99	93	553	54
신61		1,731			1,541	
62	2009	354	106	78	310	91
신62		1,992			1,761	

즉, 구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소 60기 1,397명과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신사법시험에 합격한 60기 979명 합계 2,376명 중 118명(4.9%)은 판사보로, 113명(4.7%)은 검사로, 나머지 2,111명(88.8%)은 변호사로 진출하였다.³⁵⁾ 그런데 2,111명 중 법률사무소(1인 이상)에 취업한 인원은 1,070명(50.7%)에 불과하였다.³⁶⁾

또한, 2008년에 구직을 한 61기 수습생은 2,340명인데, 그 중 2,100명이 변호사등록을 하였고, 99명이 판사보, 93명이 검사로 임관되었다. 그런데 변호사등록자 2,100명 중

35) 2008. 1. 28.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36) 2007년도 변호사의 채용상황 및 2008년 변호사채용증진에 관하여 http://www.nichibenren.or.jp/ja/committee/list/gyoumu_suishin.html 참조

1,085명(51.7%)만이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⁷⁾

2009년에 구직을 한 62기 수습생은 2,346명인데, 그 중 변호사등록자가 2,085명, 판사보가 106명, 검사가 78명이었다. 변호사등록자 2,085명 중 874명(41.9%)만이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과 2007년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신규 변호사의 초임 연봉 및 당해 연도 고용주가 지급하려는 채용가능 연봉은 다음과 같았다.

일본 신규 변호사의 초임 연봉(법률사무소)

단위 : 만엔

	보 없 음	~299	~399	~499	~599	~699	~799	~899	~999	1,000~	계
2006 희망		8	82	157	145	48	9			449	
2006		3	19	62	168	688	127	53	12	22	1,154
2007 희망		83	176	306	202	88	9			864	
2007	130	13	73	213	449	599	114	32	14	20	1,657

2006년, 2007년 각각 지불희망금액에 관한 설문에 응한 법률사무소의 수와 실제 지불금액에 관한 설문에 응한 법률사무소의 수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정확한 변화추이를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특이한 것은 2006년에는 고용변호사에게 지불희망금액보다 실제 지불하기로 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2007년에는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신규 변호사의 증가가 고용변호사의 초임 연봉을 감소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보고에 의하면, 매년 기업변호사로 취업하는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수를 집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변호사 채용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09년 9월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일본 내 기업변호사의 수는 총 350명에 불과하였고, 그 중 신규 변호사로서 기업에 취업한 변호사는 24명에 불과하였다.³⁸⁾ 또한,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09년 11월 1,196개 기업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11월

37) 2008년도 변호사의 채용상황 및 2009년 변호사채용증진에 관하여, <http://www.nichibenren.or.jp/ja/committee/list/housui.html> 참조(변호사 채용상황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법률사무소에 2008년도 고용예정자의 수를 설문하고, 그 답을 얻는 것으로 기초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채용자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이를 기초로 다음해의 변호사 채용증진 대책을 세우고 있다).

38)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문조사 집계 <http://www.nichibenren.or.jp/ja/committee/list/housui.html> 참조

현재 변호사를 모집하고 있거나 현재 모집하지 않지만 향후 채용할 예정에 있다는 기업은 25개(2.2%)에 불과하였고, 31개 기업이 향후 변호사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 외에 1,081개 기업이 변호사를 채용할 예정이 없다거나 채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그 이유에 관하여 73.5%의 기업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로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답하였다.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관공청 역시 변호사 채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률사무소에 취업하지 못한 상당수의 변호사가 1인 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3. 소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신규 법조인력의 활용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규 변호사의 수를 확대한 일본의 경우도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가 안정적이라고 알려진 미국의 경우도 법조직역만을 한정하고, 파트타임 고용을 제외하면 그 취업률은 2009년의 경우 71.6%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미국	우리나라	일본
민간부문	법률사무소 ³⁹⁾	56.4	64.3 (로펌은 44.2, 고용 20.1)	48.1 ⁴⁰⁾
	기업	12.8	7.7	미확인
공공부문	로클릭	10.2	4.4 ⁴¹⁾	없음
	공공기관	10.7	8.4	미확인
	정부기관	4.7		
	군대	1.2		

다만, 세 나라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경우 로펌 이외에 기업, 국가(로클릭, 정부기관, 군대)와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비율이 상당히 높게 유지됨으로써 신규 변호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개인·합동법률사무소가 상당한 비율로 신규 변호사를 고용해 왔으나 앞으로도 이러한 추이를 유지할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이는 1인 법률사무소

39) 로펌과 개인·합동법률사무소 고용을 포함한다.

40) 60기, 61기, 62의 취업을 평균한 것이다.

41) 약 100명을 선발하는 2012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고용을 포함한 고용변호사 비율이 3년 평균 48.1%에 그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아도 개인·합동법률사무소가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기업이나 관공서의 취업이 우리나라보다 활발하지 않지만 1인 개업변호사 형태가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에⁴²⁾ 취업하지 않은 변호사등록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1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결국,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에는 신규 변호사를 ‘개업변호사’의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즉, 신규 변호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개업변호사’의 양산으로 이어지는 유형(일본형)이 있을 수 있고, 미국과 같이 법무법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나머지를 일부는 기업을 위주로 한 민간부문에서 흡수하고, 나머지는 로클릭 등 공공부문에서 흡수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유형(미국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IV.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

1. 기존의 활용방안 및 검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은 대부분 미국형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09년 법전원 협의회의 연구보고서⁴³⁾에 의하면, 민간부문(기업) 영역에서,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기업이 직면하게 될 다양한 법률적 위험의 관리자로서 변호사 고용의 증대(위험관리),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한 변호사 고용의 증대(고객관리)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 중앙행정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의 증대에 대비하여 변호사 고용을 증대할 필요를 언급하면서 행정고시의 폐지, 법무담당관제도의 정비, 미국의 PMF(Presidential Management Fellows Program)제도를 벤치마킹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 등 정부출연기관의 변호사 고용 증대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그 외에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입법부와 법원의 로클릭제 도입, 국

42)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 전체의 사무소 11,878개 중 1인 사무소가 7,911개, 2인 사무소가 1,819개, 3인 817개, 4~5인 727개, 6~10인 427개, 11~20인 123개, 21~100인 48개, 100인 이상 6개이다.

4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책임연구원 송옥렬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변호사 직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2009.

제기구로의 진출 활성화 방안, 그 밖에 새로운 제도로써 법전문 로펌의 설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 한국법학원이 2010. 10. 25. 개최한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의 ‘신규 법조인력 활용 방안’ 세미나에서, 당시 서울변호사회 회원이사인 오정면 변호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법무담당관제 도입, 법조일원화의 확대 및 로클릭제 도입, 기업 차원에서 준법지원인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고,⁴⁴⁾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의 기획이사인 임치용 변호사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의 폐지, 법무담당관제와 외무부 등의 전문인력 직렬의 신설, 국제기구 진출의 활성화, 중소기업청의 법률지원단 확대,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 파산절차에서 변호사의 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 임명 등을 제안하고 있다.⁴⁵⁾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2011. 3. 14. 전국변호사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2년 변호사 대량배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으로는 법원의 로클릭제 도입, 검찰의 검찰연구관제 도입, 국회의 입법연구관제 도입, 전국 229개 시·군·구 및 16개 광역자치단체 법률담당관(호민관)제 도입, 전국 244개 경찰서 및 16개 지방경찰청 법률담당관제 도입, 변호사 공익활동의 강화(공익활동시간의 증가), 준법감시인제 도입 등이다.

위와 같은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은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인당 사건 수임건수가 2009년 기준 월 평균 1.9건에 이를 정도로 이미 변호사 법률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는데다가 법전문 졸업생의 대량 배출로 인하여 이러한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적정한 수의 법조인 집단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고비용, 고학력자 실업, 법조윤리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판이 있다. 국민소득 대비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2.3배, 일본의 1.4배에 이르기 때문에 신규 법조인력 활용의 기본적인 전제는 변호사 보수를 낮춤으로써 법률서비스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⁴⁶⁾ 이 견해는 나아가 중소기업들의 변호사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변호사의 서비스 수준에 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시장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법무법인이나 개업변호사와의 계약을 통해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판

44) 오정면, 신규법조인력의 활용 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2010. 12), 245면 이하

45) 임치용, 신규법조인력의 활용 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2010. 12), 254면 이하

46) 김두열,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2010. 12), 272면 이하

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준법지원인을 고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서비스의 질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하거나 더 싼 선택을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47) 48)}

이러한 비판은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하의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미국식 로스쿨제 도입을 추진하였을 당시부터 주장되었던 것이다. 즉, 미국식 로스쿨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던 일부 법학자들과 시민단체, 경제전문가의 논의를 ‘법조인 대량증원론’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변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과도한 공급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수입료가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변호사의 직역 및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량증원이 불가피하다, 변호사의 수급은 전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⁴⁹⁾

2.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출발점

위와 같이 변호사의 직분과 역할이 갖는 공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오로지 시장원리만으로 변호사의 적정 수입료와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관점과 변호사의 국민적 활용도와 변호사 내부의 경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규제를 제거하여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이 오랜 논쟁을 겪으면서도 현재까지 팽팽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어느 견해도 2012년 이후 배출될 신규 변호사가 직면할 문제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앞서 본 세 가지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의 공통점은 대체로 ‘2012년 이후 신규 변

47) 2004년 한국갤럽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영선 등 5인, 전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사례 수	2,219	1,304	736	179
높은 비용부담	45.7%	43.5%	48.6%	50.2%
당장 법률자문이 필요하지 않아서	30.0%	30.5%	29.1%	30.2%
이용방법을 몰라서	18.8%	20.7%	16.6%	14.5%
법률자문회과가 의문스러워서	4.1%	4.7%	3.6%	1.9%
회사의 비밀누설우려	0.8%	0.2%	1.5%	2.4%
기타	0.4%	0.3%	0.6%	0.8%

48) 김두얼, 위 논문

49) 서울지방법원(책임연구원 김호정 변호사),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 시민과 변호사 2004년 3월호 별책호

호사 수의 증가 → 기존 변호사 시장에서 고용증대의 한계 → 변호사 진출 지역의 확대 필요성 → 변호사에 대한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제도 도입 모색'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 세 가지 연구 모두 신규 변호사 고용창출을 위한 제도를 모색하면서 각각의 제도가 갖게 될 긍정적인 측면(기업경영에 대한 내부 감시제도의 필요성 등에서부터 법치주의의 강화, 분쟁의 사전 예방 등)만을 검토하고 있다. 위 세 가지 연구가 결여하고 있거나 충분히 검토하고 있지 못한 것은⁵⁰⁾ 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사회의 부담과 부작용에 대한 고려이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변호사의 활용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확립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 또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의 측면이 있음에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규제가 강화될 수 있으며' 심지어 '법조인 대량배출 시기에 맞추어 변호사의 취업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드러났다.

다른 한편으로, 변호사의 수를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접근방식은 거시적으로 향후 10여 년 동안 이루어질 변호사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는 있어도 2012년부터 매년 배출될 신규 변호사들이나 변호사단체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컨대, 변호사의 공급이 증가하면 변호사 보수가 낮아질 것이 예상되는데, 그 낮은 보수를 받는 변호사 업무의 질은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활용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또 다른 사법 비용을 증대시키거나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지 않을 것인지, 국가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수준과 변호사 보수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상정하고 규제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든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하는지, 시장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반응하는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신규 변호사들은 불가피하게 실업을 감수하거나 저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변호사를 고용·활용하는 중간소비자(국가나 법무법인 등)와 최종 소비자(기업, 시민 등)는 불가피하게 저품질의 서비스 등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증가될 사회적 비용을 시장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정인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그 가족 또는 학교법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인 결과이고, 그 투자는 적어도 5~6년 후의 변호사 시장에 대한 예측

50) 다만, 법전원협의회 연구보고서의 경우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하여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에 근거해서 이루어졌을 것인데, 막상 5~6년 후에 변호사 시장이 당초의 예상과 달리 과잉 공급 상태였다는 이유로 변호사 시장에서 퇴출(실업이나 변호사 자격과 무관한 취업 등)되거나 저가의 법률서비스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오류를 특정인과 그 가족이 미래의 시장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것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변호사의 양성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에 제화를 공급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사법질서를 지탱할 법조인 양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논의는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에 관하여 어느 관점에서 접근하든 합의되어야 할 기본적 출발점을 모색하게 한다.

첫째 출발점은 장기적으로는 변호사의 수와 수입료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까지도 변호사가 과소 공급되어 수입료가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수입료의 과다 또는 적정 여부는 단순히 우리나라와 외국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의 차이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 소비자가 실제 변호사의 조력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대하여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둘째, 첫째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공급을 증가함으로써 수입료를 낮출 수 있다는 가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수정되어야 한다.

하나는 변호사 시장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하게 법률시장 매출의 40% 이상을 대형 법무법인이 차지하고 있다. 즉, 변호사 공급의 증가는 법무법인의 고용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최종 법률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법무법인이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용비용의 감소는 그에 비례하여 신규 변호사에 대한 교육·관리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역으로 최종 법률서비스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이러한 교육·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우수한 신규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2009년 초임 변호사의 연봉이 25인 이하의 로펌은 75% 상승하였음에도 26~50인 이하의 로펌은 131%, 251인 이상의 로펌은 102% 상승한 것에 비추어 보면, 시장원리는 법률시장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변호사의 공급이 수입료를 낮춘다는 첫째 출발점은 일본과 같이 대부분의 변호사가 1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국가 또는 법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개인·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나타나듯이 고가의 법률서비스 제공자와 저가의 법률서비스 제공자가 이원화되는 경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변호사 시장이 하나의 균형거래량과 균형가격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⁵¹⁾을 깨고 2개 이상의 가격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저가의 법률서비스 시장이 우리나라 사법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낳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출발점이 수정되어야 할 측면 중 또 다른 것은 ‘법조인 대량증원론’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변호사 업무의 공익적 성격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특히 위에서 말한 저가의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즉,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업무량과 법률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유지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변호사의 사회적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변호사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민의 사법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당초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대량증원론의 관점에서는 변호사의 윤리성 강화 및 사후적 관리·감독의 대폭 강화로 대처하려고 한다.⁵²⁾ 물론 이러한 사후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사후 관리·감독이 있기 이전에 발생하게 될 소비자의 피해는 변호사 개인의 징계나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사법질서의 불안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전적 시장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가 법률시장에 개입하여 특정한 영역의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거나⁵³⁾ 그 보수를 일정 수준 이상 받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을 일정 정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욱 기본적인 것은 신규 변호사가 1인 사무소의 형태로 법률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규모의 경영을 하기 어렵고, 계속 학습의 기회를 갖기 곤란한 1인 사무소 형태의 신규 변호사에게서 먼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이 단순히 ‘신규 변호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모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변호사 고용시장에 개입하여 얻을 수 있는 국가사회적 이익은 법률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사법복지를 유지·증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단이 오히려 국가 전체의 사법비용을 증대하는 결과를 낳아서 국

51) 신도철, 우리나라 변호사 인력의 수급에 관한 연구, 법경제학연구 제4권 제1호, 2007.

52) 고영선 등 5인,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0.

53) 영국계 국가나 독일 등에서 보듯이 가령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와 서면작성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자격을 달리 규정하거나 심급별, 법원별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 등이다.

가의 법률시장 개입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국가는 국민의 사법복지를 증대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법률시장에 개입하고 그 결과로서 신규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첫째의 출발점과 일정 정도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규 변호사의 진출 직역 확대는 단순히 보수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행정부처나 공·사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하려는 변호사에게 공무원 또는 기업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신규 변호사의 직역 확대는 보수의 높고 낮음을 넘어서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능력 이외에 행정업무 수행능력 또는 기업인으로서의 자세와 능력을 요청하고 있다.

3. 수요기관(중앙행정부처 등)의 요청사항

신규 법조인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사법연수원은 2011년 4월 말 ~ 5월 현재까지 몇몇 중앙행정부처 인사담당자 등과 공기업, 사기업 등에 대하여 방문면담조사와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방문면담조사 결과 나타난 수요기관의 의견을 필요만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부처의 의견

(1) 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기본 방침

행정부의 변호사 채용은 일반직 공무원(5급)으로 특채하는 것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2가지 경로가 있고, 2009년까지 각 중앙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행사하던 일반직 공무원(5급) 특채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므로, 행정안전부의 변호사 5급 특채제도 운영 여하에 따라 신규 변호사의 채용 여부, 채용 폭이 결정될 것이다. 이 경우 2010년 11월 5급 공무원으로 특채되기 위해서는 PSAT(공직적성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었다. 전문계약직의 경우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현재 중앙행정부처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와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채된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전문계약직, 행정안전부, 법제처,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는 5급 특채의 경로로 채용하였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외교역량이 있는 5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육·훈련시키는 국립외교원을 설립하고,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외부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외교관 선발제도를 마련 중이다.

(2) 중앙행정부처 진출 변호사의 기본적 자질·능력 등

- 채용과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구분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명감, 열정, 지원하는 행정부처에서 어느 정도 오래 재직할 것인지, 채용 분야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연수원 성적, 외국어능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
- 부처에 따라서는 법률문제 해결능력, 전문적 법률지식(국제법, 통상법, 관세법 등), 외국어능력, 조직적응력, 성실성·적극성, 오래 재직할 의사 등을 우선해서 고려하고, 다른 부처와의 협상·조정능력이 필요하다. 연수원 성적은 공정한 선발을 저해할 수도 있다.

(3) 전망

- 비변호사 일반직 공무원의 관계, 보직 경로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 등이 이직률을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법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여러 보직을 순환할 자세를 취한다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차등 대우를 받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호사를 채용한 경험이 있으나 낮은 보수로 사직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의 경우 세제실, 국고국, 민사사업, 통상 관련 증 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분야가 많다.
- 행정부처는 여성 법조인이 진출하기에 적합하다.

나. 공기업의 기타 의견

- 조직적응력과 성실성이 우선 요구되고, 해당 공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법적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도출하는 능력, 해당 공기업이 부딪히는 분쟁해결능력과 경험, 관련 법률 분야의 전문지식, 조정능력과 협상능력 등이 필요하다.
- 과거 신규 변호사를 채용한 경험이 있는 공기업의 경우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공기업이 요구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직내 위계질서를 건디지 못하여 단기간 내에 퇴사한 사례가 있다.

다. 사기업의 기타 의견

- 주된 채용기준은 조직적응력(친화력), 성실성·적극성, 외국어 능력, 오래 재직할 의사다. 즉, 사기업이 요구하는 변호사상은 ‘법률적 소양을 겸비한 비즈니스맨’이다.
-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국제계약체결, 해외 출장 등 영어 등 외국어 수요가 많음에도 어학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들이 부족하다.
- 법무법인보다 낮은 연봉, 조직문화의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신규 변호사가 조기에 퇴직한 사례가 있다. 특히, 기업조직의 요구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경영진을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4. 구체적인 활용방안

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

행정부처의 법무담당관은 그 소관 업무가 법령안 심사, 법령 제·개정 지원, 소송사무 총괄, 법령질의회신 및 규제개혁업무 등이다. 그러나 법무담당관의 자격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은 3급 내지 4급 상당,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주로 6, 7급의 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종래 법무담당관을 변호사 자격자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제한하고, 순환보직을 할 수 없게 되며, 준법감시인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반발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였고,⁵⁴⁾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중 부·처의 법무담당관의 직위를 개방형의 차관 또는 차장 보좌기관으로 개편하여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임명하되, 5년의 시행기간 경과 후에는 그 임용자격을 변호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하는 방안⁵⁵⁾ 역시 반발에 부딪힐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고시제도의 폐지는 공무원 임용제도의 일대 변혁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접근방식은 법무담당관이 법률가가 담당하여야 할 직위임에도 공무원 순환보직 또는 승진인사의 대상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의 직역확대 방안이 해당 국가기관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기

54) 임치용, 위 논문 ; 법전원협의회 연구용역보고서

55) 법전원협의회 연구용역보고서

존 공무원 인사체계에 예외를 설정하는 것이어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변호사의 행정부처 진출은 행정고시와 별도의 인재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변호사 자격자를 5급 상당의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통로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경우 변호사가 법무직 등 한정된 보직만을 순환하는 것은 행정공무원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공무원으로서의 교육을 통해 기존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국회의 입법연구관제 도입

법조일원화 실시와 함께 직면하게 되는 법관의 어려움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 연구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입법조사처나 예산 결산안 및 법률안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 등을 추계하는 국회예산정책처에도 재판연구관과 유사한 입법연구관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경우 기존의 보좌관만으로는 입법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국회의사무처의 법제실, 기획조정실 등에서도 법률안의 입안과 검토, 국내외의 법제 및 그 운용에 대한 조사 업무를 위해 입법연구관이 필요하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제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질적·양적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라 주민의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증가하고 있고, 권리의 가액도 점차 고액화하고 있다.⁵⁶⁾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보면, 법무담당관의 내부 심사 - 소송주관부서의 내부 검토 및 소송수행 -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대리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송무지휘 등의 체계로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① 법무담당관 소속 송무팀의 인원 부족 및 전문성 부족,⁵⁷⁾ ② 소송담당공무원의 비전문성(소송이 빈발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부담 증가 → 단기간 근무와 잦은 인사이동 → 전문성 결여),⁵⁸⁾ ③ 소송담당공무원과

56)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소송만 대상으로 하면, 2004년의 111건에서 2005년 134건, 2006년 127건, 2007년 143건, 2008년 160건으로 증가하였다(이상이, 서울특별시 행정소송 사무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제3호, 2010. 9.)

57)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0년 현재 팀장 행정5급 1명, 행정6급 3명, 기능8급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학 전공 여부를 불문하고 순환보직을 하고 있다.

58) 소송사무 담당 공무원도 비법학전공자가 68%에 이른다.

소송대리인 사이의 유기적인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특히 소송대리인의 수입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 점, ④ 소송의 결과 패소한 경우 패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소송수행평가제도의 미비 등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⁵⁹⁾ 이러한 측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하는 경우 소송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일유형의 소송이 빈발하는 업무나 패소율이 높은 업무 등에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을 전담하는 법률지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 법률지원제도는 외부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법무담당관의 소속 부서에 적어도 1~2명의 국장급 또는 팀장급 변호사의 고용이 필요하다.

이 경우 16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중 최소한 74개의 시와 88개의 구에는 법무담당관제의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법무공단의 확대와 더불어 가칭 지방법무공단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 대리인 및 국선변호인

현재 국회에 계속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는 피해자참가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참가제도는 살인, 강도 등 일정 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하여 직접 증인신문 등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법무부에서 마련한 개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일본의 ‘범죄피해자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및 한국형사법학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에는 국선변호제도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있다.

피해자참가제도의 취지가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절차참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소송절차에 밝지 못한 피해자가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절차참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기존의 국선변호사는 구속피의자와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 참가는 그 역할에서 서로 상충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59) 위 이상이 논문 참조

마. 기타

그밖에 중소기업호민관실의 변호사 고용 확대를 통한 법률자문 확대, 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 등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상으로 2012년 이후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직면하게 될 상황을 예상하고, 법조인 대량증원이 당초 의도했던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향상이 아닌 사법복지의 퇴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률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국가의 개입은 장기적으로 시장원리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것이지, 나아가 단순히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법원, 입법부 등 국가와 공공기관의 법조인력 활용이 민간부문의 추가 부담을 동반하지 않으면서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활용방안으로는 신규 변호사의 충분한 활용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많은 수의 신규 변호사가 개업을 하게 될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절감하고 있는 대한변협과 사법연수원, 법전원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수요기관의 요청을 확인하고, 요청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국가나 법무법인, 기업의 전향적인 고용확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35기(2006년 수료) 취업 법무법인 등 기관 현황 2006. 5. 31.현재

구분	인원	비 고
법무 법인	181	<p>세종 9 김앤장 9 광장 9 화우 6 태평양 6 바른 5 충정 5 삼일회계법인 아람 안전회계 정평 지평 각4명, 율촌 정세 태백 서정 로고스 각3명 동인 두우 리안 지성 한맥 삼영 선명 정동 화인 푸른 KCL 각2명 리인터네셔널 강산 경인 광명 광화 굿모닝코리아 길상 김장리 대륙 대양 단비 대외법률 대일 대지 두라합동 디지털 로25 로시스 명문 민주 삼일 상선 새길 새천년 세인 서광 서로합동 소명 송백 신세기 신우 아이앤에스 아태 안세합동 에버그린 온누리 우일IBS 을지 이지 일신 자하연 장백 장안 장한 정일 중앙 청솔 청와 춘추 한강 한결 한길 한별 한림 한빛 한서 한승 한울 해마루 해미르 CITY GL INS KR TLBS 특허법인(남앤남) 히포크라법률사무소 INS법률사무소 각 1명 그 외 법무법인 7명</p>
공공 기관	71	<p>재정경제부 7 법률구조공단 8 국가청렴위원회 5 법제처 4 경찰청 4 법원사무관 증권예탁결제원 각3명 과기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산업자원부 해양경찰청 헌법재판소 각2명 건설교통부 교육부 국정홍보처 농림부 방위산업청 보건복지부사무관 소방방재청 증권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철도공사 해양수산부 행정도시건설청 출입국관리소 각1명 기타 7</p>
기업	48	<p>삼성(주) 5 부영건설 4 (주)부영 3 미래에셋증권 (주)한화 현대증권 KBS 각2명 강원랜드 기업은행 동부화재 대한항공 드림일렉트론 아세아법률저널 알리안츠생명 우리 투자금융 우리투자증권 인지컨트롤(주) (주)녹십자 (주)신영 (주)LG화학 키움닷컴 코아로직 포스코 한양증권 한화법무팀 현대자동차 CJ(주) GS건설 LG필립스 SK건설 SK증권 SK텔레콤 STX(주) 각 1명, 기타 1명</p>
사회 단체	12	<p>국선전담변호사 5 민주노총 3 전국금속노련 2 국회의원보좌관(장윤석의원) 서울변호사회상근변호사 각1명</p>

36기(2007년 수료) 취업 법무법인 등 기관 현황 2007. 6.30.현재

구분	인원	비 고
법무 법인	273	<p>김앤장 12 화우 11 광장 태평양 각 10 세종 올촌 각 8 대륙 바른 각 7 한승 6 세화 5 민주 다솔 서광 각 4</p> <p>로고스 렉스 바른길 서린 지성 정인 정평 총정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KCL 각 3명</p> <p>다윈 로시스 마당 미래 보나 삼영 서정 선진 성우 소명 세광 신세기 아람 아주 일조 에버그린 영진 우림 자하연 진평 청안 푸른 한결 한얼 해미르 ABA 각 2명</p> <p>경희 길 기쁨 다담 다래 동인 두라 대양 대유 로쿨 로투스 베스트 백상 범어 북촌 비전 인터내셔널 시공 산하 삼일 상선 서린 선명 선우 성실 세길 세인 세창 소망 송원 승우 시티 신우 아태 영광 유비 울곡 울목 우일IBC 운산 이산 장백 장원 정명 정세 정률 집 현 조앤파트너 지안 지평 청와 창공 청률 청명 청지 케이알 코리아 태백 태일 하나로 한림 한반도 한강 한빛 한울 한영 한중 화인 황해 현암 해우 흥윤 화현 호현합동 GK합 동 한영회계법인 현민법률사무소 새날법률사무소 공명법률사무소 남앤드남특허법률사무 소 남산합동 내외합동 대외합동 부천종합 인천시민 인천경인 각 1명</p> <p>그외 법무법인 7 세무법인 1</p>
공공 기관	74	<p>재경부 11 외교통상부 6 법제처 4 감사원 4 경찰청 4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획예산처 노동부 법률구조관리공단 각 3명</p> <p>산업자원부 소방방재청 중앙인사위원회 환경부 각 2명</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소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와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토지개 발공사 해경 헌법재판소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구로경찰서 각 1명</p> <p>기타 5(금융감독원복귀 2 군복귀 1 환경부복귀 1 전남도청 복귀 1)</p>
기업	46	<p>(주)한화 5 대한항공 4 농협 3 포스코건설 LG필립스LCD 각 3명</p> <p>삼성(주) SK텔레콤 CJ 각 2명</p> <p>KT 교보증권 동부증권 리트코 수출입은행 이랜드 대우증권 대보산업 한국저축은행 현 대제철 삼성생명 현대증권 현대중공업 GS건설 LG텔레콤 LG애드 삼성전자 REI(부 동산투자전문) SK KTB자산운용(주) 한진합동 ING생명 각 1명</p>

37기(2008년 수료) 취업 법무법인 등 기관 현황 2008. 6. 30. 현재

구분	인원	비고
법무 법인	347	<p>태평양20 바른15 세종14 김앤장14 화우13 광장12 울촌11 총정6 지성6 로고스5 한승5 지평5 세화5 서정4 KCL4</p> <p>동인 민주 산지 삼영 아태 에버그린 지안 각 3명</p> <p>가산 국민 굿모닝 나라 다윈 다울 대양 대지 덕수 렉스 로시스 로텍 마당 베스트 시공 서린 솔로몬 선명 성우 승 우현지산 유비스 영광 은울 자하연 정평 조은 창조 청안 평산 하나로 한얼 한울 한중 한빛 화인 삼일회계법인 I&S 각 2명</p> <p>강산 경인 광명 광명21 국민중앙분사무소 국제 남강 내외합동 네모 다래 다산 다솔 단원 대구 대륙 대아 대일 동래 동산 디엘에스 로콜 로컴 로우25 문산 미래 미래로 민우 명문 백범 백상 법가 비전 산경 산하 상선 새길 서로 서부제일 서현 서호 세양 세창 세헌 시민 신세기 신우 심정 수호 샘 아주 안산온누리 여민 영진 우인 우진 운산 유일 울목 을지 이지 일송 오늘 장백 정명 정성 정을 제일 중앙 중원 증평 지식 지우 진평 청담 청률 청목 청해 충무 푸른 프라임 한강 한길 한결 한림 해마루 현민 화평 화연 Lee인터내셔널 안진회계법인 조앤파트너스 AIT특허법률사무소 AIP특허법률사무소 대외법률사무소 DLS 아세아종합법률 인천시민법무법인 대명법률합동 랜드마크법률사무소 로솔루션 ok연합법률 다솔법률사무소 티엘비에스 한성법률사무소 우리합동법률사무소 각 1명</p> <p>그외 법무법인 6</p>
공공 기관	46	<p>방위사업청4 감사원4 헌법재판소4 정보통신위2 법제처2 노동부2 정부법무공단2 한국소비자보호원2 환경부2 국회2 국회사무처1 공정위1 금융감독원1 중앙선거관리위원회1 법무부1 통일부1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1 한국철도공사1 해양경찰청1 행정부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 건강보험평가위1 대한변협1 법원사무관1 민주사회를위한모임1 중앙노동위원회1 외교통상부1 국회의원보좌관1 기타2(금융감독위원회복귀1 총리실복귀1)</p>
기업	62	<p>삼성그룹7 한화6 대한항공4 농협중앙회3 동부화재2 미래에셋증권2 SK텔레콤2 현대자동차2 KBS2 고려해운1 대보산업기획1 대한불교조계종1 대우조선해양1 미래에셋자산운용1 미래에셋생명1 부영1 신동아건설1 이랜드1 유진증권1 키움증권1 포스코1 하나HSBC생명보험1 하이닉스1 한신정평가1 한은건설1 한올제약1 한진1 현대로템1 현대상선1 현대해상화재1 CJ엔터테인먼트1 KT1 LG데이콤1 LG텔레콤1 LG상사1 LG전자1 LG화학1 MBC1 SK건설1 분당지역난방공사1 기타1</p>

38기(2009년 수료) 취업 법무법인 등 기관 현황 2009. 6. 30. 현재

구분	인원	비 고
법무 법인	284	가산 개영 경인 4 경희 광장 20 광화 구덕 국민 국제 3 기영 김앤장 11 나눔 나라 나 우리 남산 다담 다운 다원 대륙 3 대륙아주 대아 대양 대유 대지 덕수 도현 동서파트 너스 동인 3 두라 디지털 렉스 2 로고스 4 로비즈 로시스 2 로월드 로텍 로투스 명문 2 명성 명장 미안 민우 민주 3 바른 8 법여울 베스트 부산로앤로 부일 사명 산수합동 법률 삼양 삼일 상상 새날 새롬합동 샘 서로 서정 2 서주 서현 서호 성도 성우 성지 세경 세동 2 세빛 세아 세종 11 세창 2 세하 2 소명 소호 솔론 수호 시공 2 시민 시티 신아 씨에스 씨엘 2 씨티 아세아 안진회계법인 양현 에버그린 여산합동 영진 5 온누리 와이디엘 우성 2 우현지산 운산 2 원 3 월드 울촌 9 울현 이우 2 인덕 인천시민 장백 정 정동국제 정률 정명 정민 2 정평 2 정환 중원 증평 지성 지안 4 지평지성 3 청률 청리 청울 청주 Law 청해 충무 충정 4 충주 클리어리 태승 태평양 19 푸른 한림 한반 도 2 한백 한승 한신 한울 한중 한터 해마루 해승 해울 현암 현 화우 14 화인 화평 2 화현 황해 CIEL DSL DLS INS KCL KCN KNC 2 그 외 법무법인 4
공공 기관	46	법무부 3 헌법재판소 2 국회 1 대한변호사협회 1 정부법무공단 2 해양경찰 1 행정 부 1 감사원 2 법률구조공단 4 건강보험평가심사원 1 국방부 1 건강보험공단 1 서 울지방변호사회 1 교육과학기술부 1 신용회복위원회 3 식약청 1 방송통신위원회 2 경기도 법률상담소 1 여의도한국금융투자협회 1 연금관리공단 1 국세청 1 행정안전부 2 고양시청 1 조달청 1 법원(국선전담) 10
기업	62	대한항공 4 NHN 3 SK텔레콤 2 삼성 2 삼성전자 삼성SDS 신동아 아모레퍼시픽 알리안츠생명 증권선물거래소 한양증권 한화 2 현대건설 CJ(주) 2 KT L.J.Hooker LG화학 PPC코리아 각 1 우남건설 한국감정원 한국도시가스공사 세무법인하나 한진해운 2 한미약품 미래에셋자산운용 2 (주)농심 SK증권 엘지파워콤 포스코 2 SKT 대웅제약 2 SK브로드밴드 현대중공업 리앤리에셋 농협 삼일회계법인 (주) 위아 한화세무법인 동부건설 동부화재 인지컨트롤스 그 외 기업체 8

39기(2010년 수료) 취업 법무법인 등 기관 현황 2010. 6. 30. 현재

구분	인원	비 고
법무 법인	286	<p>김앤장 15, 세종 14, 바른 14, 태평양 13, 광장 12, 화우 8, 로고스 6, 정평 6, 울촌 6, 원 5, 지평지성 5, 충청 4, 정률 4, 주원 4, 푸른 4, 청목 4, 영진 3, 안진회계 3, 정세 3, APEX 3, 지인 3, DLS 3, 세창 2, 헌암 2, 청담 2, 다운 2, 광개토 2, 국제 2, 민주 2, 화평 2, 운산 2, 대지 2, 마당 2, 동인 2, 대륙아주 2, 안민 2, 지석 2, 정동국제 2, 한신 2, KCL 2, 해울 2, 정민 2, 명문 2, 지우 2, LNH종합법률 2, 이인 2, 국민 2, 신아 2, CL 2, 승 2, 양재 2, 현 2, 로투스 2</p> <p>유비즈, 하나로, 해우, 삼정회계, 한얼, 은울, 로앤탐, 세경, 청해, 남산, 한울, 서정, 양현, 아세아, 천우, 리인터, 온누리, 아주대륙, KNC, 성신, 울전, 다원, 한진, 재유, 강산, 세연, 새날, 시공, 강호, 울, 율향, 세승, 동행, 로텍, 한림, 소명, 노무법인, 태한, 오늘, 승지, 단원, 21세기, 지안, 화현, 가야, 제이원, 이레, 삼일회계, 부일, 대로, 대울, 정동, 산하, GK, 대아, 수호, 신세기, 새얼, 정인, 우면, 한울, 한중, 청진, 선명, 우성, 한로, 이일, 우신, 오로라, 해승, 한반도, 중원, 산호, 흥윤, 지후, 특허법인(AIT), 대원, 한우리, 색동, 대유, 송원, 신촌 각 1</p>
공공 기관	60	<p>군법무관(장기) 16(여 11명, 합격자 17명 중 6명 철회, 5명 추가선발), 감사원 4, 정부법무공단 3, 법률구조공단 3, 법제처 3, 노동부 2, 헌법재판소 2, 경찰 2, 군법무관 복귀 1, 검찰사무관(사법시험전 합격) 1, 행정안전부 1, 국회의원보좌관 1, 철도공사 1, 문체부 산하한국저작권위원회 1, 환경부 1, 국방부 1, 공정거래위 1, 법원사무관 1, 국회(입법조사처) 1, 군법무관(여) 1, 경정특별채용 1,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 법원(국선전담) 10</p>
기업	61	<p>삼성전자 2, 삼성화재 1, 삼성생명 1, 삼성코닝정밀유리 1, 삼성제일기획 1, 삼성 SMD 1 / LG전자 3, LG하우시스 2, LG디스플레이 1, LG상사 1, LG이노텍 1, LG칼텍스 1 / 현대건설 3, 현대중공업 2, 현대증권 1, 현대해상 1, 현대모비스 1, 현대제철 1, / 한화그룹 4, / KT 2, 하나은행 2, 교보생명 2, 하이닉스 2, 한진중공업 2, SK에너지 1, 신한 BNP파리바자산운용 1, 유네스코(자카르타) 1, 대한항공 1, (주)이랜드월드 1, 금융투자협회 1, (주)이비 1, 미래에셋 1, 한길 1, 다비다 1, 한국투자신탁운용 1, 한국장학재단 1, (주)효성 1, SK에너지 1, KT렌탈 1, 한국증권금융 1, CJ그룹 1, 기업은행 1, 인지컨트롤스 1, 기아차 1, 호반건설 1, 태광산업 1</p>

40기(2011년 수료) 취업 법무법인 등 기관 현황 2011. 9. 30. 현재

구분	인원	취업 내역					
로펌	279	강산	거인	광고	광장 11	국제 2	
		김앤장 16	나우리	남&남	다담 2	단원	
		다우	대륙아주 3	대지	대유	대현 2	
		동명	동문 4	동인	두우	대양	
		로고스 6	로비즈	로시스 2	로앤	로앤로	
		로컴	리안	명문 3	명장	미래로	
		미르 2	민	민주 3	민주노총법률	2	
		바른 8	법률구조공단	3	법사랑	사람과사람	
		사명	산지	산호	산하 2	삼일 2	
		상상	새빌	새얼	서광	서로 2	
		서정	서호	선명	선울	세승	
		선진종합법률사무소		세양	세영	세인	
		세종 11	세줄	소망	승지	시공	
		신지평	신앤유	씨엘	수	신해, 신화	
		성원합동	송현	아펙스	아이엔에스	에이스	
		이름	안민 2	안세	알앤씨	양재	
		여명	열린	영장	영진 2	오늘	
		온누리	우송	우신	유진	원 4	
		위더스	유엔인	을지	울촌 10	올려	
		은울 2	이래	이수 2	인천계양종합	아태	
		진명	재단법인행복세상		정	정동	
		정동국제 2	정률 4	정민 2	정상	정울	
		정인 3	진산	정평 2	장안	장백	
		제이원	정석	주성	주원	중앙	
		지산	지우	지평지성	청담 2	청우 2	
		충정 7	태승	태평양 16	퍼스트	프라임 2	
		한강 2	한결	한맥	한별 2	한울	
		한우리 2	헌암 2	현	화우 7	화평 3	
		황해 2	휘스트	APEX	KJ법률사무소	현대오테에버	
		한창호법률사무소		H&P	KCL 2	LG C&S	
		LG U+	SK	GK법률사무소		케이엔	
		공공기관	63	감사원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		국방부 5
				국정원 3	국회 4	군법무관(장기)10	<여자5>
				노동부 5	농림부	법률구조공단 3	법원공무원
인천도시개발공사				정부공단 2	중앙선관위 2		
헌법재판소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무부		
대한가정법률상담원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법제처	국선전담변호사 9						

구 분	인 원	취 업 내 역			
기 업	75	교보증권	금융감독원	대우조선 3	대우증권
		대한항공 2	대한생명	대신증권	대우해양조선
		동양증권증권	미래에셋	산업은행 2	삼부토건
		삼성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제일모직	삼성증권	삼성SDS	삼일회계 6
		신세계	신영증권	아주그룹	우남건설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이랜드 2	CJ
		LG	코스코	코오롱건설	키움증권
		포스코건설 3	한양증권 2	한진중공업	한화증권
		현대로지엠	현대자동차 4	현대중공업	현대카드 2
		현대하이닉스	현대증권 2	현대그룹	효성중공업
		KT 4	KT&G	LG플러스	SBS
		SK 2	(주) 일진	KCC	포스코
		(주)OCI	교보생명		

토론문

- 정완용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2012년 1월 제1회 변호사시험이 끝나고 4월 10일 시험합격자가 발표되면 약 1,500명 의 변호사가 로스쿨을 통하여 배출될 예정이다. 한편 2012년 봄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이 1,000명 배출됨으로써 내년 봄에는 2,500명의 새로운 법조인이 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1년 10월 현재 약 12,000명인 변호사 수가 앞으로 2015년이 되면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호사수의 증가에 따라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직역 확대가 필요하게 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요청된다.

발표자 두 분이 제시하신 제도개선방안은 정부와 로펌, 기업 등에서 채용한 변호사 통계 등을 토대로 하고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우리나라가 로스쿨을 도입하기 위하여 모델로 삼은 선진국들의 변호사 진출과 직역의 현황에 대한 통계를 근거로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어서 매우 유용한 분석과 제안이 이루어졌다 본다.

기존의 변호사제도가 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제도이며, 제한된 법조인이 시험에 의하여 선발되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각각 법관, 검사 및 변호사로 임용되어 왔다.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되고 로스쿨 졸업생들이 배출됨과 아울러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국민들의 법률복지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직역 확대는 이제 종래의 사법연수원출신 법조인의 직역과 그 한계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법조인단체가 로스쿨제도에 의하여 탄생하는 신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들이 다양한 전공을 한 후에 3년 간의 로스쿨에서의 전문법률교육을 받은 인재이며, 그들이 전공한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을 적재 적소에 활용하여 국민들의 법률복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법조인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발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미국 로스쿨 졸업생들은 로펌에 취업하는 것 외에도 기업과 다양한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여전히 송무 중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로펌과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초기에는 이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로스쿨 출신변호사들은 눈을 높이 들고 넓은 직업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고 대신 몸을 낮추고 국

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법치국가에서 법조인의 역할은 종래의 송무 중심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법률전문가로서의 조언자와 안내자의 역할로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관계기관의 공동노력이 요청된다.

변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실로 다양하다. 예컨대 로펌과 기업의 법무팀 외에도 국가, 공공기관,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 그 폭이 매우 넓다.

법무부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로스쿨 제도를 운용해 나가는 주체이므로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과 그 후의 진출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 특히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6개월 의무실무연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변호사의무연수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의무연수가 변호사업무에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기를 희망한다.

로펌의 경우에 실무수습과 로스쿨출신 변호사의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채용함으로써 채용과정상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것을 희망한다. 이는 제도적으로 변호사시험성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중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모 로펌에서는 지역균형선발 방침을 정하고 지방로스쿨 출신들에게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기관과 산하 연구기관 및 공공단체의 경우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채용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채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경우에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하여 법무팀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굳이 법무팀에 국한하지 말고, 일반 현업부서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송무업무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상법에 도입된 상장회사 준법지원인제도가 잘 정착되어 기업의 발전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취업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로스쿨 초기에 제도가 정착되기 위하여서는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올 해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째가 되는데, 이제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의 다양한 법률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변협 그리고 로스쿨과 기업 등 관련 기관이 상호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마음으로 로스쿨 졸업생의 직역확대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토론문

- 강연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로스쿨 변호사 직역 확대 방안

토론자 : 대한변협 사무차장 강연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I 목차

1. 변호사 직역 확대의 목적
 - 국가 발전(공공성) /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인권 옹호)
2. 고용 변호사 활동 영역 확대
3. 개업 변호사 활동 영역 확대
4. 변호사업계의 구조적 문제 개선
 - 변호사 수(변호사시험 합격률) / 법률유사직역자 문제

대한변호사협회

1. 변호사 직역 확대의 목적

- 변호사를 두려워하는 사회는 발전과 선진화를 두려워하는 사회이다
- 변호사 직역 확대는 국가발전과 국민 인권옹호 확대의 반사적 결과일 뿐 직역 이기주의로 매도, 변호사 영역 확대를 막는 분위기 확산은 위험

대한변호사협회

2. 고용 변호사 활동 영역 확대

- 입법, 사법, 행정 각 분야 적극 활동
(입법보좌관제, 로클럭제, 행정법률지원인제, 공공기관(단체) 내 전문가옴부즈만제)
- 법률 사무 영역에 국한 X,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거나 지원을 받는 모든 각종 위원회, 공기업, 공사 등의 대내외적 공정 운영 담당관
- 공적 기관에 국한 X, 다수의 국민 재산, 인권과 관계된 대규모 사기업, 상장사 등의 준법운영 담당관

대한변호사협회

3. 개업 변호사 활동 영역 확대

- 한 가정 전담 변호사제 (주치의 대응 개념)
- 의료와 법률을 달리 취급하는 인식 개선 시급
- 저소득층, 빈곤층, 사회적 약자도 쉽게 법률조력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일부 비용부담 필요. 사회보장적, 기초 복지 차원의 접근 필요
- 개업 변호사의 공익 활동 영역 확대 (국선변호, 법률조력인, 민사, 가사 등에도 국선대리인변호사 제도 신설)

대한변호사협회

4. 변호사업계의 구조적 문제 개선

(1) 변호사 수

- 변호사 수 증가의 필수 전제요건은 미해결?
그 피해는 국민, 특히 저소득층, 약자층 국민에게 돌아감
- 로스쿨 성공적 안착 및 존치의 유일한 조건
로스쿨 수료 변호사들을 위한 길 :
변호사들의 일정 수준 이상의 만족감, 인력 활용 시스템,
사회의 수용가능 한계 고려

대한변호사협회

(2) 법률유사직역 문제

- 로스쿨은 변호사 활동 영역을 종전에서 더 확대, 국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개념에서 출발
- 반대로, 법률유사직역은 변호사의 종전 영역 (소송대리권) 까지 축소, 활동 영역을 더 좁히며 과도한 경쟁, 다함께 자멸 (기존 법률유사자격취득자, 로스쿨 수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권 무분별, 임시방편적 허용 차단
- 사법시험과 같이, 일정기간 유예기간 후 신규 합격자 수 축소 및 잠정적 폐지
- 다양한 분야의 전공 지식 + 법률지식 갖춘 로스쿨 수료 변호사 인력으로 통합
(미국은 비변호사의 소송대리 불허. 미국의 '전문변호사 제도'로 확립)

대한변호사협회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토론문

- 한상희 (로스쿨교수협의회, 건국대 교수)

1. 법률서비스의 개념변화¹⁾

세계화가 강조되는 오늘날 국가가 법률가의 양성이나 충원 또는 그들의 직무수행에 직접 관여하여 법률서비스의 생산·공급과정을 결정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²⁾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국가가 주도하는 법조관료모델이 쇠퇴하게 되는 과정은 구체적인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가속된다. 그 첫째는 1960·70년대 이후의 베이비붐과 경제성장에 따른 교육기회의 확대이다. 이 시기에는 세계의 주요국가에서 법과대학 졸업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맞추어 법률가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의 수도 급증하였다. 강력한 국가적 통제가 실시되었던 독일만 하더라도 70년대를 거치면서 법과대학 입학생수가 50% 가까이 증가하였고(1973년 약 1만명에서 1981년 14,718명) 변호사의 수도 1970년 22,822명에서 1980년 36,077명으로 5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이다.³⁾ 이렇게 변호사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 모두를 국가 관료적 관념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무의미하기조차 하였다.⁴⁾

유럽통합은 둘째의 요인을 이룬다. 1953년의 로마조약에 따라 출범한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가 1977년 서비스산업지침(the Services Directive (77/249))을 선포, 유럽의 변호사는 다른 유럽국가내에서 한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1998년에는 항구적인 기반을 가지고 다른 국가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⁵⁾을 선포함으로써 적어도 EU체제 내에서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한

1) 이 토론문은 토론자가 이미 발표한 글에서 발췌한 것인 만큼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론자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독일도 2003년부터 제1차국가시험의 30%를 대학에 위임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아직 법체계가 '근대화'되지 못한 국가에서는 이런 양상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과거 사회주의체제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극도로 위축되었던 국가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경우 여전히 국가적인 통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더러 있다. 예컨대, 폴란드의 경우 아직도 변호사의 자격부여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높은 진입장벽을 마련하고 있다.

3) E. Blankenburg and U. Schultz, *op.cit.*, pp.97, 118.

4)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일에서 신규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 5%정도만이 법관으로, 10% 내지 15%정도가 정 부관료로 임명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당시 독일법학교육의 개혁과제도 법 관을 중심으로 하는 재판법의 교육이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에 초점을 맞춘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Johannes Riedel, "The Reform Of Legal Education In Germany," *the European Journal of Legal Education*, Zero Issue, 2001 참조. 소위 경제법률가 *Wirtschaftsjurist* 또는 대규모로펌소속변호사 *Anwalt in eine Großkanzlei*에 대한 사회적 수요 역시 확대되었다. 이런 변화는 2003년 7월 발효된 새로운 국가시험제도에도 반영되어 협상·조정, 표현·수사학, 의사소 통·대화술 등의 내용이 국가시험에 포함되었다. 자세한 것은 변무웅, "독일의 사법시험 제도 곧 국가시험과 법학교육," *한양법학 제15집*, 175면 이하; Joerg Krueger, *Zur(falligen) Reform der Juristenausbildung*, 변무웅역, 개혁해야 할 법률가 양성제도, 법과 정책연구, 제2권 제2호, 2002, 435면 이하; Kilger Hartmut, *Die Reformdiskussion zur Ausbildung der Juristen*, 변무웅 역, 법률가 양성교육에 관한 개혁논의, 법과 정책연구 제1권, 2001 등 참조.

5) 각각 European Community COUNCIL DIRECTIVE of 22 March 1977 to facilitate the effective exercise by lawyers of freedom to provide services (77/249/EEC); Directive 98/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국경이라는 개념이 거의 희석되고 말았다. 환언하자면 각국의 다양한 변호사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법률사무에 종사하는데, 오직 어느 한 국가만이 법률가를 국가중심적으로 개념화해야 할 현실적 기반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전문가모델이 완전한 대안이 된 것도 아니다. 경제발전으로 인한 기업법무의 증가는 물론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국면에 직면하면서 법률서비스전달체계는 시장경제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60·7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활성화된 시장에서의 거래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률수요를 창출하였다. 이 시기 미국의 대형로펌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⁶⁾ 시장에서 필요한 거래-계약뿐 아니라 그 계약의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의 문제, 나아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각종의 제조물책임, 소비자보호, 고용계약 등의 문제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업측의 수요 증대로 귀결되었다.⁷⁾ 1940년대 말 미국의 국내총생산에서 법률서비스분야가 차지하던 몫이 0.5%에 불과하였던 것이 1980년대 중반에는 1% 수준(약540억달러)으로까지 급성장하여 철강이나 섬유부분을 추월하고 자동차나 출판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까지 이른다.⁸⁾ 이런 경향이 미국에서의 대형로펌을 더욱 대형화하게 만들었고⁹⁾ 그 확대된 몫은 대부분 기업법무쪽으로 흡수되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로펌들이 점점 더 기업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로펌의 매출

February 1998 to facilitate practice of the profession of lawyer on a permanent basis in a Member State other than that in which the qualification was obtained, 1998. 3. 14.; 또한 다른 회원국에서 취득한 변호사자격을 자국에서도 인정하여 변호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Council Directive 77/452/EEC of 27 June 1977 (concerning the mutual recognition of diplomas ……) 참조.

- 6) 일례로 시카고의 100명 이상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던 시카고 소재 Law Firm들은 1975년에는 시카고에 있는 변호사의 5%만 고용하고 있었으나 1995년에는 이 비율이 19%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J. P. Heinz, et.als., *Urban Lawyers: The New Structure of The Bar* (2005), p.144, 표6-2 참조.
- 7) 예컨대 1967년 법률서비스산업의 매출 중 55%는 개인이 그리고 39%는 기업이 구매하였으나 1992년에는 이 경향이 역전되어 51%를 기업이 40%를 개인이 구매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개인의 구매총액은 261% 증가했으나 기업의 구매총액은 555% 증가하였다. Marc Galanter, "An Oil Strike in Hell: Contemporary Legend about the Civil Justice System," *Arizona Law Review* vol. 40, 1998, p.718 각주7 참조.
- 8) R. H. Sander and E. D. Wolliams, "Why Are There So Many Lawyers? Perspectives on a Turbulent Market," *Law and Society Inquiry*, vol.14, 1989, p.434. 이에 의하면 미국의 법률서비스산업은 국내총수입(GNI) 대비 0.65%(1970년)에서 1.38%(1987년)으로 70·80년대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p. 435, Table 2 참조.
- 9) 기업들은 모든 법률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full-service" 로펌을 원했고 이에 따라 로펌의 대형화 및 내부적인 분업체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R. H. Sander and E. D. Wolliams, *op.cit.*, p.436. 참고로 2008년 현재 미국의 경우 규모 1위의 로펌인 DLA Piper는 3,785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으며, 2위인 Baker & McKenzie는 3,627명, 3위인 Jones Day는 2,523명의 변호사를 두고 있다. 이들 세 로펌의 변호사수만 합쳐도 우리나라의 변호사 전체 숫자보다 많은 셈이다. NLJ에 의하면 소속변호사 1,000명 이상인 로펌이 27개이며, 250위에 해당하는 로펌이 Nexsen Pruet으로 174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다. 또한 50대 로펌의 소속변호사수는 총 64,061명이다. *The National Law Journal, Annual survey of the nation's largest law firms, 2008*; <http://www.law.com/jsp/article.jsp?id=1202425850619> (2009.9.25 열람)

의 상당부분을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¹⁰⁾ 기업들이 급증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스로 법무실을 갖추는 등 사내변호사를 확보하여 법률사무의 주된 방향과 처리방식을 결정하고 정형화된 세부분야들을 외부의 로펌에서 처리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을 ‘쇼핑(shopping)’하는 등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업무수행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이다.¹¹⁾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기업과 로펌간의 비경제적 관계-단골 등-가 점차 해소되었음이 큰 역할을 하였다. 법률서비스가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그의 구매를 위해서는 공급자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뢰재라고 한다면, 종래의 관행은 기업들이 이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정한 로펌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질에 대한 담보를 받았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기업이 사내변호사를 고용하고 법무실을 운영하는 등 스스로 이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서면서는 이런 단골관계 혹은 그에 기반한 신뢰의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업무지향이 되고 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계약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로펌이든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실현시켜줄 수 있는 로펌을 찾아 사건을 위임하였고, 로펌의 입장에서는 격심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는 이런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의 결실이 발효되면서 세계경제는 서비스분야에까지 개방된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여기에 법률서비스도 개방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로펌들의 경쟁은 자국 내의 한정된 시장을 넘어서서 전세계적인 경쟁체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OECD를 비롯하여 WTO체제에서의 서비스교역을 확장하려는 국가들에서는 종래의 법률서비스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던 제반의 규율들-특히 변호사자격부여 및 단체가입의무, 직역의 독점 등-은 서비스교역을 가로

10) 이 당시 기업법무는 대형로펌에 집중되면서 그 로펌의 수입을 총당하였다. 1972년만 하더라도 1백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로펌들은 그 매출의 70%를 기업으로부터 거두었다고 한다. 반면 그 이하의 매출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76%가 개인으로부터 나온 매출이라고 한다. *ibid.*, p.441.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법률서비스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법률서비스의 매출규모는 연간 11.7% 성장하였지만 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매출규모는 1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로펌이나 솔로로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정부 등에 고용된 변호사의 비율은 증가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사내변호사의 고용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R. H. Sander and E. D. Wolliams, *op.cit.*, pp.440-442.

11) M. Galanter and W. Henderson, "The Elastic Tournament: A Second Transformation of the Big Law Firm,"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The American Legal Profession: Current Controversies, Future Challenges" at Stanford University, 2008.3.14. pp.39-44 특히 p.43 각주 174, 175 참조. (이 글은 law.usc.edu/academics/assets/docs/Henderson.pdf (2009.9.20 열람)에 게재되어 있음)

막는 장벽으로 규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¹²⁾ 미국이나 영국 등의 대형로펌들은 외국에 지사 혹은 지점을 두거나 또는 외국로펌들과 제휴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시장을 넓혀 가고자 하였고, 이는 역으로 당해 국가의 내부시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한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이 치열해짐을 의미하게 된다. 경쟁의 공간적 확장이 발생하는 셈이다.¹³⁾ 이 과정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법률서비스 쇼핑이 일어나게 되면 변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이라는 윤리적 요청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로 촉발되는 지식산업의 발전은 법률서비스시장에 대한 법률전문가모델의 기본전제부터 흔들어놓는다. 법률전문가모델은 법률가가 가지고 있는 법률지식과 기술은 '전문적'인 것이며 따라서 일정한 자격 및 교육요건을 통해 그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는 독립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및 성실성 등이 복합된 '전문적 업무(profession)이지 결코 이윤의 추구를 목표로 하는 영업일 수는 없다고 한다.¹⁴⁾ 하지만, 오늘날 발전된 지식관리체계(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는 이런 전문직의 항변을 상당부분 무의미하게 만든다. 법률에 관한 지식체계를 다양하고도 다원적으로 해체하여 그 서비스의 내용을 총체적인 것에서부터 과정적인 것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다. 즉, 법률지식 혹은 기술을, 고도의 전문적 판단 혹은 선택이 필요한 부분과 정형화·표준화되어 약간의 지식을 갖춘 자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간단한 통제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등 다양하고도 다원적으로 구성하여 그에 적합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¹⁵⁾ 이는 한편으로는 사내변호사를 중심으로

12) 그 대표적인 예가 OECD의 경쟁강화위원회(the Competition Committee)가 2007년 실시한 정책라운드테이블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28개 국가 또는 단체가 참여한 이 모임에서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각종의 진입장벽 등 경쟁저해요인을 규명하고 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The OECD Competition Committee, *Competitive Restrictions in Legal Professions 2007*; <http://www.oecd.org/competition> (2009.9.20 열람) 참조. 또한 EU에서도 회계, 법무, 기술, 약제 등 4개의 전문직 영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Iain Paterson, et al., *Economic impact of regulation in the field of liberal professions in different Member States: Study for the European Commission, DG Competition, Institut für Höhere Studien (IHS), 2003.1.* 참조.

13) 독일의 2003년 국가시험개혁작업이 변호사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여 다른 국가출신의 변호사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음은 그 간접적인 예증이 된다. "시험 끝내고 유럽노동시장에 가 보니 세월은 모두 독일에서만 흐르는지 독일출신 변호사는 하나같이 허리 구부러진 늙은이일세"라는 푸념은 EU제국에 비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 버린 독일 법률서비스공급체계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K. Hartmut, *전계번역논문*, 401면에서 인용. 세계화국면에서 변호사들의 직역확장 및 적응의 문제에 관하여는 D. Trubek, Y. Dezalay, R. Buchanan, and J. R. Davis, "Global Restructuring and the Law: Studie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Legal Fields and the Creation of Transnational Arenas," *Case Western Reserve Law Review*, vol.44, 1995, pp.407-498 참조. 이 논문에서는 법률서비스시장의 세계화를 다룰 뿐 아니라 국내시장조차 세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4) 전술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는 약간 다른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판시에 의하면 변호사는 일종의 사법관료에 준하는 공적 존재로서 마치 공무원이 영리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변호사 역시 외관상 영리행위에 유사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여 그를 상인으로 간주해서는 아니된다는 함의가 강하다.

15) R. Susskind는 이런 변화에 기반하여 법률사무를 표준화하여 그 처리를 일련의 프로세스속에서 통제하는 한편 이를 IT화할 것을 주창하면서 대규모 로펌들의 지식관리체계 및 법률서비스생산체계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R.

로 하는 사내법무팀-로펌(이는 다시 내부적으로 법무보조원(paralegal)-고용변호사-파트너의 관계로 분할된다)의 유기적 분업관계(소위 in-sourcing이 그 한 예가 될 것이다)¹⁶⁾ 거시적으로는 기업과 로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아웃소싱¹⁷⁾의 관계로 발전한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전문화·특수화(specialization)의 경향은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업무들이 법률사무의 측면에서 각 전문분야에 특유한 지식과 기술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이동하게끔 한다. 예컨대, 환경법전문변호사는 여타의 변호사들과 의사소통하는 것보다 환경과학이나 환경기술과 관련한 전문가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더러 그가 가진 법지식이나 법기술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과학지식·환경테크놀로지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수단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전문직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라 할 전문지식이 환경법전문변호사에 있어서는 법지식이 아니라 환경과학·공학지식이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모델이 기반하고 있던 법률전문지식·기술이라는 담론은 해체되어버리고 만다.¹⁸⁾

Susskind, *The End of Lawy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ch.1, ch.4 및 ch.7 참조. 그에 의하면 이렇게 될 경우 일반인들도 스스로 법률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체제-그는 이를 "DIY law"라고 한다-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한다. p.238.

- 16) 이는 또한 지역내의 유사지역간의 분업과 경쟁의 체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다양한 법률전문직종을 통합함으로써 지역간의 경계를 해체한 것은 그 주요한 예가 되며, 영국의 법률서비스법(2007)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하에 법률전문직에 대한 규율장치를 마련하면서 barrister와 solicitor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인(licensed conveyancer), 변리사(patent attorney), 상표권변리사(trade mark attorney) 등까지도 포괄하고(section 129), 이들 지역간의 partnership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소위 Legal Disciplinary Practices: LDP), 비변호사의 동업, 투자도 허용(소위 Alternative Business Structures: ABS)함은 법률서비스가 반드시 하나의 직역에만 전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2000년을 전후하여 변호사와 비변호사(특히 회계법인)의 동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된 것도 국제적인 법률서비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수단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Sarbanes-Oxley Act(2002)는 이런 직역간 동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관한 정리로는 Y. Dezalay and B. G. Garth,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Big Five and Big Law: Turf Battles and Ethical Debates as Contests for Professional Credibility," *Law & Social Inquiry*, vol.29, 2004, pp.615-638 참조.
- 17) 실제 법률서비스의 아웃소싱은 인도가 주된 시장이다. 한 보고에 의하면 인도는 2006년 현재 1억 4600만 달러에 이르는 법률서비스의 아웃소싱을 수주하였고, 2010년에는 6억 4천만 달러까지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례로 이 분야의 선두기업인 Pangea3 (www.pangea3.com)는 ISO97001까지 취득하고 미국과 영국, 일본의 로펌이나 기업들로부터 서류작성 및 검토, 법률정보조사, 자료분석 등의 업무를 수주하여 처리하고 있다 한다. ValueNotes, *OffShoring Legal Services to India-An update: An analysis of the high growth legal offshoring industry*, 2007.7.; <http://www.sourcingnotes.com/content/view/71/54> (2009.9.20 열람)에서 인용함. 또 Lakshmi, Rama. "U.S. Legal Work Booms in India: New Outsourcing Industry Is Growing 60 Percent Annually." *Washington Post*, 2008. 5. 11.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8/05/10/AR2008051002355.html>. 참조. 또한 인도의 경우 이런 법률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광고허용, 파트너쉽확대 및 책임제한, 비변호사와의 동업허용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A. Hariani, "Globalisation and The Indian Legal Services Sector: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Government Law College Law Review*, Vol. 62007 pp.34-7
- 18) R. C. Campton, "Delivery of Legal Services to Ordinary Americans," *Case Western Reserve Law Review*, vol.44, 1994, pp.531-620, 특히 pp.607-612 참조. 이 논문은 사회적 소수집단들의 변호사진입과 더불어 이런 전문화·특수화가 미국의 변호사의 집단적 동질성을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전문직 개념-후견적 보호주의(paternalism: "우리만이 법률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와 위선(hypocrisy: "우리는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에 기반한-이 허물어져 버리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전문직 윤리규범의 창출을 촉구

2. 로스쿨이 양성하여야 할 법률가의 모델

요컨대, 법률서비스가 전체로서의 통일성과 내적 정합성을 가진 지식으로서의 법지식에 기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 모델의 기본전제라고 한다면, 오늘날 지식의 세분화와 지식산업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이 법률‘전문’지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회의하게 만든다. 우선 법지식 자체가 ‘전문화’ ‘특수화’라는 명분으로 각각의 특수영역으로 세분되어 법률전문가모델이 전제하고 있던 법지식의 총체성이 해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종래 계약법이나 재산법, 불법행위법 등 일반법지식에 입각한 legal mind가 강조되던 것에 비하여 점차 각자의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그에 특수한 법지식과 법기술을 구축할 것을 강조하는 전문특수화(specialization)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렇게 해체되고 세분화된 법지식은 종래 법률전문직이 지향하던 공익목적-법치, 사법정의의 실현 등-에 봉사하기 이전에 고객-주로 기업-의 이익에 먼저 부합되는가에 따라 그 의미와 질이 판단되고 또 평가된다. 셋째 나아가 이렇게 단위별, 영역별로 세분화되는 법지식은 전체로서의 법지식에 봉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과 단절된 채 다른 과학지식·경제지식·경영기술 혹은 회계기술과 결합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넷째, 결국 지식의 측면에서 변호사들은 법률보다는 다른 영역-경제·경영, 재무·투자, 지적재산, 교역 등-과 더욱 긴밀한 결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요컨대, 종래 법률전문직의 본질을 형성하면서 그들을 다른 직업군 또는 보다 거시적으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인식할 있게 만들었던 그 법지식¹⁹⁾은 점차 해체되고 단위단위 혹은 영역별로 모듈화되어 그 자체로 규정되는 목표에 따라 체계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렇게 모듈화되어 버린 법지식들을 전략적으로 분산·결합·통합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음은 종래와 같은 전문직으로서의 법률가의 시장독점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²⁰⁾

한다. 실제 전문가모델이 기반하고 있는 직업적 가치의 공유라는 것이 미국의 변호사사회에서는 거의 해체되어간다는 비판은 적지 않다. 예컨대 Edwards(1992)는 법학교수, 개업변호사, 정부소속변호사, 기업소속변호사 등이 각각 하위집단적 소속감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것이 전체로서의 변호사라는 정체성과는 단절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19) 법지식이나 법논리, 법담론들이 변호사들의 시장독점의 수단 혹은 직업적 독립의 기반으로 작용하였음을 분석한 것으로는 M. Larson, *The Rise of Profession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시장독점의 수단으로 법지식 구축)와 T. C. Halliday, *Beyond Monopoly: Lawyers, State Crises, and Professional Empower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정치적 독립의 수단으로 법지식 활용) 등이 대표적이다.

20) 이에 관하여는 S. Mayson, "Legal Services Reforms: Catalyst, Cataclysm, or Catastrophe?," The College of Law of England and Wales, Legal Services Policy Institute, 2008. 3. 21, in: <http://www.college-of-law.co.uk/about-the-college/Institute-Papers.html> (2009.9.15 열람) 참조. 아울러 R. Susskind, *The End of Lawyers? op.cit.*, ch.2는, 미래의 법률서비스산업은 IT산업의 도움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상품화하고 이를 다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만드는 등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된 ‘이념적’ 기초는 법률전문가모델임은 틀림없다. 그것이 법률서비스시장에 대한 변호사의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술²¹⁾이든 혹은 고객의 이익을 법의 지배와 인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공익과 조화시켜야 할 국가적/사회적 필요성에 기반한 것이든 또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어떤 전문직의 특성 때문이든 어떤 맥락에서건 법률전문가모델을 제치고 법률기업가모델로 이전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는 예는 쉽게 찾을 수 없다. 대부분의 변호사단체들은 여전히 변호사에 대한 윤리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변호사의 질(qualified lawyer)"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격 및 진입통제가 필요함을 역설한다.²²⁾ WTO체제하에서 법률서비스의 국제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변호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한 예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법률서비스시장은 이념(법률전문가 모델)과 현실(법률기업가모델)이 서로 상충하고 있거나 혹은 법률지역의 이익(직업적 독점)과 기업/소비자의 이익(비용편익분석에 따른 효율성 추구)이 상호 모순적 관계에 들어서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법률서비스를 바라보는 당대의 시각은 이미 변화의 국면에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아일랜드 등과 같이 법률서비스산업이 GDP의 1%이상²³⁾에 이르는 등 국가 경제에서 부가가치의 생산에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M&A나 국제적인 콘소시움 결성, 국제적인 Finance Project, WTO에 기반한 자유교역체제의 형성 등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법률가들이 수행하는 역할 등을 감안할 때²⁴⁾ 대부분의 법률선진국들에서는 자국의 법률서비스산업이 경제적으로

21) 실제 미국의 경우 ABA의 인증평가(accreditation)제 자체도 네 가지의 의미의 시장-법학교수의 수급을 위한 시장, 법률교육시장, 법률서비스시장, 그리고 대학내 자원분배를 위한 시장-을 왜곡시키는 일종의 카르텔을 의미하며 따라서 독점금지법(Anti-Trust Act)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다. G. B. Shepherd, "Scholarly Restraint? ABA Accreditation and Legal Education," 19 *Cardozo L. R.* 2091 참조. 이 논문은 이런 제도들이 법률서비스의 공급가격을 상승시키며 비용편익면에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반면 자유경쟁시장이 제공하는 정도의 성과도 못 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주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22) T. C. Hailday, *op.cit.*의 분석은 이 과정이 어떻게 집단이익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법률가들은 먼저 집단적인 시장통제권을 확보한 연후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법체계, 법률의 정당성, 절차적 정의와 법률주의 등의 구축과정에서 법률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해 왔다고 한다. 이는 전문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법률지식과 기술의 축적과정에 이들이 어떻게 관여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이기도 하다.

23) 미국의 경우 1998년에 이미 GDP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1.44%, 2003년 1.46%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신도철, "로스쿨 정원은 법률산업발전 측면 고려해야," 데일리안 2007.11.04;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87948&sc=naver\(2009.9.20](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87948&sc=naver(2009.9.20) 열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6년 현재 변호사업의 총매출액은 1조 4627억원으로 GDP의 0.16%에 불과하다. 법률서비스시장이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등 선진외국의 1/10에 불과한 것이다. 통계치는 통계청 www.kosis.kr 참조.

24) 예컨대, 한상희, 미국통상정책과정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서울대 미국학 17집, 1994 참조.

보다 순기능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제반의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법률전문직에 대한 개혁작업은 대체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 첫째는 사법정의에의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법률전문직과 고객의 관계에서 존재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나 비효율적인 제도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여기서는 법률전문직에 대한 일반인의 정보부족-즉,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광고허용, 수입료제한철폐, 수입료에 관한 계약 허용, 법률전문직의 징계제도 및 고객의 민원처리절차 합리화, 신속·효율화 등이 중심이 되어 개혁의 과제를 이루었다. 또 하나의 개혁 목표는 시장경제의 효율화이다. 법률전문직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가 국내적 또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특히 이러한 법률서비스로 인해 기업등 다른 경제부문들이 그들의 경쟁상대들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는 않는지를 중심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일단 법률전문가들간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최우선적 선결과제가 되었고 더 나아가 법률전문가와 여타 전문직간의 경쟁 또는 타국의 법률전문업종과의 경쟁을 강화하는 체제를 구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²⁵⁾ 법률서비스시장의 효율화를 경제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인프라로 전제하고 그 정비된 시장이 발산하는 강력한 후방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법률서비스시장에 대한 경쟁강화는 오늘날 가장 필수적인 것이자 동시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종래 ‘변호사윤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규제체제가 ‘법률서비스시장에 대한 규제’라는 서술로 변형되면서 그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떻게 국가 혹은 변호사단체에 의하여 왜곡되며 그 결과는 이 시장에서의 생산성이나 혹은 국제간의 자유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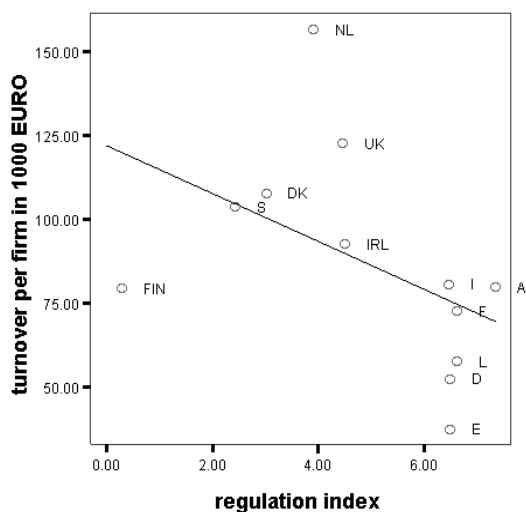
<그림 1>은 EC에서 자체 조사한 규제와 생산성의 관계를 나타낸 도표로, 이러한 논의가 하나의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²⁶⁾ 이에 의하면 법률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높을수록 당해 국가에서 법률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체의 생산성은 상당한 정도로 떨어지며 따라서 규제가 시장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규모에서 법률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영국이나 덴마크²⁷⁾ 등에

25) E. Shinnick, F. Bruinsma, and Ch. Parker, "Aspects of regulatory reform in the legal profession: Australia, Ireland and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Legal Profession*, vol.10, pp.243-44. 참조.

26) Iain Paterson, et.als., *op.cit.*, p.119에서 전재함.

27) H. B. Olesen and C. K. Nielsen, *The Legal Profession: Competition and liberalisation*, Copenhagen Economics, January 2006 참조. 또한 아일랜드의 경우 The Competition Authority, *Study of Competition in Legal Profession: Preliminary Report*, 2004.2.24

서 법률서비스에 관한 체제를 변경하거나 각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사작업에 착수하



〈그림 1〉 EU: 규제와 생산성의 관계

고 있음은 바로 이런 분석에 대한 반작용이다. 법률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다른 EU 혹은 미국 등의 외국의 로펌과 경쟁함으로써 국가의 부를 증진하고자 하는 전략이 부단하게 강구되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개발도상국이라 할 인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서비스산업의 세계화추세에 조용하여 자국의 법률서비스산업 자체를 하나의 개발거점으로 삼아 그 발전전략을 모색하기도 한다. 영국법을 계수하여 영국·미국등과 법체계가 유사하다는 점에 영어사

용권이라는 장점까지 더하여 법률서비스에 관한 영국·미국의 하청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²⁸⁾ 이들의 논의가 진행되는 기본적 흐름은 법률서비스시장에 대한 각종의 진입장벽, 광고제한, 보수제한, 규율체제 등 경쟁제한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에 맞추어져 있으며, 법률전문가모델에서 요구되는 공익성이나 공공성의 요청들은 경쟁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보충적·보조적인 것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유럽변호사연합회(The Council of Bars and Law Societies of Europe: CCBE)를 비롯한 법률가사회에서는 정의의 실현 및 법의 지배라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경제외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엄존하고 있다는 취지로 나름의 반대의견을 내면서 전통적인 법률전문가모델의 유효성을 강조한다.²⁹⁾ 하지만 전반적인 대세는 주로 송무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됨으로써 국가법의 전달과정에 소요되는 용역이라는 관점이 강했던 종래의 법률가모델을 떠나,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서비스의 상품화·시장화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즉, 법률서비스의 주된 수요자를 정의의 집행과 법치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법의 운용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고객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본

28) 예컨대, A. Hariani, "Globalisation and the Indian Legal Services Sector: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Government Law College Law Review*, vol.6, 2007, pp.28-53 참조. 이 점에서 필리핀도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필리핀에 영미 로펌들의 지점이나 하청업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아직 필리핀 국가차원 혹은 변호사단체차원의 개발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자료는 접하지 못하였다.

29) CCBE, *Economic Impact Of Regulation In Liberal Professions: A Critique of the IHS Report 2003.9.9; The Commission report of February 2004; The Commission progress report of September 2005*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http://www.europa.eu.int/comm/competition/antitrust/legislation/#liberal>; http://www.ccbe.org/doc/En/CCBE_response_follow_up_report_en.pdf 참조

을 투자하고 상품을 교역하는 기업등의 소비자로 포착하고 이 소비자들의 수요를 가장 효율적·경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즉 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국가법이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보조적으로 이들 시장참여자들을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율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³⁰⁾

3. 법률서비스시장의 전망

세계적인 법률서비스시장의 추이는 우리 법률서비스시장에 대하여 커다란 가능성을 제시한다. 지난 10년간 법무·회계분야의 서비스산업의 매출이 매년 20% 가까이 성장하는 추세도 법률서비스시장의 향후 전망을 밝게 할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분야의 세계시장 또한 상당한 정도의 성장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장조사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법률서비스시장은 2006년 485억달러를 기록하여 2002-2006년간 5.8%의 평균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다.(이는 유럽이나 미국시장의 성장률 6.1%, 7%에는 못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률은 2006-2008년에 급격히 가속화되었다가 2008년부터 2010까지 그 성장세가 지속되어 2006-2010년간 6.6%의 평균성장률을 기록하여 2010년에는 약 666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유럽과 미국의 시장은 각각 5.5%, 7% 성장하여 그 매출액은 2011년 1,530억달러 및 3,294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된다.³¹⁾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2003년 전세계의 법률서비스시장규모는 3,636억달러를 기록하였

30) 이런 추세는 최근 세계은행이나 UN등이 중심이 되어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법의 지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법의 도구성, 수단성을 강조하면서 법의 지배 원칙을 전세계적으로 관철시킴으로써 세계체제를 다시금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제3의 법과 사회발전(law and social development)”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D. M. Trubek and A. Santos, eds., *The New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A Critical Apprais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특히 ch.1); B. Z. Tamanaha, *Law as a Means to an End: Threat to the Rule of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이 책인 법과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으나 그 논의의 전개과정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되어 있다); K. W. Dam, *The Law-Growth Nexus: The Rule of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Press, 2006 등 참조.

31) 이상의 수치는 MarketLine, *Legal Services Global Industry Guide*, 2008, p.129에서 인용. 실제 전세계 무역에서 서비스의 교역량은 다른 상품의 교역량에 비하여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즉, 1980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동안 후자는 8배 성장하였으나 서비스교역량은 10배 확대되었으며 전체 무역량 중 서비스 교역액의 비중 또한 1980년 16.0%에서 2008년 18.8%로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다. 기획재정부, “서비스 교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 협상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8.10 참조.

년도	시장규모 (10억불)	성장률 (%)	법률전문직 수(천명)	증가율 (%)
2003	363.6	n.a	2,174	n.a
2004	384.3	6	2,222	2
2005	407.8	6	2,279	3
2006	434.3	7	2,347	3
2007	458.2	6	2,404	2

〈표 1〉 법률서비스: 세계 시장규모 2003-07

는데 이는 2007년에 4,582억달러로 상승하였다고 한다. (〈표 12〉 참조) 또한 이에 의하면 이 기간동안 법률 전문직은 217.4만명에서 240.4만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의 대부분인 62%를 미주시장(미국, 캐

나다, 멕시코,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미국의 로펌들이 54%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시장을 아시아-태평양지역(호주,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대만 및 한국)의 로펌이 11%, 유럽지역(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및 영국)의 로펌은 27%를 차지하고 있다.³²⁾

이 두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향후 몇 년간의 법률서비스시장의 전망을 연간 6-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300억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로 기존의 대형로펌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변호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시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의 세계경기불황이 해소되면서 향후 회복기에 접어드는 시기에는 법률서비스시장이 더욱 확장될 것인 만큼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나름의 시장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전망은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내시장에 있어서도 법률서비스산업이 적지 않은 성장을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통상적으로 법률서비스산업의 주된 종목들이 소송외에도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pening), M&A 등³³⁾이라고 한다면 이런 비송무분야의 성장세는 경기회복에 발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앞으로의 전망은 국내에서의 기업거래, 재무거래를 중심으로 한 비송무분야 시장의 성장과 국제적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역외교역량의 확장 및 역외투자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의 법률서비스산업의 규모는 계속하여 확장되어 갈 것이다.³⁴⁾

32)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Recent Trends in Services Trade, 2009 Annual Report, Investigation No. 332-345, pp. 6-2, 6-3, 6-4. 이 보고서는 경제가 활황일수록 로펌의 매출이 증가한다고 보고하면서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를 낮출 것을 권하고 있다. p.6-6.

33) 위의 보고서는 호주의 예를 들면서 호주 법률서비스산업의 규모중 34%가 기업법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M&A나 기업 공개를 비롯한 상업거래, 은행거래 및 재무거래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나머지 22%는 재산거래에서 파생된다고 한다.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op.cit., p. 6-4, footnote 22, 참조.

34) 미국의 한 조사기관이 422개 기업(미국 311개, 영국 45개, 기타 66개)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6년 현재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소송이 50건 이상인 기업이 23%로 2005년의 11%에 비해 급증하는 등 소송에 연루되는 비율이 2005년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다. 또한 사안별로는 노동/고용(2006년 48%, 2005년 26%), 계약(40%, 23%), 규

뿐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송무 역시 그 성장률이 적지 않다. 2005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의 소송 리스크 전망에 관한 실태보고서³⁵⁾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이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피고가 된 수는 2000년 15건에서 2004년 32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주주대표소송등에 대비하여 임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액수가 2000년 309억원에서 2003년 840억원으로 172%가 증가하였다 한다. 앞서 재벌기업들이 법무실을 강화하는 양상을 서술하였지만 그 추세가 2004년을 전후하여 본격화되었다는 사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가능하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 30대 기업에 채용되어 있는 변호사는 160명이지만 그들의 해외지사 등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변호사는 그 배에 가까운 281명이라는 사실은 이런 점을 재확인한다.³⁶⁾ 우선 국내에서도 사내변호사의 도움을 인지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지사의 경우와 같이 시장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책임추궁가능성이 보다 강화될수록 국내에서도 변호사들을 더 많이 고용할 의지와 여력을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 기업도 다른 경제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법률서비스시장의 수요자 또는 법무실을 중심으로 한 법률가인력의 수요자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송무서비스 시장의 크기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이나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심지어 프랑스까지 법률서비스시장이 그 나라의 경제규모(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면 2%정도까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음은 우리도 참조할 만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업의 매출액은 2006년 0.16%에 불과하였다가 2007년 급격히 상승하여 0.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또한 이들 국가에 상응하는 규모의 법률서비스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³⁷⁾ 그리고 이 확

제(26%, 6%), IP/지재권(24%, 13%), 집단소송(24%, 9%) 등의 순이며, 법률비용으로 미국기업들의 경우 평균 16.8백만 달러를, 그리고 그 외 지역의 기업은 9.4백만달러를 각각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Fulbrights & Jaworski L.L.P., *Third Annual Litigation Trends Survey Findings, 2006* 참조.

35)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부문 소송 리스크 전망과 정책 과제”, 2005.

36) 김도현, 전계논문, <표 7>.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기업이 아닌 일반 사회단체로 진출한 인원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42명이며 노동단체로 진출한 경우가 가장 많다. <표 8> 참조

37) 참고로 런던시의 한 보고서에서는 국제서비스시장에서 로펌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ity Business Series: Legal Services*, London, 2007, p.6 참조.

-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 합작투자(Joint ventures), M&A, 증권발행(equity issues), 기업재편(corporate reorganisations), 경영권인수(management buyouts), 기타 상법관련;
- 기타 기업-상사법분야: 항공(Aviation), 해상운송(shipping), 상품, 경쟁, IT 및 디지털 미디어, 텔레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 은행/project finance: 대부조건(bank lending), 채무관리(debt rescheduling), project finance, 공사합작(public private partnerships), 증권화(securitisation), 항공기·선박 파이낸스;

장은 전술한 바와 같은 변호사 수의 증가가 법률서비스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훼손하거나 방해할 정도에 이르게끔 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성장여력을 갖추고 있다. 오히려 변호사 수의 확대를 통해 이런 법률서비스시장의 확대 및 그에 바탕을 둔 서비스교역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망: GDP 1%의 법률서비스시장(?)

우리나라의 경우, 마치 1997년 관치금융의 틀 속에 안주하던 우리 경제가 외환 및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스스로 그 모순을 드러내며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던 사실은 관치의 법조관료체제에 안주하는 우리 법률가체계 혹은 법률서비스체계 또한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앞둔 이 시점에서 주요한 참조가 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산업화정책이 금융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틀 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지배체제는 마찬가지로 법을 통치 및 행정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틀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국가의 지배하에 있던 금융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하여 대출을 일으키고 대기업은 금리와 물가의 차이에 안주하면서 과다차입과 그에 이은 과잉투자로 산업화의 전략을 수행해 나갔다고 한다면,³⁸⁾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배하에 있던 법과 사법, 특히 법률가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 혹은 관료주의적 행정이 필요로 하는 형식적 법치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그 댓가로서 고급관료에 상당하는 ‘특권’과 법률서비스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80년대부터 시작된 민주화의 과정에서 서조차 제대로 교정하지 못 하였다. 금융과 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1997년의 소위 IMF의 위기를 거쳐서야 비로소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혁신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 국제 자본 시장: 증권발행(equity issues), 모금(money raising),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sation), 민영화(privatisation), 파생상품(derivative products), eurobonds;
- 세무: 법인세(및 personal tax planning where there is no private client department), 인세, 부가가치세;
- 분쟁해결: 중재, ADR, 소송;
- 보험 및 재보험: 보험금청구 및 재보험에 대한 자문, 소송 및 중재 수행;
- 재산권: 상업재산의 판매·임대, 금융조달, 재산개발, 환경법, 도시·지역계획;
- 지적재산권: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 고용/연금: M&A와 고용, 연금체계의 개발 및 관리, 고용계약, 이주자문
- 국제공법: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재판소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개인 고객: 가족법, 유언검인 및 집행, 조세계획, 신탁;
- 세계은행 / EBRD projects: 세계은행 및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프로젝트 수행

38) 강인수 외, 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2005, 22면. 이재민, “한국의 산업화와 산업화정책,” 안병직 편, 한국경제성장사: 예비적 고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516면도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변호사의 역할정향을 정립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그 실체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갈등과 대립의 연속으로만 점철되었을 뿐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체제는 그나마 어렵게 이루어진 하나의 돌파구였다. 그러나 그 또한 시민사회나 법률서비스시장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아니라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대상으로 전락하면서 향후의 전망을 암울하게 한다. 입학총정원의 규제라는 전대미문의 통제체제에다 여전히 관료적 엘리트주의를 탈피하지 못한 변호사시험제도,³⁹⁾ 거기에 한정된 숫자의 법학전문대학원이 향후 구축할 집단이기주의까지 복합된다면 국가-변호사(단체)-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3각의 조합주의가 새로운 권력으로 균립하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외국의 로펌은 이들과 함께 시장을 분점하면서 우리의 법주권을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⁴⁰⁾

이런 상황에서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언급하는 것⁴¹⁾은 시기상조이기도 하다. 세계 법률서비스시장을 영미의 로펌이 장악하고 세계 100대 로펌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미법계가 지배하면서 대륙법계의 전통을 가지는 로펌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이 하위권을 겨우 지키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⁴²⁾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통상법 자체가 영미의 전통에 입각한 것인데다가 언어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체계가 인도나 필리핀 정도만큼의 경쟁력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하지만, 법률서비스시장의 확장가능성은 이런 현재의 모습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당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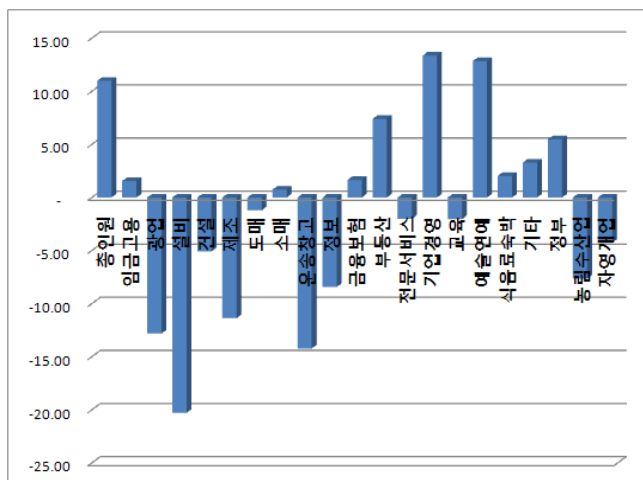
39) 이 또한 제도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종래 사법연수원 입소생의 선발시험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 했던 사법시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시험체제로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평가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 못 된 것인데 더 나아가 과중한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수행 자체를 수험대비용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0) 예컨대 지금까지는 IMF사태에서 보듯 외국의 자본이 직접 우리 정부를 압박하여 새로운 형태의 법을 제 개정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의 로펌이 우리 법률서비스시장의 한 영역을 지배하면서 국내·국제적인 소송이나 입법자문, 로비 등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알지 못하는 통로로써 우리의 입법·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마치 MS사의 원도체제가 그들의 ‘영업활동’의 결과 우리 전자정부의 표준code(Lessig이 지적하듯, 일종의 규범으로서 정립된 기술표준을 의미함)되어 다른 모든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을 배척하듯, 나아가 그것이 우리 전자정부의 정황까지 구속하듯, 국내에 진출한 외국의 로펌이 현재 국내로펌처럼 전직 총리, 장관, 대법관 등 사회적·정치적·법적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을 고용하면서 총체적인 ‘영업활동’에 나설 경우 그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게 된다. 일례로 2004년 이래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출신의 퇴직공무원 6명을 고문으로 위촉한 김&장이 모두 67건의 공정위 관련 사건을 수임했으며, 여타의 대형로펌 역시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이 점에서 참조할 만 하다. 경향신문, “공정위 퇴직간부 60% 로펌행,” 2009. 10. 8. 외국 로펌이 들어올 경우 이런 회전문(revolving doors)현상이 그들에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41) 신도철, 전계논문, 4면

42) 2007년 매출액 기준, 오스트리아의 Mallesons Stephen Jaques(78위), 프랑스의 Fidal(85위), 네덜란드의 Loyens & Loeff(91위), 스페인의 Garrigues(99위) 등이 그것이다. Wikipedia, List of 100 largest law firms globally,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100_largest_law_firms_globally 참조. 우리나라의 김&장의 경우에 80위권에 속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왜 이 통계에 산입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성을 제공한다. 중국의 법화(legalization) 속도에 더불어 프랑스법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림 2〉 미국의 변호사고용변화전망(2006-2016년)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법률서비스시장, 우리 법제의 영향이 적지 않은 몽골 등 동아시아 권역에서만도 수없이 많은 법률서비스시장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도 이미 호주의 로펌⁴³⁾을 비롯하여 영미로펌의 홍콩·동경지점들이 진출하여 나름의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고한 법치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결과 새로운 법률서비스수요들이 잠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법률서비스시장을 개척⁴⁴⁾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된다.

실제 〈그림 2〉가 나타내고 있는 바도 이를 잘 준다. 이 그림은 미국노동성이 2006년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미국변호사들의 고용전망을 예측한 결과⁴⁵⁾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지금까지 변호사들이 사내변호사로 진출함에 있어 각광을 받았던 설비(utilities: -20.3%)나 광업(-12.8%), 운송·창고(-14.2%), 정보(-8.4), 제조(-11.4%) 등의 분야에서 변호사고용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인 반면, 기업경영(13.4%), 예술연예(12.8%), 정부부문(5.5%), 부동산(7.4%) 등에서 변호사의 고용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단독개업이 중심인 자영업이나 로펌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변호사의 진출분야인 전문서비스업종은 약간 줄어들 것이지만 그 폭은 그리 크지 않다. 이 양자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변호사고용시장은 크게 변함이 없되, 나머지부분에서의 진출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의 국면에서 스스로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확보

43) 예컨대 싱가포르의 경우 2007년 4월 호주의 Allens Arthur Robinson과 싱가포르의 TSMP이 합병하여 50명의 변호사로 구성되는 로펌을 만들어 은행·금융, 기금운용, 자원개발, 프로젝트 및 에너지, 국제·지역 중재, 자본시장 등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International Legal Services Advisory Council, *Fifth Triennial Report, 2004-2007*, Attorney-General Department, 2008, p.8 참조. 이 보고서에는 호주의 법률서비스교역량 및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법률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이 잘 정리, 보고되고 있다.

44) 여기서 “개척”이라는 말을 쓴 것은 현재의 수준에서 잠복해 있는 법률서비스수요를 동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는 부재하지만 법의 지배에 입각한 사회구조로 발전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법률서비스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즉, 장래의 법률서비스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지금부터 법제의 이전 등 다양한 토대구축을 위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5) National Employment Matrix, employment by industry, occupation, and percent distribution, 2006 and projected 2016.

함으로써 우리의 법률서비스시장의 안정과 함께 그 산업의 (국제적)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인식과 노력이다. 실제 동아시아라는 막연한 지리개념을 떠올리기 이전에 우리나라 내부에 잠재하고 있는 법률서비스시장의 성장전망조차도 “변호사 1만명 시대”는 곧 “무한경쟁”의 시대이며 “변호사 업계의 불황”으로 이어지는 전조⁴⁶⁾로 이해하고 있는 편협한 사고로는 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그런 부정적 징조에 대한 처방이 오로지 “변호사의 전문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더더욱 그러하다. 현재와 같은 독점적 구조가 지속되는 한 “변호사의 전문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시장—특히 유효수요의 창출이라는 점에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법률서비스시장이라도 나름의 정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뿐이다. 종래 관료법조의 전통 속에서 대중과 유리되었던 법률서비스시장을 보다 확장된 공급체계를 통해 보다 긴밀하게 대중 속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법률서비스가 하나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긴요한 일이기 때문이다.⁴⁷⁾ 그들이 무변촌의 거주민이든 아니면 대기업의 법무팀과 상대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이든 혹은 불법과업의 의심을 떨치지 못 한 채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노조나 공익입법활동을 추구하는 NGO이든 이들이 그동안 강요당하여야 했던 법률서비스시장의 장벽을 해소하고 그들의 매일의 일상생활이나 일상업무로서 법률자문을 구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법률서비스‘시장’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서비스의 산업화는 그 다음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법제가 세계시장과 차이가 있고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단점은 우리 법률서비스시장이 대외적으로 진출하는 데 약간의 비용을 추가시킬 뿐 그 자체가 넘지 못할 장벽이 되지는 못 한다. 세계의 법률서비스시장은 그 자체 다양한 법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정보화·세계화의 국면은 이런 단점 정도는 얼마든지 뛰어 넘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도와 필리핀의 법률사무 하청기업들은 우리 로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한계를 수월하게 넘을 수 있는 폭넓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누적되고 있는 법정보들은 제대로 된 지식관리체계의 도움으로 언제든지 훌륭한 자원의 노릇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미 영미의 대형로펌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률서비스시장을 어떻게 분점하며 또는 그 시장의 틈새를 어떻게 창출하고 또 확보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이 부분의 해답 역시 현재와 같은 작은 규

46) 조선일보, “월(月)200만원 못버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2009. 5.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11/2009051100030.html

47) 이 점과 관련항 전술한 무변촌의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다

모의 변호사체계로는 찾아질 수가 없다. 최선두에 있는 기업이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전문직서비스시장 특히 법률서비스시장에서는 대형화가 제1차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법률서비스상품의 질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법률서비스상품의 다양성과 다층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 전문서비스와의 연계성 및 이를 위한 one stop shopping의 가능성까지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⁴⁸⁾

그래서 이 글에서는 변호사자격에 대한 현재의 진입장벽은 과감하게 철폐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정원통제나 수험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기고 있는 변호사시험제도는 그 자체 법률서비스시장의 정상화라든가 혹은 흔히 말하는 변호사의 질을 확보한다는 목표 등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변호사 인원을 제한하고 법률서비스시장을 통제하는 역할만 주어져 있을 뿐이다.

물론 변호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 또는 변호사단체의 역할은 분명 필요하며 또 실효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법률서비스의 공급량까지도 절대적으로 결정하며 그로 인해 다시 수요 자체의 축소까지 야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들의 개입은 변호사양성과정의 통제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이나 그 과정에 대한 국가적·직업단체적 지원·조성·유도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⁴⁹⁾ 혹은 엄정하고도 철저한 사후규제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뿐 아니라 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드높임으로써 법치의 실현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거듭 말하거니와 2009년 현재의 우리 법치의 국면은 커다란 전환기에 빠져 있다. 2003년부터 지속되었던 사법개혁의 과제들이 올해에 와서 새로이 시작되거나 시험적인 작동을 해 나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체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고 전방향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제도이다. 법무부나 변호사단체 등에서는 총입학정원제나 변호사시험법과 같은 형태로 변호사의 수만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 일단은 안심이라는 식의 사고에 함몰되어 있을지 모르나, 설령 그 시도가 주효하다 하더라도 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체제가 우리 법체계에 던지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문제는 이런 충격의 방향이다: 산업화

48) 예컨대 영국에서 LDP와 ABS가 본격화될 예정인 2013년이면 우리나라와 EU간의 FTA가 발효되어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방될 수도 있는 시점과 겹친다. 문제는 이때 우리 법률서비스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영국의 로펌들은 회계사등과 결합하여 법률사무와 회계사무를 연계하거나 혹은 법률사무·회계사무·재정·금융사무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우리 기업들에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우리 로펌들은 오로지 법률사무만으로 이들과 경쟁하여야 하는 열악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영국이 법률서비스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내 걸고 변호사업무에 관한 법을 제정하면서 LDP와 ABS를 인정한 이유가 아직까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로펌에 대한 경쟁력확보라는 점에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49) 이 점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무변촌 해소를 위한 노력들은, 같은 현상을 두고 아무 문제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우리 변호사단체가 본받을 만하다. 자세한 것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계 이슈 리포트 참조.

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우리 사회의 자부심이 이제 민주적 법치의 실현 및 이에 기반하는 선진화의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 남미의 제국들이 그러했듯이 사회적 기득계층의 이기주의를 넘지 못 하고 새로운 퇴행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 혹은 지난 날의 IMF위기와 마찬가지로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 앞에서 우리의 법주권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것인지. 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아직은 그 결과의 선택이 우리의 손에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 성립단계에서부터 총입학정원제로 인하여 이미 파행적으로 되어버렸다가 다시 변호사시험법에 의하여 악화일로에 빠져버린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하루바삐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이 그 방안이다. 총입학정원제는 해체하고 합리적인 인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은 국가가 아니라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도하에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실질적인 자격시험제도로 변환하는 것, 그래서 우리 법률서비스시장에서의 공급량을 최단기에 최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 요컨대, 변호사 수의 조속한 증가는 지금의 현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최우선적인 명령인 것이다.

토론문

- 강대섭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변호사 직역 확대 방안과 대응

1. 변호사 직역 확대의 필요성

- 발제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종전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하여 배출되는 변호사와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과 변호사시험을 통하여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가 당분간 크게 증가될 것임. 이에 비해 신규로 시장에 진출하는 변호사들을 흡수할 수 있는 법률직문직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전통적으로 변호사들이 주로 진출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시장에서는 변호사 1인당 소송사건 수입건 수가 격감하고 있음
- 변호사 수의 증가에 따른 소송사건 수입료의 인하는 있었다고 보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의 전문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취지에 맞게, 다양한 교육적 배경을 가진 대학생을 선발하여 종합적인 법률지식, 법률전문가로서의 기술, 자유·평등·정의와 인간의 존엄 등 헌법적 가치관을 구비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이들이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적법절차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장기간에 걸쳐 변호사가 관여하는 영역의 비변호사 진입장벽을 높이는데 안주한 결과, 변호사 송무시장 밖에서는 법률가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 비변호사의 관여 역할을 넓혀옴으로써 신규로 시장에 진출하는 변호사들의 진출 직역을 확대하는데 대한 반대가 강함
- 교육을 통하여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법학교육제도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제대로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양성된 전문법조인이 그 역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함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법률가 시장으로 진출하는 졸업생 상당수가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그 사회적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함

II. 직역의 요청과 직역확대 방안

1) 발제문 분석

- 발제자들의 발표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최근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취업현황에서 보면, 판사 검사로 임용되거나 법무법인, 고용, 개업 이외에 변호사가 진출하는 영역으로서 공공기관과 기업으로의 취업인원이 늘고 있고, 변호사가 단기간의 취업 후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법무법인, 고용, 개업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법률전문성이 세분화되고 조직화되고,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이 요구하는 변호사의 기본적 자질·능력이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이들 수요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

2) 직역의 요청과 기대

- 신규 변호사 채용시 취업희망자에 대해 전문적 법률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는 외에, 사명감과 열정, 외국어능력, 조직이해도와 적응력, 장기근무 가능성을 요구함. 특히 단기간 취업경력 축적 후 이직에 대한 우려, 조직내 갈등유발, 낮은 보수에 대한 열의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3) 직역확대 방안

- 법률전문가가 법조 이외의 분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사무소의 업무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조직역 이외에 국가 공공기관의 행정 경제분야, 기업측의 국제통상 분야 등을 새로운 직역으로 개척하여야 함
- 그 방법으로서 먼저 사법연수원생의 취업시기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취업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경제·행정 분야에서 비법조전문가에 의하여 자체 충족되던 법적 수요에 신규 변호사에게 장기근무와 종합적 업무처리(학문적 다양성으로 가능하다고 봄)를 조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부분적으로 대체하여야 함. 이를 위해 채용조건과 고용조건을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음. 법률전문가의 채용시장에 관한 정보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이 직역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외에 졸업생들도 직역으로 진출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함. 직역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변호사 채용예상 직역에서도 조직내의 법률업무 외에 내부통제나 법적 위험관리 등의 분야에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함. 법정변론에 국한된 변호사업무와 재학 중 변호사시험 합격에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장래의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함으로써 채용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변호사 다수 배출에 따른 질적 수준 및 전문성 저하는 문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직역에서는 법정변호사 수준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다른 수준의 능력이나 채용조건, 또는 조직적응력을 요구하는데 대비할 필요가 있음. 사회 또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문법조인의 역할로서 특별한 자질이나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인재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변호사의 업무를 법률 이외의 업무분야와 융합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법정변호사와 업무변호사와 같이 변호사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함

Ⅲ. 법학전문대학원의 대응

- 직역확대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취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육을 통한 전문법조인 양성이란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 및 변호사합격율의 하락에 따라 예상되는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법학교육시스템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하도록 전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설립취지에 따른 다양한 학문적 배경 하에 인격과 품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되지 않고, 오로지 변호사시험에 몰입하여 법률지식만을 축적하고 다른 전문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는 상태에서는 법률전문직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직역확대에 따라 불이익을 입게 되는 직역관계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을 법학전문대학원이 나서서 담당할 필요가 있고, 이들 의견을 집약하여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여야 함

-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이 특화된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전문변호사를 배출하고, (형식적인) 전문변호사 자격을 요하지 않는 기관이나 기업에 졸업 전에도 취업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함

토론문

- **신현식**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I. 서론

신규변호사의 직역확대와 관련하여 주제발표자들의 발표를 보면 전사회적으로 각 부문에서 직역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즉, 입법부(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기획조정실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등), 행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각 정부부처별 특채 포함), 사법부(법원, 검찰, 헌법재판소의 각 연구원 등), 개별기업체(준법감시인, in-house counsel 등),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국제기구 등 모든 직역에서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가 필요하게 된 근본 이유는, 법률시장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 때문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에 비하여 법률서비스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의 개선은 법률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결론에 기초하여 기존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대체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증대시켜 새로운 변호사를 양산하고자 하는 데 기인한 것이다. 변호사의 수를 늘림으로써 법률서비스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견해는 균질한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시장경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명쾌한 결론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도급적 성격이 강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는 공급되는 용역 사이에 차별적인 시장이 존재하고, 법률소비자가 가격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서비스에 있어서의 담당변호사의 경력이나 평판 등 쉽게 계량화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시장이 형성된다는 점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II. 법조인양성시스템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

이용구 교수님의 발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변호사의 양산을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증원하는 것(물론 일본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증원을 위해 다년간의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 내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가 종결되었고,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한 각 지방변호사회가 이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밥그릇지키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미시적인 조

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변호사시험제도로 전환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가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도록 하고,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도록 한 것은 거시적으로 법조인양성시스템에 있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 것이다.

이용구 교수님의 발제에서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에는 신규 변호사를 ‘개업변호사’의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즉, 신규 변호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므로써 자연스럽게 ‘개업변호사’의 양산으로 이어지는 유형(일본형)이 있을 수 있고, 미국과 같이 법무법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나머지를 일부는 기업을 위주로 한 민간부문에서 흡수하고, 나머지는 로클릭 등 공공부문에서 흡수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유형(미국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규 법조인력 활용을 위한 일본형과 미국형의 두 가지 접근방식은 이론적으로 분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법조인양성시스템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일본형의 방식은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민적인 이해와 공감대의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법조인력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법조시장의 붕괴에 그치지 아니하고, 전국민이 고학력, 고등교육을 받은 법조인의 실직에 따른 인력사장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부담에 있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의 재판연구관, 검찰연구관의 확대

먼저 법조일원화를 통한 법관임용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즉, 윤남근 교수님의 발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2023년부터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가진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것은 기존의 법조경력자를 ‘존경 받는 법관에 의한 정의로운 재판’을 받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기존 법조경력자들이 법원으로 진출함으로써 기존 포화상태에 있는 변호사 시장에 있어 조금이나마 인력운용상 여유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로스쿨 졸업생들을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우수한 로스쿨 인력의 입도

선매식 채용으로서 기존 ‘성적지상주의에 따른 서열화’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 로스쿨 졸업생들이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어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법조일원화의 큰 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제도적 고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한다면 검찰의 경우 검찰연구관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등 전통적인 법조영역에서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한 고용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

2. 법조인접지역 통폐합

윤남근 교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법조인접지역 통폐합 방안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1971년 ‘특정 법조전문직과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대소사와 상사법원 변호사를 변호사로 통합시킨 것과 1990년에 법률상담사의 통합을 통해 일정 요건 하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일한 형태의 법조인접지역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폐합은 변호사 수의 추가적인 증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소송 수행 과정에서 특정분야에 관하여 전문가증인(expert witness)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가 법조인력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계점을 시사하는지에 대해 보충적인 설명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3. 입법부와 행정부에서의 고용확대

먼저 입법부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기획조정실이나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입안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업무에 있어 법률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무부 등 전문인력 직렬의 신설, 전국 229개 시군구 및 16개 광역자치단체 법률담당관제 도입, 전국 244개 경찰서 및 16개 지방경찰청 법률담당관제 도입은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변호사자격 있는 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이와 관련한 논의 중 빠지지 않는 것은 이를 위한 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

여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나 합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조인양성시스템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면 기존 법률가들이 형성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와 동일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원화되고 구별되는 시장을 전제로 법무법인이나 개별변호사로서 고유한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와 차별화된 보수수준이 책정되더라도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개척하여야 하는 변호사들의 입장에서 이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신규변호사의 초임 연봉(로펌과 공공부문)에 관한 이용구 교수님의 발제에서 보여지듯, 법률서비스의 제공 및 그 대가와 관련하여 차별화된 시장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교법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법무법인 등에서 고용의 확대와 고용조건

법무법인의 경우 지난 10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추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법률시장의 개방을 통해 업무환경이 더욱 치열해지고 경쟁적으로 되는 상황 하에서 만연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고용확대만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기존 사법시험출신 변호사를 채용하는 경우에 비추어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를 채용하는 경우 변호사로서 동질성을 전제로 하여 동일한 근무조건 내지 급여수준을 보장해 주는 형식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신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현재의 시장상황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기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보다 처음 변호사로서 출발하는 단계에서 급여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되, 훨씬 더 많은 수의 신규변호사를 채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신입변호사들에게 업무기회를 부여하고, 자연스러운 업무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변호사시장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해당 법무법인의 존망을 좌우한다고 봐도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신입변호사 리쿠르팅과 입사 후 업무성과를 비교해 볼 때 당연히 인정할 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된 변호사법 하에서 법률사무종사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라는 이원화된 구조로 변호사등록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기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서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은 낮더라도 훨씬 많은 신입변호사들을 채용하여 업무수련과 법률사무종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변경된 법조인양성을 위한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미국의 법률시장의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최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최고의 실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로펌에 취업한 후 다양한 진로를 개척하는 것을 당연하게 선망하는 career path로 삼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명문 로펌에 입사하기를 희망하지만 모든 변호사에게 동일한 기회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명문 로펌에 입사한, 그나마 동급생들의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 신입변호사의 경우에도 해당 로펌의 파트너변호사가 될 것으로 모두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입사 후 3년 이내에 신입변호사의 30%정도가 다른 중소형 로펌에 취직하거나 개인변호사 개업, 또는 다른 직역(예를 들면, 증권위원회나 기업의 사내변호사, 대학교수, 행정부 공무원 등)으로 이직하고, 또 3년 이내에 다시 30% 정도의 신입변호사가 새로운 경력을 찾아 이직하는 것이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로펌에서 훈련 받은 성실한 업무태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 법률시장의 수요에 맞게 진화하고 적응해 가기 위해 해당 로펌을 거쳐가는 과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로펌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와 같이 변경된 법조인양성시스템의 패러다임 하에서 자연스럽게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쟁구조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불평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용구 교수님의 발제에서 보여지듯이, 실제 미국의 로스쿨 졸업생 취업률이 법조지역의 경우 192개 로스쿨 전체 졸업생의 71.6%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취업률은 경쟁적인 변호사시장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발전시켜 온 그간의 사회적 변화와 노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결국 가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은 기존의 전통적인 법조지역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5. 기업의 고용변호사 수의 확대(준법지원인 및 사내변호사의 활성화)

이용구 교수님의 발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고용변호사 수는 2012년 4월에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따라 도입되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범위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변호사는 준법지원인의 지원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자체의 고용이 증가할 수 있고, 준법감시인의 고용으로 인해 순차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입은 단기적으로는 법조인력의 활용방안으로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수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유

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시행 이외에 기업에 취업하는 사내변호사의 비율은 앞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최근 기업들이 경쟁업체와의 담합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벌과금을 부과받는 등 정부의 기업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강화에 따라 외부 변호사에 대한 업무의뢰 증가와 더불어 사내변호사 활동의 확대개편이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아니하다.

이용구 교수님이 발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연수원 수료자 취업현황(31기~40기)”에 의하면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700명을 넘어서는 이후부터 신규변호사의 기업내 사내변호사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내변호사로 취업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많아지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비용이 예전에 비해 더 낮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삼성, LG, 한화, 롯데 등 대규모 기업이 각 계열사를 포함하여 법조전문인력의 확충에 적극 나서는 것도 고무할만한 현상이다. 즉, 현재 기업내 변호사의 거의 대부분은 명칭은 다양하더라도 ‘법무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법무라는 한정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내에서 수행할 업무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 관련 교육과정을 통해 체득한 문제해결 능력이 비법률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유효한 것으로 드러나고,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기존 신입사원보다 높은 대우를 제공하면서까지 변호사 자격보유자를 채용할만한 유인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많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기업들의 인수합병, 카르텔 등 담합 관련 소송, IP등 지적재산권 분쟁 등 예전보다 훨씬 많은 법률수요나 법률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는 현상에 비례하여 신입변호사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무경험이 있는 기존 경력직 변호사들을 채용함으로써 사내변호사들이 직접 해당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외국의 우수한 기업들의 경우 하나의 대기업이 채용하는 사내변호사의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어떤 때는 너무 과도한 비용을 들여 준법경영 내지 준법감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점

점 더 국제화되고 있는 기업업무의 현실에서 볼 때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준법지원 또는 법무팀의 확충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경영을 뒷받침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법조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 문화적인 인식과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법조인양성시스템의 변화를 계기로 점진적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분쟁예방 내지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궤를 같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문화의 일면인 것이다.

III. 결론

이상의 논의과정에서 살펴 보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증가된 신입변호사의 공급에 부합하는 법률시장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제도적 고안이 병렬적이고 복합적으로 순기능으로 작용할 때 점진적인 법률수요창출을 통해 최초 법조인양성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 기대했던 법률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 내지 법률문화의 발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민과 논의를 단순히 법조인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전국민적 고민과 비용부담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법조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법조인양성시스템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할 또다른 사회적 비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적격성을 갖춘 법률가의 양산과 이에 걸맞는 국민적 법률수요의 충족이라는 가치지향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토론문

- 이복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

‘로스쿨 졸업생의 직역확대와 제도개선 방안’

1. 서론

내년 최초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는 시점을 앞두고 시의적절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해 주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발표해주신 윤남근 교수님, 이용구 판사님의 주제 발표문은, 다양한 외국사례와 풍부한 통계에 기초하여 현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무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저렴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잉여인력으로 남지 않고 사회 각 영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우리의 논의가 비법조계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기득권에 안주하여 처우와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아직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효과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시점에서 큰 틀의 제도변화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 등에 대한 인식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이해득실이 있을 것인지 실증적으로 따져 보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의에서 우선 생각해보아야 할 몇 가지 쟁점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법조계를 둘러싼 현재 상황

가.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배출제도에 대한 비법조계 시각

일반적으로 사법시험이라는 진입장벽 하에 독점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던 법조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소수 법조인에 의해 독점되어 고비용 구조가 유지됨에 따라 법률서비스가 일반 국민에게까지 미치지 못하였고,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믿음이 비법조인 사이에는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현상 하에서 의뢰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

야의 지식이 필요한데 법대·사법고시·사법연수원으로 이어지는 일원적 법조인 양성과정을 거쳐서는 그러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합격인원 증가 직후 실무수습기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다수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연수를 받았으나 몇 년 후에는 시장이 확대되고 대형 회계법인 취업이 늘어 회계사회 연수가 폐지되게 된 공인회계사의 예를 들며, 초기에는 다소의 혼란을 초래하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해결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나. 법률시장 상황

로스쿨 제도를 통한 신규 법조인 대량 배출 이외에도 현재 법률시장에는 큰 변화를 초래할 여러 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 법률선진국이라고 인식되는 국가와의 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 로펌, 변호사의 국내시장 진출이 가시거리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IMF 이후 구조조정, IT업계 창업 흐름, 세계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약진 등을 배경으로 성장을 거듭하였던 기업 법무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대형로펌의 활로 모색이 어려운 점도 눈여겨볼 배경 중 하나입니다.

민간기업에서는 법무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기존 법조인의 틀에서 벗어나 법률적 소양을 갖춘 채 영업·조직·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로스쿨 배출인력 활용을 위한 기존 노력

가. 로스쿨 배출인력 활용을 위한 변호사업계의 노력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로스쿨에서의 인력배출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제, 로클릭 제도, 준법지원인 제도, 행정·외무고시 폐지, 입법·행정부 변호사 고용 확대, 중소기업청 법률지원단 확대,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국제기구 진출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법률담당관제, 변호사 공익활동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신규 법조인력 활용 방안의 차원에서 연구, 검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검토된 제도의 다수는 법령 개정, 정부 조직 개편 또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결국 정부 측에 그 채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귀결되곤 하였습니다.

나. 로스쿨 배출인력 활용을 위한 정부 내 노력

정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총리실, 법무부를 중심으로 로스쿨 배출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진행되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정부 내 논의상황을 외부로 공표하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변호사업계, 로스쿨 및 학계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주요제도가 검토되었거나 검토 중이라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산편성 및 조직개편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양 부처에서는 변호사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는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지나친 팽창에 대한 우려가 크고, 유럽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듯이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선택 하에 고액의 수업료를 지불한 고학력의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 순위로 삼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법조인력 활용 차원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다.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한 분석

지금까지 도입 필요성이 주장되어온 제도 중 현재 채택된 것으로는 로클릭 제도, 준법지원인 제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익 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온 속칭 ‘법률홈닥터’(복지관 등을 거점으로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소외계층에 직접 찾아가 자문을 해주는 서비스) 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아 추가 예산이 편성되어 내년부터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 제도들의 도입과정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신규 법조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제도 도입 자체가 일자리 창출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추진된 로클릭 제도,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측면에서 검토된 법률홈닥터 모두 그러합니다.

4. 신규 법조인의 실무수행 능력에 관한 논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고시낭인보다 더 심각한 로스쿨 낭인을 방지할 수 있다는 요구가 큰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미 3년의 로스쿨 과정을 성실히 마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6개월의 실무수습을 요구하는 것은 로스쿨 3.5학년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사법시험을 거치고 사법연수원 2년 동안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수련을 받은 사법연수원생과 달리 아직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의 업무수행 능력에 관한 논쟁은 결국 실증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향후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달린 것으로 지금 현상황에서 논쟁을 통해 결론이 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변호사법의 개정을 통해 6개월 의무 법률사무종사 제도가 도입되고, 의뢰인의 변호사 징계 내역 접근권이 강화된 것은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의뢰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5. 결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인력 활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년도 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정기국회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처리 법안이 산적하여 지금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내에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홈닥터 등 이미 반영된 항목 이외 정부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 역시 조기 추진이 어

렵습니다. 이미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를 거쳐 현재 예결위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새로운 대규모 증액예산 편성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단기적으로는 국회 입법이나 정부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은 정책을 중심으로 로스쿨생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 진출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서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 성사된 로클릭, 준법지원인 제도 등은 모두 법조인력 활용이라는 측면보다 다른 정책적 목적에서 공감대 형성이 선행하였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영역에 변호사 자격자가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납득시키고, 초기에는 인턴 등 임시지위를 불문하고 진입을 목표로 하며, 그 후 자리를 잡아나가는 가운데 직제에의 반영 및 처우개선 등 목적을 달성하는 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과 협의 하에 필요한 예산·시설·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마련 과정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

-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로스쿨 졸업생의 직역확대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지난 20여년간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은 사법제도개혁운동, 특히 사법민주화·법조인 양성·법률서비스 문제를 사법현장·법률시장 현장 당사자인 법률소비자(국민)로서 대안을 제시했으나, 대부분은 사법정의(Legal Justice)의 우선성·전체성·중대성을 체득·절감치 못한 관계자들의 무지와 무책임한 집단이기심으로 인하여 매년 선진사법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 사법민주화를 위한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곤 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우리 법률연맹이 창립 초기부터 도입을 주창해 온 배심제와 로스쿨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이어서, 남다른 감회로 윤남근 교수와 이용구 부장판사 두 분의 발제 내용을 숙독·경청하였습니다.

미국 제도에 유례를 두고 있는 로스쿨(Law School)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법조인 양성교육 제도개선 연구'의 결과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93년 출범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부터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로 이어진 14년 만에 법안이 통과된 결실이었다고 봅니다.

로스쿨 제도의 근본취지는 다양한 학부전공을 가진 학부졸업생들이 실무중심 법학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세분화된 사회적 분야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로스쿨 준비작업 부족과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 등으로 기형적인 로스쿨제도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간다면 도입취지에 맞게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법률소비자(모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의 육성과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가능한 충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먼저 작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비단 로스쿨 졸업생이나 사법연수원 졸업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문제로 인해 로스쿨 정원을 조정하거나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줄이는 등등으로 로스쿨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양질의 고학력 인재들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세계적인 성장동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

제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많은 비관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본인은 의견이 다릅니다. 전문성있고 경쟁력을 갖춘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필요는 무궁하고, 그 미래 또한 밝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법치민주국가로 되어 갈수록 로스쿨 졸업생의 위상도 역할도 더욱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윤남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몇 말씀 드리면,**

첫째, ‘현대 법치국가에서 법조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법조인은 행정, 입법, 사회방위, 법에 관한 기획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분쟁상황 혹은 비분쟁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양식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가난, 환경오염, 노동, 도시문제 등에 대한 통계, 사회학적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는 법률가가 순수한 법률이론이나 판례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종래의 법조인 양성제도, 즉 법학부-사법고시-사법연수원으로 이어지는 법학교육 과정만으로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에 불충분하였다고 할 수 있다.”는 전제에 대해 크게 동감을 하면서, 법조인이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대 법치국가의 이념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둘째, ‘법조일원화’와 관련한 법관임용방식의 개선에 대해 ‘검사나 변호사로서 실패한 법조인이 법관직으로 오는 식이 된다면 재판작용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에 대한 처우를 변호사 수준으로 높이고 검사와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법관에 대한 처우가 다른 직역에 비해 결코 열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건처리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법관의 충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재판연구관제도나 검찰제도의 개선방안, 분쟁예방 및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에 동의합니다. 특히 일본의 160배가 된다는 남고소·고발로인하여 매년 60~70만명의 국민들이 준범죄자 신분인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개월·수년동안 고초를 받다가 무혐의·불기소처분된다는 통계가 있는데, 대부분 사기·횡령·배임 등 민사재산 다툼사건으로, 계약서·영수증 한 장 없는 구두증거만으로 법과 증거보다 주장만으로 민사·형사소송 제기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혹은 특정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다.”라고 하였는데 프랑스 사례(나폴레옹 민법전)처럼 계약의 서면주의화는 필요하며, 그 서비스 가격 등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명시적인 계약서 관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프랑스 나폴레옹민법은 1804년도에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계수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나폴레옹 민법 제1341조부터 1348조에 이르는 내용이 구두증거에 대한 디테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000프랑(한화 25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서면을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증거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년도 훨씬 지난 우리의 사법현장(검·경의 수사와 민·형사재판과정)에서는 아직도 서면중심의 법률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계약서 등 서면으로 하는 사전예방적인 법률행위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 비해 160배나 많은 남고소 고발 등 법률분쟁이 많고, 민·형사사건에 있어 무고 위증 등등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위증’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서’ ‘서면’으로 하였다면 민·형사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구두 법률행위가 아닌 서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전문성있는 법률교육을 받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서도 필요하고,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서 모두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리걸 마인드(Legal Minds)를 갖춘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많을수록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고, 법률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법조인접직역 통폐합”과 관련하여서는, 인위적이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통폐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법조인접직역(전문자격사)의 통폐합에 있어서도 로스쿨 졸업생들의 전문성 강화가 핵심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로서의 권위는 이제 전문성을 통해 확보되어야 하지, 자격증을 통해 확보되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윤남근 교수께서 변호사와 전문자격사의 공동소송대리권 부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였는데, 우리 법률소비자연맹도 논거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부정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법률소비자의 부담으로 법률전문가, 세무전문가, 특허전문가, 의료전문가 등등 이중삼중으로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제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의 ‘신규 법조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변호사수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수를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접근방식은 거시적으로 향후 10여 년 동안 이루어질 변호사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는 있어도 2012년부터 매년 배출될 신규 변호사들이나 변호사단체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는데,

현재 법률서비스시장의 문제는 폐쇄성에 있다고 봅니다. 폐쇄적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보다는 전관예우 등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이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로스쿨의 도입 원리는 전문성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고, 부족한 법조인을 늘리는 부수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해방이후의 법률서비스시장은 폐쇄적이어서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고,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위치를 가지기 보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제한적 정보를 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하다보니까 전관예우나 브로커와 같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로스쿨제도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배출되면 그만큼 법률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료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나타나듯이 고가의 법률서비스 제공자와 저가의 법률서비스 제공자가 이원화되는 경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지적하였는데,

어떤 시장이든지 이러한 경향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법률서비스 시장의 이원화는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인데, 법률서비스의 질적 차이나 외부적 요인에 대해 가격이 차별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것이며, 오히려 정보의 독점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서비스의 이중적 가격형성이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률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와 관련하여, “사후 관리·감독이 있기 이전에 발생하게 될 소비자의 피해는 변호사 개인의 징계나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사법질서의 불안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불가피하게 사전적 시장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피해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은 어떤 서비스 시장에서나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며,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우 특히 형사사법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우에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공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서 법률소비자들이 자신의 현실에 맞고 자기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조인 직역의 확대와 관련하여, 공공부분 직역 확대에 대해, 행정공무원의 임용방법 개선, 국회 입법연구관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제 개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 대리인 및 국선변호인 확대 등이 정밀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법률자문, 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 등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 등은 모두 논의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변호사직역이 지난 세월동안 가졌던 특권적인 요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데 기본적인 시각이 맞추어진다면, 법률소비자(국민)와의 충돌이 야기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법률서비스의 향상과 전문성 강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송무 업무에만 집중할 것이라면, (‘현재도 변호사 포화상태’라고 하는 법조계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지만--일본 검사는 한 달에 20-30사건, 우리나라 검사는 한달에 200-300건 처리중)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마련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는 재판연구원(로클릭, law clerk)이나 검찰 로클릭(검찰연구원) 같은 제도도 무한정적으로 로스쿨 졸업생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정부에서 로스쿨 졸업생 만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해서도 현재 도입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한 기업에서 일정한 변호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할당제의 도입(예컨대, ‘준법지원인’제도)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청년의 무고용할당제와 같은 로제타 플랜(Rosetta Plan)을 도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생각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국의 로스쿨제도를 도입했는데, 미국에서 로스쿨 졸업생들에 대한 진로문제까지 염려한다는 소식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듣지 못했습니다. 윤남근 교수의 발제문에도 미국 로스쿨의 졸업생 취업률(진학율)은 91%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다 먼저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일본 로스쿨 졸업생들의 지향점이 송무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그 교과과정도 송무분야에 집중되어 창의적이지도 전문성 담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률가이어야 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전문가는 어디서든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거 획일적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고 나오면 주는 변호사자격증으로는 다원화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현대사회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소위 ‘필리핀 사례’의 택시운전면허와 법률상으로도, 효력상으로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현대는 법조직역 뿐만 아니라 NGO 등 대부분의 직역에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친절하고 품위있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에 따라 승부가 가려진다고 하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로스쿨 졸업생은 성공을 하고, 그러한 로스쿨은 더욱 더 큰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입학정원 등 현재와 같은 국가통제적인 정원제도부터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특화된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배출해 내지 못하는 로스쿨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것이 로스쿨 도입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말 현재 취업 준비생은 약 62만 5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엄연한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취업난은 취업전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전문성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를 위한 어떤 제도적 보장책도 ‘사상누각’이라 할 것입니다.

사법시험처럼 시험 한번으로 장래가 보장되는 현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기노력과 도야를 통해 법률소비자(국민)들에게 얼마나 더 친절하고 원활한 서비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률시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윤남근 교수는 결어에서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상 법조일원화는 필연적이다. 법조인접직역의 통합도 시급하다. 남아 있는 것은 정치적 결단뿐이다.”라고 하였는데, 정치적 결단을 이끌어 내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이해당사자이며, 수혜자인 법률소비자의 선택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기대보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온 변호사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크다면 어떠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변호사들까지 기존의 법조직역과 같이 기득권을 구축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시도한다

면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은 로스쿨 변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회의적이거나 저항적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결국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법연수원제도가 과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간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일정부분 순기능을 한 면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진입불허의 폐쇄적인 법률시장을 구축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보고, 특히 법조3륵을 동시에 양성했다는 점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간의 유착비리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로스쿨이 제2의 사법연수원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Rule of Law)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선 로스쿨 교육부터 국가사회와 법률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토론문

- 금원섭 (조선일보 기자)

토론문

- 신기훈 (국방부 법무과 법무관)

토론문

- 정성윤 (법률신문 기자)

I.

내년 처음으로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얼마만큼 취업하느냐는 2009년 새로운 법조인양성 모델로서 도입한 로스쿨제도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스쿨의 성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이 자리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로스쿨 졸업생 진로와 법조인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발표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법률가로서 그리고 법조계와 국민들의 교량 역할을 하는 법률전문지의 기자로서 나름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지정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II.

1. 저는 두 분 발표 가운데 “개혁의 목표는 법치주의(rule of law)를 확립하고, 우리 법률문화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다”는 윤남근 교수님의 말씀과,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이 단순히 '신규 변호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모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용구 부장관님의 말씀이 특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을 대학원 수준의 질 높은 법률교육을 통해 여러 분야의 특화된 법조인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해 법률적 소양을 발휘하게 한다면 법치주의가 확산되고 확립되는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도 과연 저처럼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이 부장님의 발표문에 보듯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기업들은 ‘기업의 부담 증가’와 ‘규제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이 제도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도 사설을 통해 ‘변호사들의 일자리 보장’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확립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 또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선은 그동안 변호사업계가 보여 왔던 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변호사는 ‘공익’적인 측면과 ‘영리’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과 영리, 이 두 날개 중 하나라도 꺾이면 변호사의 위상은 추락하고 맙니다. 최근 변호사의 영리성이 강조되면서 변호사의 위상과 신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변호사 직역확대 방안으로 나온 법무담당관제도나 입법연구관제도, 형사피해자 대리인 제도 등을 도입해 법조인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법조계의 주장을 국민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로스쿨이 도입되면 변호사들이 대량 배출되고 이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저렴한 비용에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탈해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법조계가 변호사의 직역창출에 발맞춰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좀 더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내년 변호사들이 대량배출 되는 것을 계기로 무변촌(無辯村) 해소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변호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한국 변호사백서 2010’에 따르면,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83곳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법률상담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호사들은 넘쳐나 실업 걱정을 하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변호사의 얼굴보기가 어려운 것은 마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면역기능을 하는 혈액이 순환이 안 돼 손발이 차갑고 저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올해 2월 한국을 방문한 우츠노미야 겐지 일본변호사연합 회장은 로스쿨제도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무변촌 해소를 꼽았습니다. 일본은 전국의 각급 법원 203개소가 있는 지역 가운데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 과거 78곳이었는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된 이후 무변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변연은 ‘해바라기기금’을 운영하면서 무변촌에 정착하는 변호사를 위해 연간 3억8500만엔씩, 10년간 28~29억엔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

해지고 있습니다.

2.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다른 하나는 법조계 내부에서의 변호사 역할 확대 방안입니다. 행정부나 입법부, 기업체 등에 변호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도 역할조정을 통해 변호사의 역할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가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부활입니다.

지난 2008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범죄를 전면 확대하면서 기존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부심판결정을 하면 관할법원이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했지만, 개정 형소법은 객관의무가 있는 검사에게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확대된 2008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건수는 1만 1248건으로 2007년 676건에 비해 15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은 2008년 121건, 2009년 122건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사건에 대한 무죄율은 2008년 34.2%, 2009년 48.8%로 일반 재판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무죄율이 높아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검사가 일부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는 등 소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8년 선고사건 120건 가운데 검사가 ‘무죄 또는 적의처리 등’을 구형한 사건은 38.3%인 46건이었고, 2009년 선고사건 84건 가운데 ‘무죄 또는 적의처리 등’의 구형사건은 60.7%인 51건이나 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0년 9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58.3%(56명)가 ‘검사의 공소유지가 불성실하다’고 답변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62.3%(291명)가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부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호사도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부활에 55.7%(88명)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부활시켜 정의감이 넘치는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을 공소유지변호사로 활용한다면 그들이 형사재판을 가까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재정신청제도를 둘러싼 오해와 불신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III.

별다른 전문성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관찰자의 입장만으로 주제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법조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고언이라고 생각하시어 헤량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MEMO

A large rectangular box containing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enclosed by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large rectangular box containing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large rectangular box with a thin gra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large rectangular box containing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large rectangular frame containing 25 horizontal dotted line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MEMO

A large rectangular box containing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large rectangular box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24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